

발간 등록번호

11-1430000-001487-10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2016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Contents · 목차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kipo.go.kr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제 1 부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 001

- 003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 010 [참고]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운영
- 011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 016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 021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 024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 026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 028 7. IP 스타기업 육성
- 033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 036 9. 국내 권리화 지원
- 039 10. 해외 권리화 지원
- 042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 045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 048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 051 1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 054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 057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 060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 063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 065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 071 [참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Contents · 목차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제 2 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 075



- 077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 082 [참고 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083 [참고 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084 [참고 3]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 085 [참고 4]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 086 [참고 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 087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090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 092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 095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097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100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 102 7-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 106 7-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 109 7-3.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 111 7-4. 영업비밀 신고·상담
 - 114 7-5. 영업비밀 보호교육
- 116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 3 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 119

- 121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 123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128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132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136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141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143 [참고] 모태조합 운영

145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 147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 153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 155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 157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 159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 161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 165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 169 [참고 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제 4 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 173



- 175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175 1-1.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조찬세미나
- 177 1-2.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 179 1-3. 해외 분쟁대응 교육
- 181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 183 3. IP 창조 Zone 운영
- 187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 188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 191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 191 6-1. 일반인 지식재산 e-러닝 교육
- 194 6-2. 중소기업 IP 리더 플립러닝 과정
- 196 6-3. 기업체 지식재산 단체 교육
- 198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Contents · 목차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제 5 부

여성 · 사회적 약자 등 · 201

203 제1장 여성발명 지원

- 205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 207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 209 3. 생활발명 발굴·지원
- 211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 213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 215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217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219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 222 2. 서류작성 지원
- 224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 227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235 제3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 237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 6 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241

243 제1장 제도

- 245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 248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 255 3. IP-R&D 종합 포털
- 257 4. 디자인 맵(Design Map)



- 262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265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 268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 270 [참고 2] IP정보 개방·유통 포털내 민간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 272 7.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275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 280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 282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285 제2장 행사

- 287 1. 발명의 날 행사
- 289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 293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 296 4. D2B 디자인페어



부 록 • 301

- 303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 303 1-1. 특허청
- 304 1-2. 한국발명진흥회
- 304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304 1-4. 기타 기관
- 305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 307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 308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 310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 312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지원대상별 지원사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IP 창출 및 권리화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003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011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016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02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026
IP 스타기업 육성	02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033
국내 권리화 지원	036
해외 권리화 지원	039
IP 인큐베이팅 지원	042
기업 선택형 IP 지원	045
맞춤형 특허맵 지원	048
특허기술 시물레이션 제작 지원	051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054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057
지식재산경영 진단	060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065
지식재산 재능나눔	237

IP 보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077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087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090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092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095

IP 활용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123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128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132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136
모태조합 운영	143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147
반도체 IP 수출 지원	15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155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16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169

IP 교육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187
---------------------	-----

IP 제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45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28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282



IP 창출 및 권리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011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02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026
지식재산경영 진단	060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065

IP 보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077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087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090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092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095

IP 활용

반도체 IP 수출 지원	153
--------------	-----

IP 교육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187
---------------------	-----

IP 제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45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280



IP 활용

생활발명 발굴·지원	209
------------	-----

IP 창출 및 권리화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033
국내 권리화 지원	036
해외 권리화 지원	039
IP 인큐베이팅 지원	042
지식재산 재능나눔	237

IP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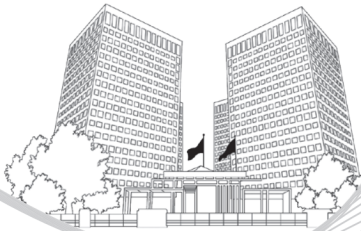
IP 창조 Zone 운영	183
---------------	-----

IP 행사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289
-------------	-----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1 부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 003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 011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 016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 021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 024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 026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 028 7. IP 스타기업 육성
- 033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 036 9. 국내 권리화 지원
- 039 10. 해외 권리화 지원
- 042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 045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 048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 051 14. 특허기술 시물레이션 제작 지원
- 054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 057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 060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 063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 065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CHAPTER 01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 ▶ 중소기업 대상 지재권과 연구개발이 연계된 전략을 지원
- ◆ 중소기업에 지재권(IP) - 연구개발(R&D) 연계전략을 지원하여 제품·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IP 창출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지원한도 : 기업 규모별 매칭비 차등 적용 적용되며, 최대 84백만원 지원

구 분	기술선도형 과제		기술도약형 과제	IP 융·복합 과제		
		계속과제*		기업형	프랜차이즈형	
지원 규모('16년)	80개	5개	46개	10개	4개	
서비스 기간	5개월(20주)	3개월(12주)	3개월(12주)	5개월(20주)	3개월(12주)	
과제당 단가	100백만원	30백만원	60백만원	120백만원	60백만원	
지원비용(중기업 기준)	70백만원	21백만원	42백만원	84백만원	42백만원	
기업 부담금 비율	중기업	30% (30백만원)	30% (9백만원)	30% (18백만원)	30% (36백만원)	30% (18백만원)
	현금	20백만원	6백만원	11백만원	23백만원	11백만원
	현물	10백만원	3백만원	7백만원	13백만원	7백만원
	소기업	20% (20백만원)	20% (6백만원)	20% (12백만원)	20% (24백만원)	20% (12백만원)
	현금	14백만원	4백만원	8백만원	17백만원	8백만원
	현물	6백만원	2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4백만원
	영세 기업**	-	-	10% (60백만원)	-	10% (6백만원)
	현금	-	-	4백만원	-	4백만원
현물	-	-	2백만원	-	2백만원	

* 계속과제 : 기술선도형 과제 참여 이후, 기 지원한 동일과제의 R&D 진행 경과에 따른 전략이행 점검 및 보강 전략 등 지원

** 영세기업 : 재창업 기업 및 프랜차이즈 기업(가맹점 10개 미만) 해당

※ 지원요건 : 과제당 전략지원 사업비 중 일부 기업부담(기업규모별 10~30%), CEO 및 연구자 등의 IP 교육 참여, 지원팀의 근무 공간 배정(필요시)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요건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가점) 타 부처 지원사업 참여, 18대 산업분야별 10대 유망기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IP 스타기업, 대일무역수지 적자 상위 5대 품목 등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과제 수행에 적합한 IP-R&D 전략지원팀(지재권 전략전문가, 특허분석 전문기관 등)이 구성되어 일정기간 동안 IP-R&D 전략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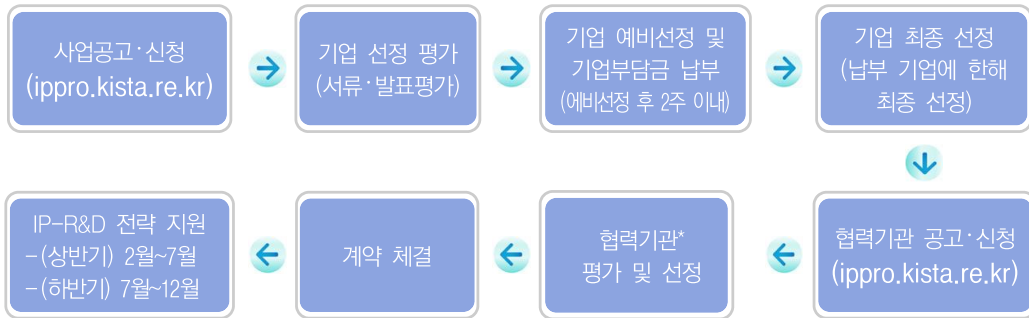
- 기술선도형 과제 : 개발제품·기술의 관련 분야 IP·기술시장 정보 분석을 통해 구체적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라이선스 전략 등 종합적 IP-R&D 전략 수립
- 계속과제(기술선도형) : 기 지원 과제(5개월)에 대해 전략 이행 점검 및 R&D 추진 상황에 맞는 기술구체화 및 그에 따른 IP 권리화, 밸류-업,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보강전략 추가 제공
- 기술도약형 과제 : 선도사 및 경쟁사의 기술 및 IP 분석을 통해 핵심특허 선제 대응, 회피 설계 등을 통한 R&D 방향 및 대응 IP 창출 전략 수립
- IP융복합 과제 : 제품 디자인-특허 또는 디자인-브랜드의 병행 분석을 통해 기업의 CI, 제품 BI, PI 전략을 수립하여 제품의 특허와 디자인권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지원
 - (프랜차이즈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표·서비스표, 특허권, 브랜드·비즈니스 모델(BM), 제품 디자인 창출 등 전략지원

※ 지원분야 : 기계·자동차, 화학·소재·바이오,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전 분야

* (중점지원분야) 뿌리산업, 제약산업, 전통지식산업, 프랜차이즈 및 U턴 기업 등

4 지원절차

- ※ 사업공고 : 특허청(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sta.re.kr) 홈페이지 등
- ※ 신청기간 : 매년 12월 경(차년도 상반기 과제), 4월 경(하반기 과제) / 약 1개월간
- ※ 선정절차 : 연 2회 상·하반기로 진행되며, 사업공고 후 평가를 통해 선정



* 협력기관 :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분석 전문기관 등 분석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

- ※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http://ipro.kista.re.kr>)에 기관 등록 및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접수
- * 신청서 접수 시 증빙자료는 파일형태로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제출

5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중소기업팀 02-3287-4345, 4221 / ipro@kista.re.kr

6 관련사이트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kista.re.kr, 사업관리시스템 <http://ipro.kista.re.kr>

7 용어설명

- ※ IP-R&D 전략 :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를 통해 강한 지재권 창출 및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해 주는 특허전략

8 유의사항

- ※ 참여 신청서의 기술분야(기계·자동차, 화학·소재·바이오, 전기전자·정보통신 등)가 정확하지 않거나 과제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과제당 지원비용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과제 협력기관 비용 등으로 사용
- ※ 공고기간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13년부터 재참여 기업 제한 규정 시행(최근 4년간 5회 이상 사업 참여 시) 단,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기업 특수 상황* 등의 경우에는 예외
* 동종업계 특허분쟁 예상 또는 발생 기업과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Q&A

Q1 여러 개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과제수는 반기별 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과제를 신청하여 미선정된 과제는 차기 공고 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계속 과제에 대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기 지원과제(5개월)의 전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미 수립된 전략에 대해 R&D 추진 상황에 맞는 기술구체화 및 그에 따른 IP권리화, 밸류-업 등 보완전략을 수립하는 과제입니다.

Q3 IP 융복합 과제는 어떤 것인가요?

A 기존의 특허전략 중심에서 디자인, 브랜드 전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준에 맞는 디자인-특허, 디자인-브랜드의 종합 IP-R&D 전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원하는 것이 IP 융복합 과제입니다. 참여 기업의 요구에 맞춰 IP 전략이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Q4 본 사업의 기업 부담비용은 얼마인가요?

A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술선도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IP-R&D 전략지원 컨설팅 비용 1억원의 30%인 30백만원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업부담비용 중 약 70%(20백만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백만원은 현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과제유형(기술도약형, IP 융복합 등)에 따른 기업 부담비용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Q5 과제당 지원비용은 참여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인가요?

A 과제당 지원비용은 선정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과제 협력기관의 용역 비용, 환경분석, 특허 DB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Q6 특허출원 비용도 지원내용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 비용은 본 사업의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Q7 타 부처 사업 참여 중인데 참여 가능한가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추천된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부처 R&D 지원사업 연구비의 IP-R&D 사업 활용부분은 해당 R&D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8 기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 보안솔루션이 도입된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 결과물을 관리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문서보안 솔루션(DRM)을 설치하고, 산출물은 시스템을 통해 각 과제별 전담지원팀에 의해 관리되며 외부인은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 순 단계에 걸쳐 비밀유지 및 보안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 보안 관리 체계

특허전문위원 선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업기간 내에 동일 전문위원, 수행기관에 의한 동종기업 컨설팅 배제
과제 협력기관 선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 교육 실시 • 현장실사 시 수행 협력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중간에 담당자 퇴직 등의 사유 발생 등에 대해 사업관리지침에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과제수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문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모든 문서의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등 문서보안체계 강화 및 정보 유출 방지
손해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책임 부여

보안문서 관리 시스템(DRM, 디지털저작권관리)이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문서 열람 이력관리 등 문서보안체계 강화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 지원기업 코멘트

- ※ “IP-R&D 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경쟁업체의 기술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 기술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비나텍 이동열 전무 ('11년 ~ '14년 참여)]
- ※ “IP-R&D는 특허분쟁 대비뿐 아니라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장의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엘엠에스 최정옥 상무 ('11년 ~ '13년, '15년 참여)]
- ※ “IP-R&D 사업을 진행하며 특허에 대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쌓은 덕분에 글로벌 기업 C사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아니었다면 대응은 꿈도 못 꾸고 아이템 자체를 접어야 했을 겁니다.”
[(주)벤틱스 양광웅 전무('11년 ~ '13년, 15년 참여)]
- ※ “IP-R&D 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경쟁사들이 권리화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전략 수립으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특허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 등 IP-R&D 사업이 기업 성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덕신하이메탈㈜ 강병주 사장 ('11년, '13년 참여)]

■ 우수지원사례

- ※ (E社) 사업을 통해 명확한 R&D 방향을 제시 받은 후 경쟁사 제품대비 5~10배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 아프리카, 남미 등 10여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 전년대비 100%이상 매출 증대 달성('13년, '14년 참여)
- ※ (V社) 본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인 C사로부터 2번의 특허침해 소송을 승소. 관련 분야 기업 중 최초로 장영실상 2회 수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인 N사('14년), A사('15년) 등과 전략적 파트너 제휴 및 수출계약 체결('11년 ~ '15년 참여)
- ※ (N社) 일본업체들이 선도하는 기술분야로, 업계의 기술적 난제로 인식되던 제품의 내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 및 권리화를 통해 대기업 납품 예정 및 '16년 400억원 규모의 매출 예상('14년, '15년 참여)
- ※ (S社)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신규 IP 창출(10개) 및 7개의 추가 관련 특허를 통해 '13년 3월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의 특허권 펀드투자 유치 및 '13년 전자IT특허 경영대상(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주관)에서 전자신문상(은상) 수상('12년 참여)
- ※ (J社) 본 사업을 통해 특허(5건), 디자인(3건) 및 상표출원(1건) 및 기출원 특허 권리 보강을 통한 해외출원으로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강력한 IP포트폴리오를 구축 완료. 축소모형의 제작 및 실험을 통한 최적설계안 도출, 실증을 거쳐 영국, 요르단, 케냐, 필리핀 등 해외 9개국 업체와 MOU를 체결('13년 참여)

참 고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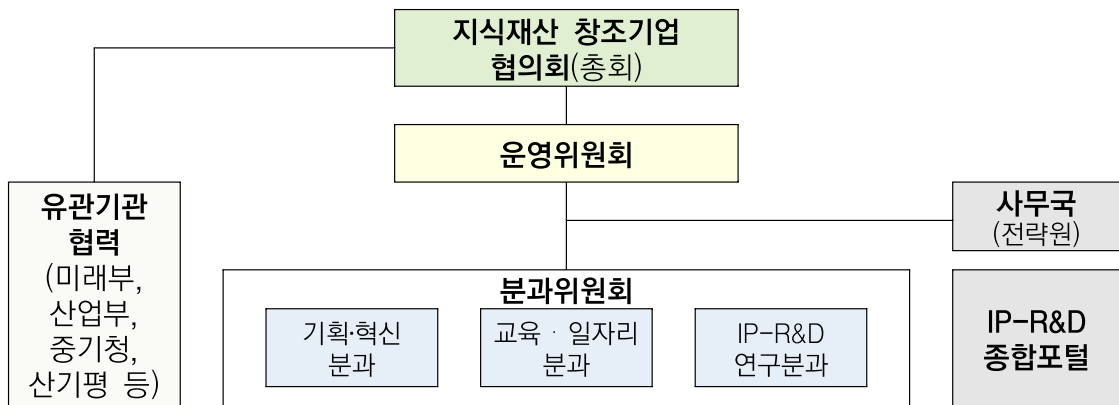
■ 운영목적

※ 기업·대학·연구소의 IP-R&D 전략수립 방법론 연구 및 확산활동

■ 운영대상

※ IP-R&D 방법론에 관심 있는 기업 CEO·CTO 및 대학·연구소의 지식재산관리자, 연구원 등

■ 활동내용



※ 기획·혁신분과 : IP-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IP정책 발굴 및 제언 활동

※ 교육·일자리분과 : IP-R&D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과정 운영, IP-R&D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 IP-R&D 연구분과 : IP-R&D 방법론 연구(특정 기술분야별, 기관 유형별, IP 이슈별 등의 주제), 성공사례 공유 등

■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5156

※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사무국(한국지식재산전략원) 02-3475-8591

■ 관련사이트

※ IP-R&D 종합포털 www.ip-rnd.re.kr

CHAPTER 01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 ▶ 성장 잠재력이 큰 중견·중소기업 등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에서 해외진출까지 제품개발 전주기로 지원
- ◆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제품개발 전략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40백만원 지원

구 분		신제품 창출형	제품 고도화형
지원 규모('16년)		00개 과제	00개 과제
서비스 기간		36주(9개월)	28주(7개월)
과제당 단가		200백만원	160백만원
기업 부담금 비율	중견기업/중소기업	50%(100백만원) / 30%(60백만원)	50%(80백만원) / -
	현금	33백만원 / 28백만원	30백만원
	현물	67백만원 / 32백만원	50백만원

※ 지원요건 : 과제당 전략지원 사업비 중 30~50% 기업부담*, CEO 및 연구자 등의 IP 교육 참여, 지원팀의 근무 공간 배정(필요시)

*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50%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결산 회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정도 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시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가능
- * (가점항목)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 월드클래스 300 참여기업,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 기업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과제 수행에 적합한 IP-R&D 전략지원팀(지재권 전략전문가, 특허분석 전문기관 등)이 구성되어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신제품 창출형 : 토탈아이덴티티(TI) 구축, TI 기반 융합IP 개발, IP포트폴리오, 권리화 등을 제시하여 글로벌 경쟁우위 신제품 개발
- 제품 고도화형 : 제품기반 토탈아이덴티티(TI) 정립, TI 기반 융합IP 보강, 권리화, 후속제품 개발방향 등을 제시하여 기존 제품의 일류제품화 및 유지

4 지원절차

※ 사업공고 : 매년 12월 중(연 1회)

※ 선정절차 : 사업공고, 신청·접수 → 서류평가¹⁾ 및 사전진단²⁾ → 발표평가³⁾ → 참여 기업선정, 계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 협력기관(특허법률사무소, 특허분석 전문기관 등)선정 → 지재권 중심의 제품개발 전략지원

- 1) 특허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 2) 현장 방문을 통하여 R&D 역량 및 IP 역량(인적, 물적) 사전 진단 실시
- 3)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평가 실시

※ 신청요령 :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psi.re.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 접수 시 증빙자료는 파일형태로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제출

5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5156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02-3475-8590, 1302 / ippro@kista.re.kr

6 관련사이트

※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ro.kista.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kista.re.kr

7 유의사항

- ※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사업 신청 시,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 ※ (지원 형태) 과제당 지원비용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과제 협력기관 비용 등으로 사용
- ※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신청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임
- ※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 ※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협력기관 선정 공고 이후에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참여제한 기간	비 고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1년 이하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2년 이하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3년 이하	계약 체결 통보 이후

- ※ (NTIS 등재) IP-R&D 전략 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
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가 NTIS에 등재될 예정
-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Q&A

Q1 '매출액 300억 원' 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결산 회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 공고 접수가 2월에 마감 되는 것을 기준으로, 2015년 결산자료가 나오기 전이므로 2014년도 결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회계연도가 1.1.~12.31.일 경우)

Q2 과제당 지원비용은 참여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인가요?

A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Q&A 참조

Q3 타 부처 사업 참여 중인데 참여 가능한가요?

A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Q&A 참조

Q4 기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Q&A 참조

■ 지원기업 코멘트

※ “IP-R&D 사업을 통해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죠.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회사 구성원들도 IP-R&D 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덕산하이메탈 강병주 사장 ('11년 ~ '13년 참여)]

※ “직접 겪어보니 IP-R&D를 통해 단순히 기술보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트렌드도 파악할 수 있었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

기술개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대동공업 이종순 이사 ('11년, '13년, '14년 참여)]

■ 우수지원사례

- ※ (K社) 기업이미지(CI)를 기반으로 자사의 핵심가치를 제품의 모델로 구현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품 아이덴티티(PI) 확보를 위해 특허 3건, 디자인권 15건 창출 및 '15년 산업자원부 굿디자인 선정 ('13년, '14년 참여)
- ※ (K社) 특허창출(24건) 및 유망 R&D 과제(35건) 도출을 통해 해외 선진 경쟁사에 준하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수립,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진입장벽 해소로 약 300억원 규모의 매출 발생 예상('12년 참여)
- ※ (S社)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해외 경쟁사 특허의 대응전략으로 특허분쟁 사전 예방 및 향상된 제품 설계안 도출로 기술도입의 위치에서 기술제공의 입장으로 변모 및 대기업에 납품 예정('11년, '12년 참여)
- ※ (H社) '15년 41억불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TSV(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 시장 진입을 위한 유망 기술 발굴 및 기술 선점을 위한 '12년~'16년의 5개년 R&D Road Map과 5개의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를 도출, 24개의 우수 발명 창출로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구축('12년 참여)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 ▶ 글로벌 기업의 소멸된 원천 물질특허/플랫폼 기술 특허를 특허분쟁 우려없이 제품·기술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 컨설팅 제공
- ◆ 소멸된 원천물질 특허/플랫폼 기술 특허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80백만원 지원

구 분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지원 규모('16년)		10개
서비스 기간		20주(5개월)
과제당 단가		100백만원
기업 부담금 비율	중기업	70%(30백만원)
	현금	20백만원
	현물	10백만원
	소기업	20%(20백만원)
	현금	14백만원
	현물	6백만원

※ 지원요건 : 과제당 전략지원 사업비 중 일부 기업부담(소기업 20%, 중기업 30%), CEO 및 연구자 등의 IP 교육 참여, 지원팀의 근무 공간 배정(필요시)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가점항목 : 타 부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일 무역수지 역조 품목, 18대 산업분야 10대 유망기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IP 스타기업 등

3 지원내용

- ※ 지원방식 : 과제 수행에 적합한 IP-R&D 전략지원팀(지재권 전략전문가, 특허분석 전문기관 등)이 구성되어 일정기간 동안 소멸특허 활용 전략 수립 지원
 -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소멸·후속특허 대응 전략 제시 또는 소멸특허 기반 제품/기술 구현 전략 제시
- ※ 지원분야 : 3D프린팅, 의약, 착용형 스마트 기기 분야 등

4 지원절차

- ※ 사업공고 : 매년 12월 중(차년도 상반기 과제), 5월 중(하반기 과제)
- ※ 선정절차 : 사업 신청·접수 → 서류확인 → 발표평가 → 참여기업 선정 → 기업 부담금 납부 → 협력기관(특허법률사무소, 특허분석 전문기관 등) 선정 → 계약 체결 → IP-R&D 전략수립 지원
- ※ 신청요령 :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 온라인 접수
 - * 신청서 접수 시 증빙자료는 파일형태로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제출

5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5156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02-3475-8590, 1302 / ippro@kista.re.kr

6 관련사이트

- ※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kista.re.kr

7 용어설명

- * IP-R&D 전략 :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성을 통해 강한 지재권 창출 및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해주는 지식재산전략

8 유의사항

- ※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사업 신청 시,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 ※ (지원 형태) 과제당 지원비용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과제 협력기관 비용 등으로 사용
- ※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신청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임
- ※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 ※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협력기관 선정 공고 이후에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참여제한 기간	비 고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1년 이하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2년 이하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3년 이하	계약 체결 통보 이후

- ※ (NTIS 등재) IP-R&D 전략 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가 NTIS에 등재될 예정
-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Q&A

Q1 여러 개의 과제 신청 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과제수는 반기별 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과제를 신청하여 미선정된 과제는 차기 공고 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지원하는 과제 분야가 정해져 있나요?

A '16년도 사업에서는 3D프린팅, 의약, 착용형 스마트 기기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Q4 과제당 지원비용은 참여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인가요?

A 과제당 지원비용은 선정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과제 협력기관 비용, 환경 분석, 특허 DB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Q4 타 부처 사업 참여 중인데 참여 가능한가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추천된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5 기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Q&A 참조

■ 우수지원사례

- ※ (L社, 의약 분야) 해외시장에 퍼스트 제네릭으로 진출하기 위해 원천물질의 소멸 예정 특허 분석 및 후속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요 시장 진출방안 (고위험 특허 무효화 논리 2건)을 마련함. 또한, 既 출원 특허를 보강하여 강한 특허 Portfolio를 구축함으로써 자사 실시 기술의 권리화를 도모함('15년 참여)
- ※ (M社, 의약 분야) 상용화 백신이 없는 특정 병원균에 대한 백신 기술개발 방향을

도출하고, 목표 기술의 특허보호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항원, 조성물 등의 신규 특허를 창출함(6건). 나아가 글로벌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여 고위험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 방안을 철저히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진출 방안을 마련함 ('15년 참여)

※ (P社, 3D 프린팅 분야) 소멸특허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술 구현방식을 역설계 하여 개발대상 제품 양산에 필요한 제품사양을 도출(16건)함. 또한, 기존의 기술력을 심화·보완하여 수작업 공정 부분을 자동화로 개선하는 길목특허(신규 IP 2건)창출 ('15년 참여)

CHAPTER 01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 ▶ R&D 단계부터 표준특허 창출전략 수립 지원
- ◆ R&D 단계부터 국제표준화 논의가 활발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동향과 특허를 분석하여 표준특허 창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과제별 사업비) 신규과제 : 80백만원, 계속과제 : 40백만원
- ※ 과제별 사업비 중 참여기관 부담 비율 : 중소 · 중견기업 30%

2 지원대상

- ※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및 민간 R&D 과제
 - (신규지원) 정부(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및 민간 R&D 과제
 - * 정부 R&D 과제 중 주관·참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우선 지원
 - (계속지원) 既 지원된 과제 중 표준화 진행 중인 R&D 과제

3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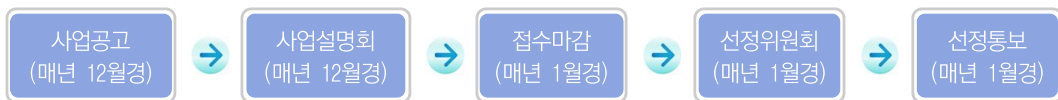
- ※ 지원분야
 - 표준·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표준특허 창출 쏠 과정(연구개발, 국제표준개발, 표준화 활동)에 걸쳐 표준특허 확보전략 지원
 - R&D 단계 및 국제표준개발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특허전략 제시
- ※ 지원기간
 - 신규지원 : 표준특허 창출 쏠 과정 지원(9개월)
 - 계속지원 : 국제표준화 대응을 중심으로 지원(4개월)

4 지원절차

※ 선정방법

- (1단계) 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및 접수
 - 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후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과제 신청서에 과제별 표준화 및 출원계획 포함
 - ※ 기존 협력기관 풀(Pool) 업데이트 및 신규 협력기관 풀 동시 모집
- (2단계)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과제 선정
 - 선정위원별 지원과제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
 -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대상과제 확정
 - 지원 대상과제 확정 후 과제별 협력기관 선정 실시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요령

- 접수기간 :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www.epcenter.or.kr) 참조
- 제출서류 : 표준특허 창출지원 과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epcenter@kista.re.kr)
 - ※ 한글파일(HWP) 및 직인이 포함된 원본을 스캔한 파일(PDF)을 함께 제출

5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99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02-3475-1304

6 관련사이트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www.epcenter.or.kr

■ 우수지원사례

- ※ (E社) 참여기관의 기출원 특허와 표준문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표준특허를 발굴(3건), 특허풀에 등재함으로써 연간 특허당 8.5만불 수준의 수익 예상
- ※ (J社) 본 사업을 통해 창출된 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권 이전 계약 체결로 기술료 확보(건당 1천만원 + 런닝로열티)
- ※ (E社) '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광인터넷 기술 관련 R&D 과제와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R&D 과제에서 제안한 국제표준안 2개가 표준채택되고, 관련 특허 14건을 표준특허 선언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추진

- ◆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특허청-미래부-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협업으로 표준특허 창출전략 수립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과제별 사업비) 신규과제 : 200백만원, Fast track : 100백만원

※ 과제별 사업비 중 참여기관 부담 비율 : 중견기업 50%(현금 15%, 현물 35%), 중소기업 30%(현금 10%, 현물 20%)

2

지원대상

※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

- 국제표준과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개발 중인 중소·중견기업
 - * 정부R&D 및 특허청 IP-R&D 사업 우수성과 기업 등 우대
- Fast Track은 분석이 완료된 既 지원과제의 전략수립 및 표준화과제 추진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표준, 특허 및 표준특허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기업 보유 기술 고도화,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 및 표준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 표준특허 확보전략과 과제제안만 신속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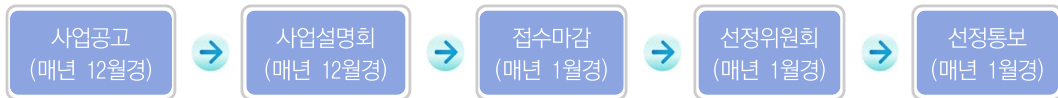
※ 지원기간

- 신규지원(9개월), Fast Track(9개월)
 - * Fast Track 과제는 분석이 완료된 既 지원 과제의 전략수립 및 표준화과제 추진 지원

4 지원절차

- (1단계) 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및 접수
 - 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후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과제 신청서에 과제별 표준화 및 출원계획 포함
 - ※ 기존 협력기관 풀(Pool) 업데이트 및 신규 협력기관 풀 동시 모집
- (2단계)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과제 선정
 - 선정위원별 지원과제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
 -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대상과제 확정
 - 지원 대상과제 확정 후 과제별 협력기관 선정 실시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요령

- 접수기간 :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www.epcenter.or.kr) 참조
- 제출서류 :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epcenter@kista.re.kr)
- * 한글파일(HWP) 및 직인이 포함된 원본을 스캔한 파일(PDF)을 함께 제출

5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99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02-3475-8560

6 관련사이트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www.epcenter.or.kr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 주요 표준기술에 대한 제품 구현에 집중하는 중소기업이 표준 관련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과제별 사업비) 신규과제 : 100백만원, 계속과제 : 50백만원

* 과제별 사업비 중 참여기관 부담비율 : 30% (단, 기업규모에 따라 현물매칭(0~20%)을 적용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2

지원대상

※ 표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 (신규지원) 표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소기업
- (계속지원) 既 지원기업 중 표준화 계속 중인 중소기업

* 계속지원 과제는 기업 맞춤형 전략지원에 초점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표준특허 분석) 선정 기술 분야의 표준화 정보, 기고기술 특허분석 지원 및 대응전략 수립
- (창출전략 수립) 표준문서와 기고분석을 통한 표준특허 확보전략 도출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표준관련 특허 창출전략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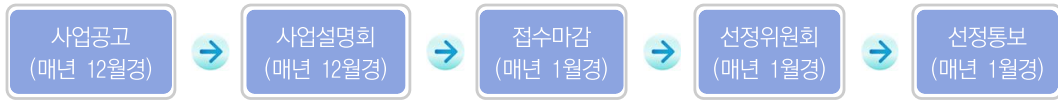
※ 지원기간

- 신규지원 : 9개월 / 계속지원 : 4개월

4 지원절차

- (1단계) 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및 접수
 - 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후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과제 신청서에 과제별 표준화 및 출원계획 포함
 - ※ 기존 협력기관 풀(Pool) 업데이트 및 신규 협력기관 풀 동시 모집
- (2단계)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과제 선정
 - 선정위원별 지원과제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
 -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대상과제 확정
 - 지원 대상과제 확정 후 과제별 협력기관 선정 실시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요령

- 접수기간 :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www.epcenter.or.kr) 참조
- 제출서류 : 중소기업 표준특허 전략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epcenter@kista.re.kr)
- ※ 한글파일(HWP) 및 직인이 포함된 원본을 스캔한 파일(PDF)을 함께 제출

5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99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02-3475-8589

6 관련사이트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www.epcenter.or.kr

7

IP 스타기업 육성

- ▶ 지식재산 경영을 통하여 지역의 대표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의 지식재산 경영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연간 50백만원 이내, 3년간 150백만원 이내
- ※ 기업분담금 : 30%(단, 2014년~2015년에 선정된 기업은 선정당시 기준 적용)

2

지원대상

-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식재산권을 5건 이상 보유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 우대사항 : 2015년도 IP Scale-Up 정시사업 참여기업, 지역 중점 육성산업과 관련된 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최근 2년 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3억원 이상 지원(융자 및 보증 제외) 받은 기업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기업
 - ※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연계지원 가능
 - 선정 후 탈퇴신청을 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스타기업 선정 후 3년이 지난 기업
 - ※ 스타기업 선정 이후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불가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업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특허맵(PM),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을 3년간 실시

※ 선정기준

-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역량, 글로벌역량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IP경영진단 (Spectrum)을 통한 일정 점수 이상인 기업 선정

※ 지원기준

-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경

※ 신청절차



* 중소기업 IP 경영진단 :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되면 IP - Spectrum (IP 경영진단 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 경영진단을 자가진단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신청기업 사업신청이 최종 완료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IP 스타기업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인증관련 증빙서류, 직무발명 보상규정, 회사소개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5

문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1
-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 “당사는 ‘도어락’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현장에서 IP관련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014년 IP스타기업에 선정된 후 다양한 IP지원사업을 받으면서, 내·외부적으로 취약했던 당사의 특허 및 디자인개발 등과 관련된 IP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3만개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최근에는 매출과 고용창출이 15% 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욱 전문화되어, 당사처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 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D社 부사장 (’14 ~ ’15년 지원, ’14년 IP 스타기업)]
- ※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당사는 자체 기술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이후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 맵 조사를 통해 ‘제빙기’, ‘자동차용 냉온기능 컵홀더’의 공백기술을 도출해 자체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IP경영전략컨설팅을 통해 재무, 기술, 조직 관점의 컨설팅으로 재무 분야 에서는 IP담보대출을 활용한 연구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내 IP경영인클럽 교류를 통해 분쟁 중이었던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노하우를 공유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청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D社 연구소장 (’14 ~’15년 지원, ’14년 IP 스타기업)]

■ 우수지원사례

※ H社 (주 생산품 :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초고용량커패시터)

〈 제품 이미지 〉



(주요기술) 활성탄 표면에 전하의 물리적 흡탈착으로 에너지를 충전 또는 방전하는 원리로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 후 높은 전류를 순간적 혹은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고출력 에너지 저장장치로 슈퍼커패시터는 배터리보다 광범위한 온도에서 높은 신뢰성을 유지/작동하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를 생산하는 기업

(주요성과) IP스타기업에 선정되어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아 기술경쟁력과 IP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이 증가(매출액 '12년 18,607백만원 → '13년 20,992백만원 → '14년 22,031백만원)

(기타성과) 2012년도에는 지식재산 경영우수기업으로 중소기업 IP경영인대회 대상 수상 및 대통령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등 수상

(향후계획) 현재까지 지속적인 특허침해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회피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 경제에서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소재 발굴과 원천소재 특허 확보와 전극 및 셀 성능 기능 향상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를 통해 관련분야 선두기업으로 성장 예정

(지원내용) 선행기술조사, 국내권리화, 시뮬레이션제작지원, 제품디자인개발 등

※ T社 (주 생산품 : 커넥티드 IVI(In-Vehicle Infotainment))

〈 제품 이미지 〉



(주요기술) 차량용 커넥티드 IVI(In-Vehicle Infotainment) 전문 제조 기업으로, 외국 기업들에 독점되어온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국산화하여, 외국 기업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납품 및 생산하는 기업

(주요성과) IP스타기업에 선정되어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아 기술경쟁력과 IP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말부터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직무발명보상업체 인증) 및 특허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관리함(매출액 '13년 47,700백만원→ '14년 82,200백만원→ '15년 100,900백만원 추정)

(기타성과) 2015년도에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자동차의 날' 자동차산업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ICT Innovation' 대상 미래창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중소기업 IP경영인 대회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을 수상

(향후계획) 제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IP적인 검토를 병행하고,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구 성과물들을 보호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IP적인 보호에서 더 나아가, 후발 기업들의 카피 제품에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여 의료기기 선두 기업으로 성장 예정

CHAPTER 01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시 해당 특허·상표·디자인의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분석
-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기술·상표·디자인에 대하여 유사 기술·상표·디자인의 존재 여부를 조사·분석하여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건당 40만원(기업분담금 없음)
- ※ 지원건수 : 기업(개인발명가)당 연간 3건 이내
 - *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는 IP Start-Up 대상 기업(개인발명가)만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 개인발명가
 - * 개인발명가는 예비창업자(창업인증서 보유자 또는 창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기술이전계획자(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출한 자), 발명경진대회수상자(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서 주최·주관·후원한 공모전 또는 대회에 한하여 수상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를 말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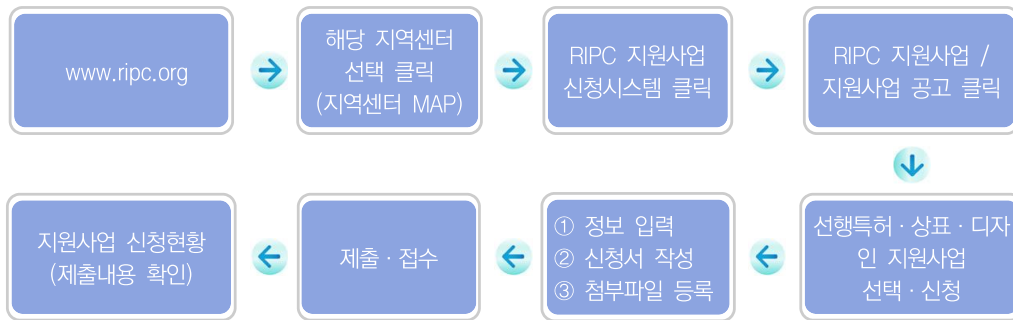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 지역 R&D 사업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
- ※ 권리분쟁 대응 및 침해성 판단을 위한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 조사범위/기간 : 한국, 일본, 미국, EPO, PCT 등
- ※ 등록 가능성을 위한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경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i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중소기업 범위 증빙서류, 기타 관련서류 등

5 문 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2
-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 “설립초기의 스타트업 기업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기초수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식재산 초기 기업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社 대표]
- ※ “선행기술 조사 지원을 통해 알게 된 회피 설계 방안 등을 실무자들과 연구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G社 이사]

■ 우수지원사례

- ※ J社 (주 생산품 : 자동차 용품)
 - 차량정비용 도구를 개선하여 편의성과 정확성을 요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차량용 공구 분야의 국내외 주요 경쟁기업의 기술현황을 파악함. 이를 통해 소음기 해체 도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공구에 대한 특허권, 결합핀 헤드의 크기에 따라 변형 가능한 결합나사 제거 전용 공구에 대한 특허권 등을 확보
- ※ S社 (주 생산품 : 사진 및 영상 시스템)
 - 사진파일 전송 및 관리시스템, 영화상 형상처리 및 관리시스템 등 신규 사업 준비 중인 기술과제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열 영상을 이용한 관찰자의 온도측정 분야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듀얼카메라를 이용한 검역 시스템 기술 및 이를 관리하는 관제시스템 등 특허권을 확보

9

국내 권리화 지원

▶ 컨설팅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국내 권리화 지원

- ◆ 우수한 기술, 창의적인 디자인 등을 개발하였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특허) 건당 130만원 이내, (실용신안) 건당 90만원 이내 (상표) 건당 25만원 이내, (디자인) 건당 35만원 이내
 - * 기업분담금 : 30%
- ※ 지원건수 : 기업당 연간 6건 이내, 개인발명가당 연간 3건 이내
 - *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2

지원대상

-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 개인발명가
 - * 개인발명가는 예비창업자(창업인증서 보유자 또는 창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기술이전계획자(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출한 자), 발명경진대회수상자(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주최·주관·후원한 공모전 또는 대회에 한하여 수상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를 말함
- ※ IP Star 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출원이 완료되었거나 지역센터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
 - 출원완료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동일 출원건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 건
-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 원출원이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 받은 건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출원전략·출원내용·보정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 국내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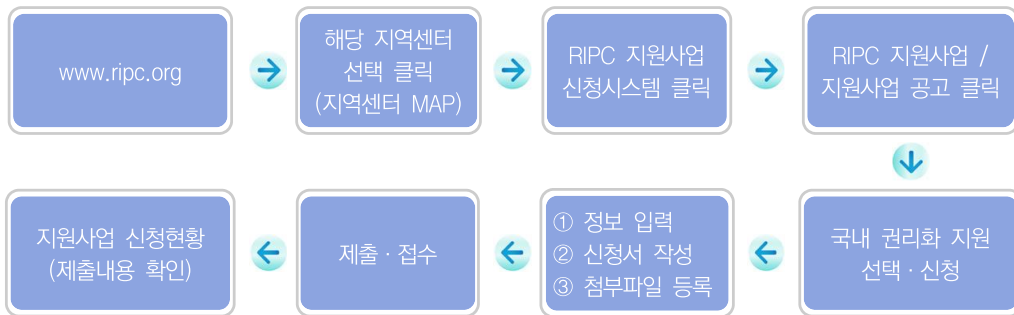
※ 지원기준

- 해당 지역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서 등록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경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i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개인) 국내권리화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국내권리화 신청 세부사항, 거주지역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개인발명가 입증서류(창업·기술이전계획서·대회 수상증명서 등),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기타 관련서류

(기업) 국내권리화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국내권리화 신청 세부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구분 입증서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5

문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2
-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 “지식재산센터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기반의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를 통하여 국내외 관련 제품군에 대하여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A社 차장]
- ※ “국내 특허권 확보라는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이 없이 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社 연구원]

■ 우수지원사례

- ※ H社 (주 생산품 : 미용기기, 배터리 내장형 고주파 미용기기 등)
 - 미용기기의 소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배터리 내장형 고주파 미용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권리화 함. 이 권리들은 '15년도에 대한민국 우수특허 생활부문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해외진출의 토대가 됨(홍콩 30억, 포르투갈 20억, 두바이 5억, 일본 10억, 미국 30억 등 계약 예정)

● ● CHAPTER 01

10

해외 권리화 지원

- ▶ 컨설팅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 지원
- ◆ 우수한 기술, 창의적인 디자인 등을 개발하였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PCT 국제단계) 건당 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 개별국) 건당 700만원 이내, (상표) 건당 250만원 이내, (디자인) 건당 280만원 이내
 - * 기업분담금 : 30%(단, 소기업·개인발명가 10%)
 -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 지원건수 : 기업(개인발명가)당 연간 3건 이내(단, 1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2 지원대상

-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 개인발명가
 - * 개인발명가는 예비창업자(창업인증서 보유자 또는 창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기술이전계획자(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출한 자), 발명경진대회수상자(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주최·주관·후원한 공모전 또는 대회에 한하여 수상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를 말함
- ※ IP Star 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출원이 완료되었거나 지역센터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
 - 출원완료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동일 출원건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출원전략·출원내용·보정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 해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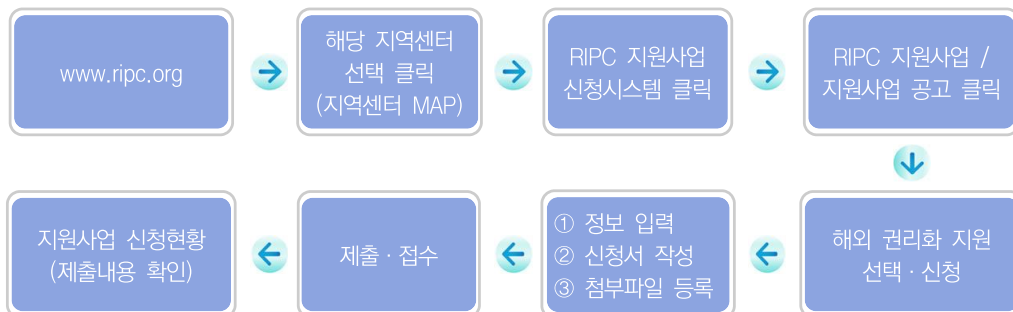
※ 지원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을 받은 것에 한함
- (PCT출원 국제단계)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을 받은 것에 한함
- (PCT출원 국내단계) 국가별 진입기한 이전 특허·실용신안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을 받은 것에 한함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을 받은 것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국내 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컨설팅을 받은 것에 한함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경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개인) 해외권리화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해외권리화 신청 세부사항, 거주지역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등
- (기업) 해외권리화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해외권리화 신청 세부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구분 입증서류 등

5

문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2
-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상표도용 걱정 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지식재산권 확보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자금지원 까지 제공되고 있어서 사정이 넉넉지 않은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E社 대표]

■ 우수지원사례

- ※ E社 (주 생산품 : 의료용품)
 - 급성열성질환인 쯤쯤가무시병, 발진열 등을 단시간 내에 한번에 구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히 장벽이 형성되지 않은 동남아시아에 출원함과 동시에 수출을 진행하여 경쟁기업보다 우위에 선 위치를 확보함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 ▶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 맵,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영 기반의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500만원

* 기업분담금 : 30%(단, 소기업 10%)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지원건수 : 기업당 연간 2건 이내

2 지원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3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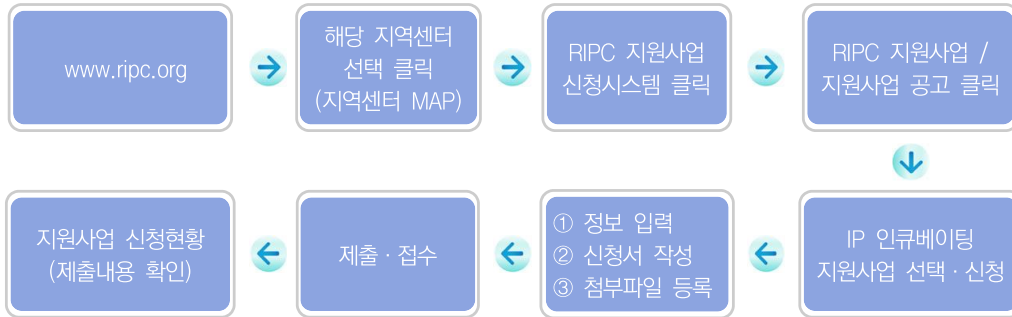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경(또는 컨설턴트 컨설팅 중 기업 발굴)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i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구분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등

5 문 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2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i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 “IP 인큐베이팅 사업은 창업 초기의 기업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연구개발의 산물을 지식재산권의 창출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해준 사업입니다.” [W社 이사]
- ※ “오랜 기간 플라즈마절단기 개발과 제조에 힘써온 당사는 보유했던 지재권이 소멸한 상황에서, 지식재산센터의 IP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단계에 있던 특허를 신규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지재권 획득과 더불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지식재산 확보와 더불어 지재권을 활용한 사업 다양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P社 대표]

■ 우수지원사례

- ※ E社 (주 생산품 : 김치류)
 - 기존 면세점 유통 제품과 용량,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백화점 유통용 김치 제품을 위한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국내 신규 시장(백화점) 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매출액이 약 30% 증가함(매출액 '14년 633백만원 → '15년 820백만원 추정)

CHAPTER 01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 ▶ 컨설팅을 통하여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해외 IP 컨설팅 지원
- ◆ 컨설팅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에게 해외 IP컨설팅, 특허 맵,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영 기반의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건당 500만원
 - * 기업분담금 : 30%(단, 소기업 10%)
 -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 지원건수 : 기업당 연간 2건 이내

2 지원대상

-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등록 1건 이상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 IP Star 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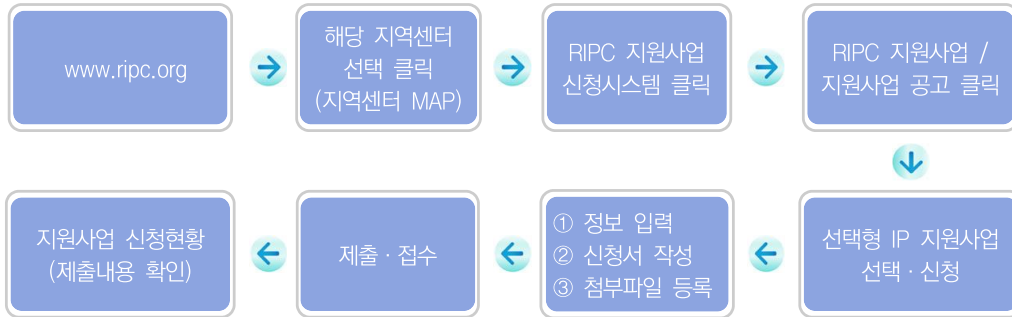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 小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해외 IP컨설팅 지원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경(또는 컨설턴트 컨설팅 중 기업 발굴)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구분 증빙서류, 지식 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등

5 문 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2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소기업들은 기업의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고,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이나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인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H社 대표]

■ 우수지원사례

- ※ H社 (주 생산품 : 보일러, 온수기)
- 선택형 IP 지원사업을 통한 BI디자인 통합으로 효율적인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42억의 매출이 향후 2년내 60억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국내 판매 위주에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진출 예정임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 ▶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
- ◆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 활용 전략을 수립해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일반) 건당 1,200만원 이내 (심화) 건당 2,500만원 이내
 - * 기업분담금 : 30%(단, 소기업 10%)
 -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 지원건수 : 기업당 1건

2 지원대상

-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등록 1건 이상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 IP Star 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3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필수 모듈),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선택 모듈) 맞춤형 특허맵 보고서 형태로 제공

(심화과정은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국제특허분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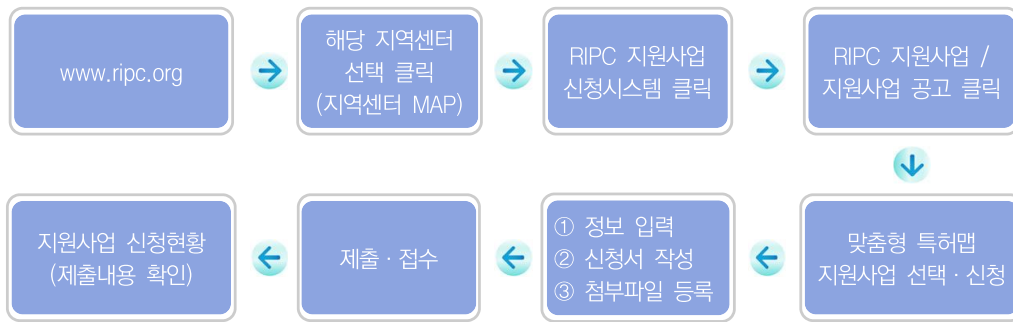
※ 지원기준

-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 ※ 맞춤형 특허맵 심화과정은 해외 진출 특허기술에 한함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경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구분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등

5 문 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2
-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수출전문기업으로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가 가진 특허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관련 기술의 동향까지 알 수 있다면 세상에 무서운 경쟁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C社 부장]

■ 우수지원사례

※ Q社 (주 생산품 : 차량용 블랙박스)

- 보유중인 특허와 관련하여 현재 침해가 있는 경쟁기업과의 관계에서 향후 처리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특허를 정리하여 유지 보완하는 등 중장기 사업 전략을 수립 함.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를 확보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 대량 수출하여 매출액이 약 150% 성장('14년 6,005백만원 → '15년 15,000백만원 추정)

※ S社 (주 생산품 : 가구용, 전자제품용 슬라이드 레일)

- 당시는 이윤창출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가구용, 전자제품용 슬라이드 레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맞춤형 특허맵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분야 IP보유 국내 1위, 세계 3위를 달성함. 또한, 매출액은 약3% 증가('14년 59,511백만원 → '15년 61,000백만원 추정), 고용인원 약 13% 증가('14년 121명 → '15년 137명)

CHAPTER 01

1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 ▶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제공
- ◆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건당 500만원 이내
 - * 기업분담금 : 30%(단, 소기업 10%)
 -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 지원건수 : 기업당 1건

2 지원대상

-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등록 1건 이상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 IP Star 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3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등록된 특허기술의 구성 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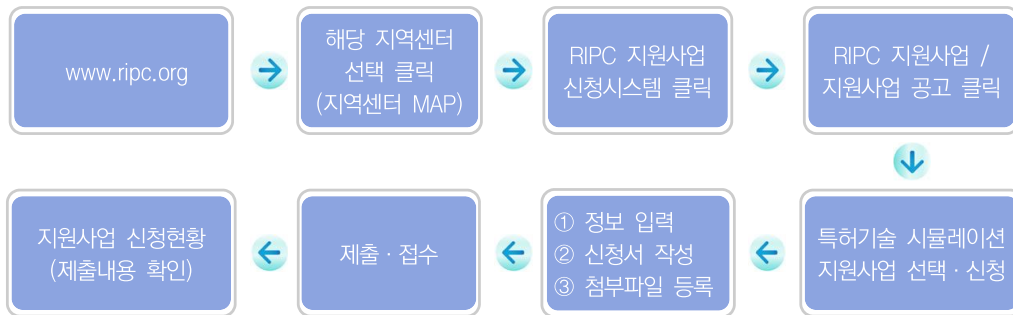
※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경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구분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등

5 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2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 “제품을 시뮬레이션 동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U社 부장]
- ※ “해외 시장 초기 여러 국제 전시회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기 어려웠는데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영상으로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社 대표]

■ 우수지원사례

- ※ P社 (주 생산품 : 초정밀 반도체)
 -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하여 Coating Capillary 관련 국내외에서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상해) 진출. 중국·대만·싱가폴 등 해외 진출 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여 매출액이 약 26% 성장('14년 32,400백만원 → '15년 40,800백만원 추정)
- ※ G社 (주 생산품 : 살균기)
 - 살균수 생성유닛과 관련하여 여러건의 권리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대만의 U社에 신규로 US \$73,640 상당의 계약을 체결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 ▶ R&D 개념의 기술중심 디자인 개발
- ◆ 종래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여 R&D 개념의 기술중심 디자인을 개발하고 특허·디자인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건당 3,500만원 이내
 - * 기업분담금 : 30%(단, 소기업 10%)
 -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 지원건수 : 기업당 1건

2 지원대상

-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등록 1건 이상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 IP Star 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동일 브랜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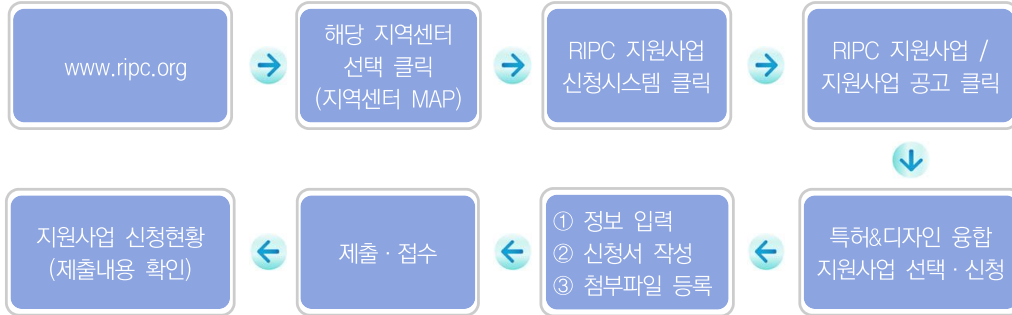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 특허맵(선행기술조사), 기술분석 및 개발 방향 제시, 디자인 개발, 특허 및 디자인 권리화 지원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경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구분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등

5 문 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2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우수지원사례

※ F社 (주 생산품 : 서비스 로봇)

- 인간과 서비스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핵심기술로 하는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으로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21세기 서비스 로봇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서 R&D 개념의 기술중심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CES에서 'BEST 로봇 in CES 2015' , '세계 50대 로봇기업'에 선정됨



CHAPTER 01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 ▶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 비영어권 국가(중국, 아랍, 남미, 러시아, 일본권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이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건당 4,000만원 이내
 - * 기업분담금 : 30%(단, 소기업 10%)
 -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 지원건수 : 기업당 1건

2 지원대상

- ※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등록 1건 이상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 IP Star 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진출(예정)국에 상표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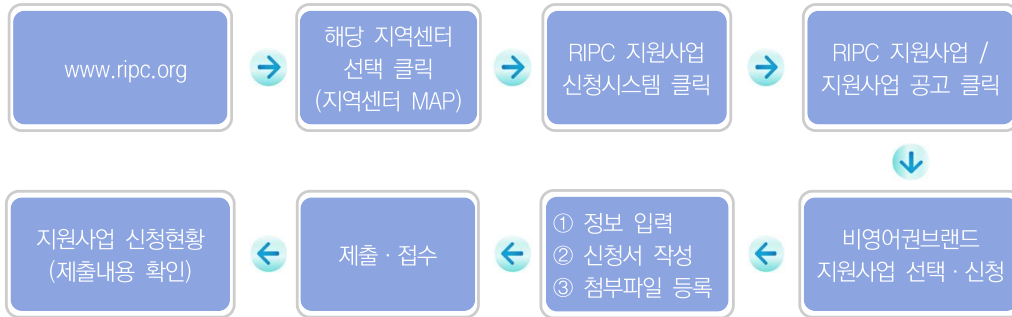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현지 브랜드 개발 및 해외 권리화 지원

4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경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구분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등

5 문 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2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6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 “비영어권브랜드 개발 후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특허청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G社 대표]
- ※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회사를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로 국내는 물론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해 네이밍은 물론 디자인, 중국 브랜드, 상표 권리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시 언어의 장벽 및 권리화 검토가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 전문가들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D社 차장]

■ 우수지원사례

- ※ H社 (주 생산품 : 요거트)
 - ‘요거베리’는 특허로 인정된 제품으로 가정에서도 전통적인 방법에 가깝게 건강한 요거트를 제조할 수 있는 국내최초의 ‘비전기식 요거트 발효기술’이 적용됨. 우수한 제품력에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중국 수출에 앞서 중국어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 세계 주요 수출 대상국가에 상표권을 확보.(매출액 '13년 4,827백만원 → '14년 14,826백만원 → '15년 34,000백만원 추정)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 ▶ 지식재산 경영심층진단을 통한 지식재산 경영 전략 제시
- ◆ 지식재산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업 needs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수립 및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한 심층진단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건당 1,0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10%)
 - * 기업분담금 : 모든 기업 10%
- ※ 지원건수 : 기업당 1건

2 지원대상

- ※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 IP 스타기업 참고
 - 지원선정 우대사항
 - IP-Star 지원 종료기업 대상 우대 선정
 - 매출액 100억 이상(2015년도 기준), 지식재산권 등록 10건 이상 보유기업

3 지원내용

- ※ 지식재산경영 심층진단 및 분석
- ※ 진단결과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현안문제 해결
 - 보유특허권 분석, 직무발명 도입, 회피설계 방안 등 지원

※ 지식재산경영 전략 제시

- 수혜기업 니즈(needs)에 맞는 지식재산 경영 전략 제공

※ 지원기준

- 수혜기업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지식재산 경영전략 분야 내용 제시

4 지원절차

※ 신청 기간 : (상반기) 3. 7 ~ 4. 1 (하반기) 6. 27 ~ 7. 22

※ 지원 기간 : 상/하반기 각 3개월

※ 접수 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 및 간이진단 활용 사이트 (www.ipcert.or.kr) 신청서 다운로드를 통한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간이진단 실시 결과물),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리스트, 기업재무제표, 기업분담금 납부 동의서 등

5 문 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7

6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 간이진단사이트 www.ipcert.or.kr
-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 “경쟁사 관련특허에 대한 조사분석이 심도있게 진행 되었고, 추후 후속특허에 대한 연구방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1차 진원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볼빅 정고은 연구원(15년 상반기 진행)]
- ※ “특허경영 현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아 약간 아쉬움이 있고 과제외의 규모별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센스 이재선 차장(15년 하반기 진행)]

■ 우수지원사례

- ※ W社 (주 사업분야 : 활 및 자전거)
 - 활 제품을 생산하는 보유 특허기술을 분석하여, 자전거 부품에 접목 될 수 있는 분야를 창출할 신시장 개척 연구방향 제시 컨설팅 제공
- ※ K社 (주 사업분야 : 건축 및 설계)
 - 보유특허 수준 진단으로 유지, 포기, 청구항 축소 등 특허 유지관리 분석으로 향후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유지 수수료 감면 금액발생으로, 특허 창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 예산 활용 컨설팅 제공
- ※ T社 (주 사업분야 : 전자부품 제작 및 생산)
 - 해당 제품들의 기술분류를 나누어 각각의 기술분류별 핵심특허 파악을 통하여 특허 창출방향제시 컨설팅 제공으로 각 기술분류별 특허출원 실시

CHAPTER 01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 지식재산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 제공

-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관련 지원사업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 지역 개인발명가 및 기업(누구나 상담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상담서비스 제공

- (창출)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이 보유한 사업화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등 자문 지원
- (활용)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거래 및 활용방안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 발굴 및 획득방안에 대한 상담 제공
- (보호) 수출준비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경고장 검토 및 대응방안, 피침해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상담 제공

- ※ 대기업 개방특허를 종합 분석하여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

- ※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분야별·수준별 지식재산 교육 제공

3 지원절차

- ※ 지원기간 : 수시지원

- ※ 신청방법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창구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4

문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0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4

5

관련사이트

- ※ 창조경제혁신센터 cpei.creativekorea.or.kr
-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 “작은 기업일수록 특화된 아이디어와 남다른 기술력은 치열한 기업간 경쟁에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력도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련 활동 지원으로 기업간 무한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C社 대표이사]
- ※ “IOT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특허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특허 문제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상담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해외 계약을 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G社 대표이사]

■ 우수지원사례

- ※ C社 (주 사업분야 : 자동차부품제조)
 - 기술창업의 경우 기존특허에 대한 분석 및 신규 특허가 가장 중요한데 어려운 용어 및 행정절차로 인하여 이해가 쉽지 않았으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허 지원창구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국내외 특허 권리화 및 특허전략을 수립함

CHAPTER 01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 ◆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또는 도입한 기업 중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신청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업 현황에 적합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방안을 안내합니다.

1 지원규모

※ 컨설팅 전문가 파견비용(실비)

2 지원대상

-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또는 도입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 ※ 우선선정기준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에 의지가 강한 기업
 - 직무발명과 관련된 애로 해소가 시급한 기업

3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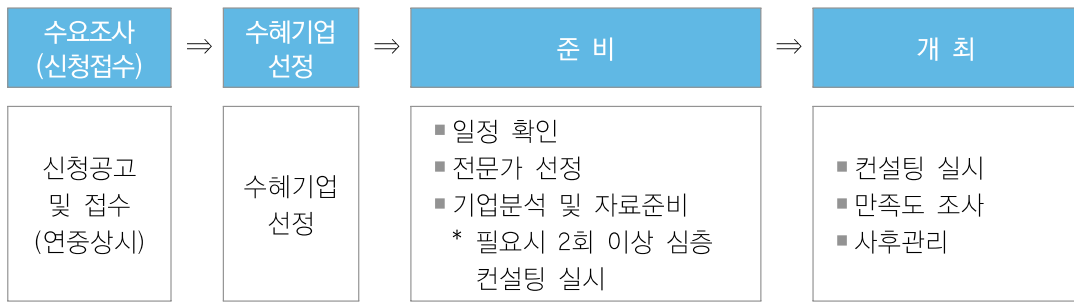
기업 컨설팅 지원	
목적	직무발명제도 규정 마련 및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강사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 컨설팅 전문가
일시·장소	기업과 전문가가 협의하여 결정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전략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해결방안 · 직무발명 보상제도 분쟁 대응방안 등

4 유의사항

- ※ 신청접수는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고, 신청기업이 많을 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기업 선정
- ※ 수행된 직무발명 컨설팅 중 일부 기업의 상담내역이 모범사례로 발굴되어 상담 내용이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5 지원절차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를 통해 신청 및 확인

6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8
-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0, 2848

7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employeeinvention.net

8 용어설명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10조)

※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특허권 등의 승계 혹은 전용실시권 설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발명진흥법 제11조의 2)

9 Q&A

Q1 컨설팅 지원 신청시 기업부담금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에 의해 정부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전문가 수당 및 강의 교재료 등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기업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Q2 컨설팅 지원 회수에 제한이 있나요?

A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업 상황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컨설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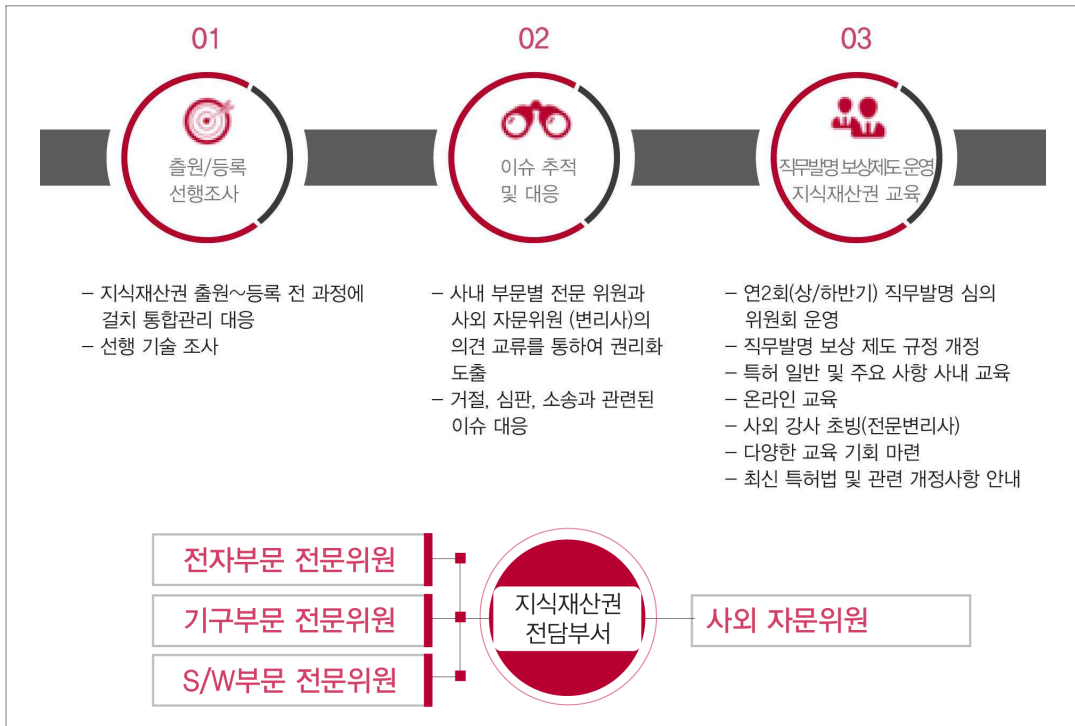
A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이를 통해 기술 축적과 이윤창출을 이룰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우수지원사례

※ (주)뷰웍스

• 특허전담부서 설립과 운영

(주)뷰웍스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설연구소 연구기획팀 내 전담 인력 2명을 육성하며, 크게 3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특허교육 실적

일 정	실 적	비 고
2011. 4. 13	산업재산권 일반, 선행기술검색,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제안서 및 명세서 작성 실무교육	사외 강사 초청 교육
2013. 4. 25	제안서 및 명세서 작성 실무, 특허청국범위해석, 명세서 작성 요령 교육	사외 강사 초청 교육
2015. 9. 16	부설연구소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선행기술 조사 및 이를 통한 경쟁기업의 특허 보유 현황 파악, 명세서 작성 전 관련 기술 선행 검토 기준/방법, 분쟁에서의 청구범위의 기능 및 이를 통한 발명제안서 작성 방법 교육	사외 강사 초청 교육
2013~현재	연구소 신규 입사자(신입/경력) 입사 시, 지재권 전담 부서에서 산업재산권 일반,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교육 진행	사내 교육
	기업체 지식재산 이러닝(IP-ACADEMY)운영을 통해 개별 맞춤 수강 지원	온라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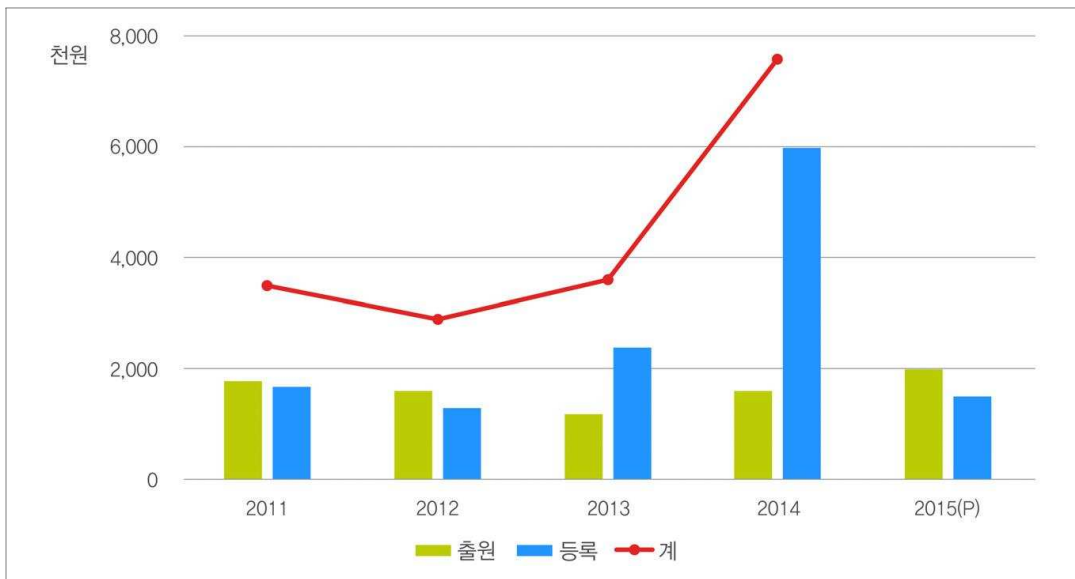
• 지재권 출원/등록 현황 (2000년~2015년 10월 30일 기준)

구분		특허		상표/서비스표		디자인		프로그램	비고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등록	
국내	-	33	23	12	9	3	3	32	
	전용실시	-	5	-	-	-	-	-	
	개별	9	4	7	4	-	-	-	
해외	PCT전체	6	-	-	-	-	-	-	-
	PCT국내	19	1	10	2	-	-	-	
	전용실시	-	1	-	-	-	-	-	

• 직무발명제도 보상실적 및 사례

(단위 :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지급 현황	3,500	2,900	3,600	7,600	3,500	21,100



(주)뷰웍스는 “X선 영상 촬영장치 및 그 구동 방법” 특허는 최초 한국과 미국에 출원 및 등록이 되었고, 파생 특허의 한국 출원 및 등록과 PCT 출원이 총 8개국 국내 단계 진입중이며, 특허권의 지속적인 관리로 범위를 확장하여, 당사의 핵심 기술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직무발명보상금(출원 보상금)

(단위 : 원)

구분	특허 출원	실용신안	의장
국내출원	200,000	100,000	100,000
해외출원	400,000		

• 직무발명보상금(등록 보상금)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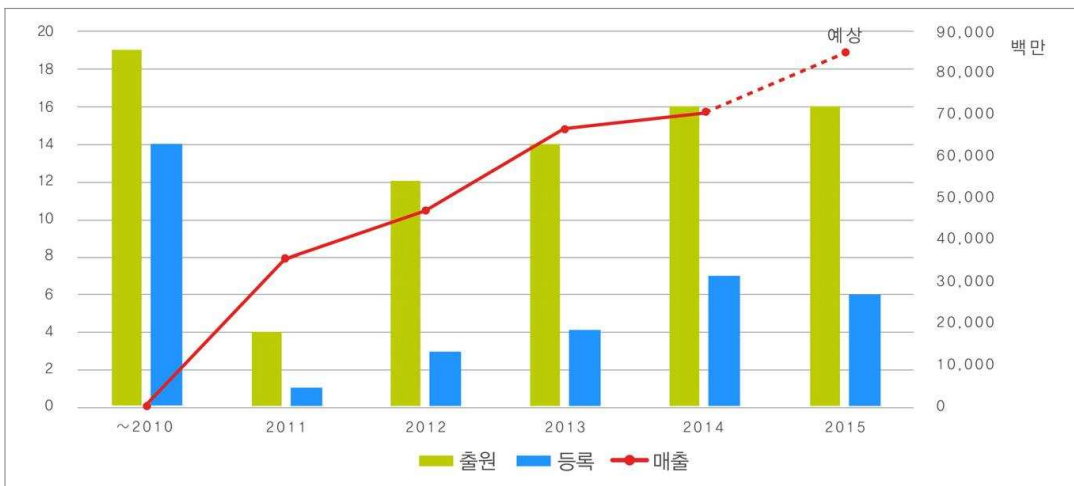
등급	평가점수	국내특허	해외특허	실용신안	의장
1등급	85~100점	1,000,000	1,500,000	200,000	100,000
2등급	70~85점 미만	800,000	1,200,000		
3등급	55~70점 미만	600,000	900,000		
4등급	40~55점 미만	500,000	750,000		
5등급	40점 미만	400,000	600,000		

• 제도 운영의 효과

일정	국내출원	PCT 출원	개별출원
제도 운영 전	11	1	-
제도 운영 후	29	12	9

상기 표와 같이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 출원이 많아지는 등 내부적으로 국내/외 특허 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연구소 IP단체 교육 및 신입 입사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반 교육수행, 연구 노트, 기술자료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에 있어 향후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매출의 변화



핵심 특허의 보유와 그에 따른 신제품 출시로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매출 증대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 특허권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참 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 중소기업을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을 신청한 경우 요청인 적격 등을 심사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파견하여 직무발명 관련 쟁점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컨설팅 전문가 파견비용(실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 *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회사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발명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종업원과 자문위원 파견 요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자문위원은 해당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사용자위원, 종업원 위원, 종업원의 주장을 검토하여 자문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제출

- * 종업원은 사용자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포함해야 함

파견된 자문위원의 자문 범위 (발명진흥법 제18조 관련)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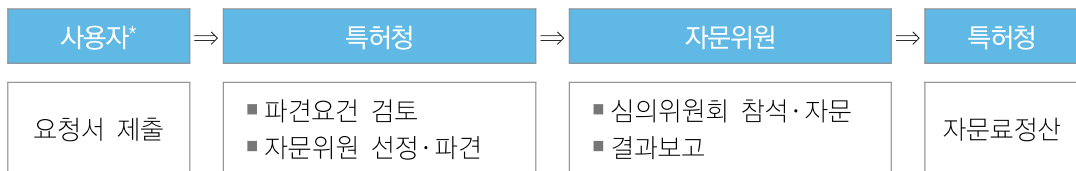
4.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수행된 직무발명 컨설팅 중 일부 기업의 상담내역이 모범사례로 발굴되어, 상담 내용이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신청 및 처리절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신청서류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의 파견 요청서

*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에서 다운로드

※ 신청접수

-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를 통해 신청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8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0, 2848

■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employeeinvention.net

■ Q&A

Q1 자문위원 파견요청시 기업부담금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정부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자문위원 파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기업의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Q2 자문위원 파견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자문위원의 파견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문위원 파견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므로 예산상의 제약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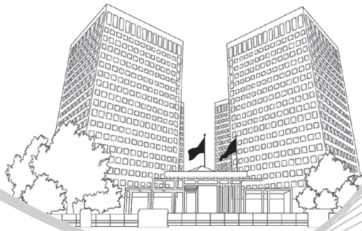
Q3 자문위원의 참석으로 기업의 비밀사항이 누설되는 것은 아닌가요?

A 자문위원은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8조에 의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www.kipo.go.kr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2 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 077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 087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090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 092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 095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097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100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 116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 CHAPTER 02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 ◆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지원대상

- ※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기업 간 협의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요건 해당 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요건 해당기업

2 지원규모

※ 지원 한도액 및 지원비율

구 분	컨설팅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28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20백만원	50%	20%	30%

* 컨설팅 유형 중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 대응은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3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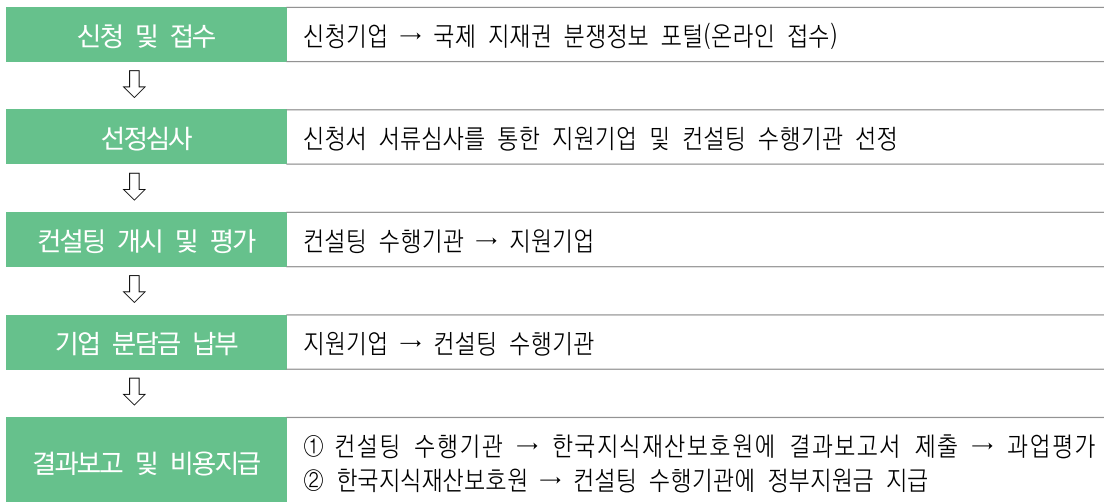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지원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 내용
수출전략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제공
현안전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등 특정 현안극복을 위한 현안전략 제공
K-브랜드 보호	상표·디자인 관련 해외 분쟁 예방·대응 전략 제공
스타트업 IP보호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전략 및 IP보호 전략 지원
소액	전주기적 컨설팅 내용을 소규모 업무단위별 지원

4 지원절차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사업공고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알림마당→사업공고'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지원사업→사업공고'

5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71~8 / ipkoipa@koipa.re.kr

6 관련사이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 지원기업 코멘트

※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였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약 5억원의 피해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분쟁해결로 미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 진행 단계부터 분쟁 예방 컨설팅을 통해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A사 법무팀장]

■ 우수지원사례

※ NPE와의 특허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

- NPE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고...
 - 중소기업 A사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미국, 유럽 등 50여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 수출 위주의 기업이다.
 - 이처럼 해외 시장에서 A사의 성장은 선진 경쟁사들을 포함하여 NPEs(Non Practicing Entities, 특허관리전문회사)로부터 특허 공격의 표적이 되어 A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특허 로열티를 받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 2009년에는 NPE인 X사가 A사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에 A사의 승소로 분쟁이 종결되었으나, 장기간의 소송 진행과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경영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A사는 X사와의

분쟁 이후 특허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품 출시 전 경쟁사의 특허를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 그러던 중 다른 NPE인 Y사가 2014년 미국에서 새로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A사로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로열티를 많이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
 - Y사와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A사는 유리한 종결(승소, 원고의 취하, 화해 등)을 목표함과 동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던 2009년 소송과 달리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다.
 - 그러나 A사는 자체 역량만으로는 Y사와의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느꼈고,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분쟁 대응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게 되었다.
 - 컨설팅을 통해 국내 분쟁 전문가는 Y사의 소송 대상 특허와 A사 제품 간의 침해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자료도 면밀히 조사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미국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현지 대리인에게 전달됨으로써 국내와 미국에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직접 침해분석과 무효조사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대리인이 우선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법률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
 - 또한 컨설팅을 통해 확보한 강력한 무효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의 특허 재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에 따라, A사는 미국에서 특허 재심사를 청구하여 대상 특허를 무효 시키겠다고 Y사를 압박하였다. Y사가 현재 A사 이외에도 10여개의 기업들에 대해 해당 특허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대상 특허를 무효화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면 Y사 입장에서는 향후 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수립한 전략이었다.
- 신속·저비용으로 유리하게 분쟁 종결
 - A사의 재심사 청구에 압박을 느낀 Y사는 A사와의 소송 진행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다. 이로써 A사는 처음 목표로 한 것과 같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A사는 미국에서의 분쟁이 신속히 해결됨에 따라 로열티, 법률비용 등 포함하여 약 5억원의 피해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A사처럼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허 지재권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축적된 분쟁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분쟁 이슈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 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 수출(예정) 제품에 대한 맞춤형 특허컨설팅 제공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내용〉

세부구분	지원 내용
사전 예방전략	직·간접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사전대응전략
특허보증 전략	바이어의 해외 특허 분쟁위험성 문제 제기시 분석 지원
전시회 출품 대응	해외전시회 예정시 사전 특허분쟁 예방전략 및 전시회 출품 전략

※ 컨설팅 수행내용

- 전략적 수출방안 제시를 위해 수출(예정)제품과 관련된 해외특허 조사·대응방안 분석 등의 수행절차를 맞춤형으로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컨설팅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28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20백만원	50%	20%	30%

참고 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해외기업과 특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소송, 라이선스, 권리침해 등 극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내용 〉

세부구분	지원 내용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침해중지 또는 로열티 요구)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소송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소송대응 및 협상 전략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 방안 및 로열티 등 협상전략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를 받아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권리행사 실행 등 피해방지

※ 컨설팅 수행내용

- 현안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상대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분석 및 협상전략·집행 등의 수행절차를 현안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컨설팅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28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20백만원	50%	20%	30%

참고 3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수출(예정) 종이거나 지재권 침해를 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해외 상표·디자인 관련 분쟁예방 및 대응 컨설팅 제공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내용〉

세부구분		지원 내용
	예방	수출(예정)시 또는 무단 해외선등록 침해시 상표 현지화 전략
대응	무단선등록	무단 해외상표·디자인 선등록에 대한 무효(취소·거절) 및 협상전략
	권리행사	해외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 컨설팅 수행내용

- (예방) 해외 유사상표 등을 고려한 현지 브랜드 네이밍, 권리화 전략 등 맞춤형 수행절차 추진
- (대응) 상대방의 권리 또는 제품 등을 고려한 맞춤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절차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컨설팅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예방 5백만원 대응 15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50%	20%	30%

참고 4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스타트업 기업 중 “소기업”
 - 스타트업 기업 : '11년~지원신청일 사이 창업한 기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소기업

■ 지원내용

- ※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전략 및 IP전략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내용〉

세부구분	지원 내용
사전 예방전략	직·간접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및 IP전략
특허보증 전략	바이어의 해외 특허 분쟁위험성 문제 제기시 분석 및 IP전략 지원
전시회 출품 대응	해외전시회 예정시 사전 특허분쟁 예방전략 및 전시회 출품 전략 및 IP전략

※ 컨설팅 수행내용

-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전략 및 적극적 IP전략 제시를 위해 회피설계·역공격특허 발굴을 중심의 수행절차를 맞춤형으로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컨설팅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물비율	현금비율
소기업	32백만원	80%	10%	10%

참고 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해외수출(예정) 중이거나 해외기업과 특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출·현안전략 컨설팅을 소규모 업무단위로 신속 지원

〈소액 컨설팅 지원내용〉

세부구분	지원 내용
위험분석	수출지역 해외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분쟁위험성 도출
대응전략	특정 해외기업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 시나리오 수립
회피기술 방안	해외기업 특허 회피를 위한 제품 설계변경, 특허 개발전략
계약전략	해외기업과의 기술관련 비밀유지계약서 또는 IP보증 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 컨설팅 수행내용

- 기업 희망 업무단위의 추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비즈니스 현황에 따른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속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컨설팅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위험분석	대응전략	회피방안	계약전략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10백만원	12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7백만원	9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50%	20%	30%

●● CHAPTER 02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독일, 일본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과 지식재산권 피침해 및 분쟁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비 용 지 원	상표·디자인 출원	현지에서 상표나 디자인 출원을 진행할 경우 소요비용과 진행 절차 지원 -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과한 권리에 한하여 지원
	세관 지재권 등록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해당 국가 세관에 등록할 경우 비용과 진행절차 지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 침해조사 및 행정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과 진행절차 지원
	침해감정서 작성	미국, 일본, 독일에서 분쟁 대응시 무효성 및 침해·비침해 판단을 위한 현지 로펌의 침해감정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재권 상담	현지 국가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지재권 상담 수시 지원 - 전화, e-mail, 내방 및 현지 출장 지원	
모조품 식별 세미나	중국 공상국, 지식산업국, 해관 등 모조품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이 직접 모조품 식별방법을 소개	
공무원 초청연수	현지 지재권 단속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공유	

* 세부 사항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안내 참고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¹⁾ 또는 중소·중견기업²⁾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1)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3 지원규모

구 분	지원 비율
상표·디자인 출원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1개 업체당 8건/年 이내) - (중국·베트남) 300\$/건 이내, (태국·일본) 500\$/건 이내 - (미국) 600\$/건(상표), 1,000\$/건(디자인) 이내 - (독일) 1,000\$/건(상표), 600\$/건(디자인) 이내
세관 지재권 등록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1개 업체당 8건/年 이내) - 중국, 태국 : 300\$/건 이내 - 미국 : 500\$/건 이내 - 독일, 베트남 : 1,000\$/건 이내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현지 소요 비용의 70% 지원(1개 업체당 3회 이내) - 중국, 베트남, 태국 : 1회당 6,000\$(행정단속 시 10,000\$) 이내 * 단, 2, 3회차부터 지원비용 각 50%, 30%로 조정
침해감정서 작성	현지 소요 비용의 70% 지원(年 3회/社) - 미국, 일본, 독일 : 1회당 10,000\$ 이내 * 단, 2, 3회차부터 지원비용 각 50%, 30%로 조정

* '현지 소요비용'은 IP-DESK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말함

4 지원절차

- ※ 신청기간 : 수시(단, 비용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서류 : 온라인 지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기업 증빙 자료 등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ip-desk.or.kr>), 우편 또는 e-mail (ip-desk@kotra.or.kr)로 신청(연락처 참조)

5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3573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 02-3460-3357~8

6 관련사이트

- ※ IP-DESK 홈페이지 www.ip-desk.or.kr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 우수지원사례

- ※ 우리기업의 의류 모조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발적 단속 사례
 - 품목 : 의류잡화(G사)
 - 침해내용 : 중국 선양시 최대 유통지인 우아이(五愛) 시장에서 국내 G사의 의류잡화 모조품이 대량으로 유통
 - 지원내용 : 심양 IP-DESK를 통해 중국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G사 제품의 모조품 식별세미나, 국내 상표 목록집 배포 등의 노력으로 중국 정부의 자발적 단속을 유도
 - 지원성과 : 19개 점포 단속, 모조품 795개 압수(정품시가 약 2억원 상당)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 ▶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 ◆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인 침해·분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 해외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2 지원내용

- ※ IP-DESK 미설치 지역의 무역관, 공관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법률자문, 침해조사)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지원비용	지원횟수
비용 지원	법률 자문	분쟁 예방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분쟁 위험요소에 대한 자문 * 선행특허, 유사상표 검색, 지재권 침해여부 검토 등	소요비용 50% (\$1,000 한도)	연 4건/1社 (분쟁 예방 및 대응 통합)
		분쟁 대응 경고장 접수 등 실제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 자문 * 상표 무단 선등록, 경고장, 이의신청 등 대응	소요비용 70% (\$3,000 한도)	
	침해 조사	○ 모조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및 행정단속* 지원 *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 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소요비용 70% (\$6,000 한도) * 행정단속 포함 시 \$10,000 한도	연 1건/1社

* 지원비용 중 소요비용은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및 침해조사 등 제공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의미

3 지원절차

- ※ 신청기간 : 수시(단, 비용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ip-desk@kotra.or.kr)로 신청(연락처 참조)

4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3573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 02-3460-3357~8

5 관련사이트

- ※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www.ip-navi.or.kr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 우수지원사례

- ※ 현지 경쟁업체가 무단 선출원한 상표를 되찾은 사례
 - 사례내용 : 전구·조명을 제조하는 P사의 상표를 호주내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선출원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요청
 - 지원내용 : 현지 전문가를 통해 상표 출원인과 접촉하여 부당한 출원임을 경고하고, 양도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절차를 통해 등록을 저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상표권 양도 의사 확인
 - 지원결과 : 호주 특허청에 권리자 변경신청을 제출하고, 2015년 10월 해당 상표 등록을 완료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료 지원
-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여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분쟁 비용 경감 및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 지재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요건 해당 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요건 해당기업

2 지원내용

- ※ 지재권 분쟁 위험 분산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 지재권 침해소송 및 권리방어, 피소 시 대응 등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장

구 분	내 용
보장 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보장 내용	권리행사(소제기) 및 권리보호 및 피소 대응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지원 비율	보장상품별, 기업규모별로 총 보험료의 80%~50%

- ※ '16년 수행보험사 :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3 지원절차



* 소액·방어보험은 '사전신청' 단계 생략

4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80, 5883, 5891, 5893 / ipkoipa@koipa.re.kr

5 관련사이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 지원기업 코멘트

- ※ “2012년 미국 시장 진출 시 경쟁업체인 미국 X사는 우리의 시장진입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미국 진출이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지재권 소송보험을 가입하여 2년여에 걸친 소송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결국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보험 가입지원 A사]

■ 우수지원사례

※ 지재권 소송보험을 활용한 짜릿한 승리!!

- A사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고 미국시장 진출 전 전시회에 출품하여 미국의 유명 유통체인을 비롯한 여러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는 등 미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B사로부터 특허소송을 제기당하여 미국 진출이 좌절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A사로서는 소송 진행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결국 분쟁비용 부담을 덜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A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 분쟁 리스크 분산을 통한 해외 진출 본격화
 - A사는 B사와의 특허분쟁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각 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물론 분쟁 리스크 분산 등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재권 소송보험의 가입을 통해 분쟁 리스크 분산 및 기업 경영의 안정이라는 큰 무기를 얻은 A사는 지속적인 R&D에 투자하여 미국 시장에 또다른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아시아·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장 확대를 꾀하여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CHAPTER 02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 국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 ◆ K-브랜드 보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분쟁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지원대상

- ※ 해외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2 지원내용

- ※ 해외 상표브로커 및 온라인 모조품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우리기업 브랜드 보호 및 분쟁예방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지원규모
협 의 체 지원	중문상표 브랜드 지원	· 상표브로커가 무단선점하여 피해가 발생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리네이밍 지원	2,000만원 한도
	해외 온·오프라인 모조품 대응	· 중국 모조품 생산·유통지를 중심으로 침해실태조사단 파견 및 침해조사 연계 지원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해당 국가 세관에 등록할 경우 비용과 진행 절차 지원	1,000만원 한도
	현안별 협의체 지원	· 기업 간 공동의 분쟁이슈 발굴 및 심화 분석·자문 등 공동대응 지원	
중국 오픈마켓(알리바바 등)에서의 모조품 유통차단		· 중국 오픈마켓 알리바바 그룹 내 우리기업의 모조품 유통관련 대리신고를 통한 판매게시물 차단·삭제	-
상표브로커 예방 및 대응 (K-브랜드 컨설팅)		· 해외 상표분석·분석정보 제공 및 수출(예정)기업 현지화 전략 제공 · 무단 선등록 상표권 이의신청·취소·무효, 협상전략, 모조품 제조·판매 권리행사 지원	중소70% (중견50%) 1,500만원 한도

* 지원규모는 과제 평가를 거쳐 한도액 내에서 차등지원
 ** 협의체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중견·대기업 중 3개사 이상 구성(단, 중소기업·중견기업은 2개사 이상 포함)

3 지원절차

- ※ 신청기간 : 수시(단, 비용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로 신청

4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2~6 / kipraglobal@koipa.re.kr

5 관련사이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 우수지원사례

- ※ 현지 모조품 유통에 대한 단속 지원 사례
 - (사례내용) 국내 화장품 기업인 A社は 중국 온라인 타오바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의 모조품 유통정황을 확인 후 침해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업체를 추적, 단속하여 완제품 1,275점 및 원재료 약 50톤, 생산설비 등 시가 50만 위안 이상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함(15.9)
- ※ 현지 상표브로커의 무단 선출원 상표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례
 - (사례내용)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인 B社は 중국으로의 진출을 계획하던 중, 약 4개월 앞선 '14년 11월경 중국 상표브로커인 A氏에 의하여 ‘△△△’ 상표와 전체적인 형태 및 도안이 유사한 상표가 선출원 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K-브랜드 컨설팅을 의뢰. 컨설팅 수행 로펌은 이의신청 및 무효방안 추진 검토, 방어상표 출원 등을 통해 상표브로커와 협상한 결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상표인수 완료

CHAPTER 02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www.ip-navi.or.kr

◆ 해외 진출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분쟁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지원대상

※ 해외 진출 기업 또는 진출 예정 기업

2 지원내용

※ 국제 IP분쟁동향(IP-Daily, IP-Insight), 분쟁동향 연구보고서, 주요국 지재권 판례 정보 및 국가별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등을 제공

※ 웹사이트 구성

분쟁정보	판례정보	지원사업	IP-NAVI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Daily • IP Insight • IP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동향 보고서 NPE 보고서 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핵심판례 보고서 • IP Guidebo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5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체코포인트 • Global Agency Information • Related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DESK 지재권 뉴스 Issue&Focus on IP 심층분석보고서 지재권 미디어 뉴스 지재권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워드 검색 • 판례 카테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실용 상표 디자인 • 판례심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별 판례심층분석 이슈 판례정보 • 해외 지재권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컨설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안내 지원사업 절차 양식 자료실 컨설팅 신청 협의체 신청 • 소송보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안내 소송보험 신청 • IP-DESK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안내 • 해외초동대응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안내 전문가풀정보 • K-Brand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안내 중국 모조품 대리신고 • 상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 IP-DESK 분쟁대응 • 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NA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재권 분쟁정보 분쟁지원 사업 • 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지사항 사업공고 입찰공고 교육세미나 소식 유관기관 소식

3 이용방법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

4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425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28 / swhong@koipa.re.kr

5 관련사이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 IP Insight 메뉴 화면 〉

The screenshot shows the IP-NAVI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the logo for K-IP 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분쟁정보', '판례정보', '지원사업', and 'IP-NAVI 소개'.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IP Insight' and includes a search bar with a 'SEARCH' button and a dropdown menu for '제목+내용'.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tabs for '전체', '미국', '중국', '일본', and '유럽연합'. A table of search results is displayed, with columns for '번호', '제목', '국가', '조회', and '등록일'. The table lists various international IP cases, such as '미국 특허소권을 불인정한 연방 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and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할머니보쌌" 상표에 대한 침해 인정'.

번호	제목	국가	조회	등록일
7908	미국 특허소권을 불인정한 연방 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미국	25	2016-03-18
7981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할머니보쌌" 상표에 대한 침해 인정	중국	52	2016-03-11
7975	미국 유도침해의 주관적 요건을 확립한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	미국	72	2016-03-04
7974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특허사실유포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사건	일본	42	2016-03-04
7876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제4차 중국 특허법 개정에 대한 최신 입법안 발표	중국	148	2016-01-21
7853	상상권자 미국 연방대법원에 Apple사와의 제1차 소송에 대한 이송명령 신청	미국	169	2016-01-13
7822	미국 연방순회합소법원 상상권자의 영구적인 금지명령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사 신청 기각	미국	145	2015-12-31
7821	영국 항소법원 Actavis v. Eli Lilly 판결에서 1상법원의 특허 비침해 판결 기각	유럽연합	178	2015-12-30
7805	미국 연방순회합소법원 특허제품과 침해제품의 가격이 상이한 경우에도 일괄이권 인정	미국	108	2015-12-29
7799	독일 연방대법원 Apple사의 slide-to-unlock 특허 무효로 판결	유럽연합	125	2015-12-28
7797	2015년 6월 13일, 일본이 가입한 헤이그협정 발효	일본	132	2015-12-21
7777	미국 연방순회합소법원 태아의 유전적인 특성 진단방법에 대하여 특허대상격 부정	미국	163	2015-12-09
7748	중국 지식재산권국 최근 중국 특허출원 동향 발표	중국	200	2015-12-02

〈 판례검색 메뉴 화면 〉

지식재산 보호 지원

〈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메뉴 화면 〉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www.tradesecret.or.kr

◆ 영업비밀의 생성·관리·입증 단계까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활동을 통합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2

지원내용

※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침해 발생 시 해당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 운영

※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 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실태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

※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 영업비밀 보호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 및 경영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영업비밀 유출 시 분쟁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교육, 보호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용 시스템 제공, 영업비밀 보유시점 인증 지원 등 Total 개념의 공공 서비스 제공

※ 영업비밀 신고·상담

- 전화·인터넷·방문 및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분쟁 초동대응, 관리방안 등) 및 수사기관 등 연계 지원

※ 영업비밀 보호 교육

- 기업 대상 방문·지역순회·정기·심화교육 등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이론·실무 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교육 콘텐츠 배포

3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53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 tsep_help@kipi.or.kr

4 관련사이트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7-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서비스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존재 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추정호 부여(제9조의2 제3항, '15. 7. 29 시행)



※ 전자지문(SHA-256bit Hash값) |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나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완벽히 증명가능.

※ 타임스탬프 | 특정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

서비스 제공방법



서비스 활용사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 유출의 사전 예방에서 분쟁 시 입증책임 부담완화의 역할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 시 선사용권 및 모인출원 입증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전	선사용권 주장 시	모인출원 대비용	직원이직 대비용	경진대회 출품 전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요구 시 대비책으로 활용합니다.	타사 특허와의 분쟁 시 선사용권을 주장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합니다.	기술말회에 따른 모인(형량)출원 발생 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활용합니다.	직원의 이·전직 등에 따른 타사로의 기술 유출에 사전에 대비하여 활용합니다.	출품작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의 수단으로 출품 전 등록하여 활용합니다.

서비스 종류

» **원본등록**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가지고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 정보를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 **원본검증**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된 정보와 이용자가 보유한 원본 전자문서의 정보를 대조하여 원본 진위 여부를 온라인으로 검증합니다.



» **원본증명** 보관 중인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보관 중인 전자지문을 대조하여 원본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법원 등 외부기관 제출용 원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오프라인 발급)

■ 중소기업 대상 원본증명 비용지원

※ 지원대상 : 학생, 중소기업, 벤처기업(최대 30건, 70% 할인)

■ 이용 요금

◆ 요금안내

원본(전자지문)등록은 기본요금, 유지요금 및 할증유지요금으로 구분됩니다.

원본증명서비스	기본요금	신규로 원본(전자지문)등록 시 부과되는 비용
	유지요금	원본(전자지문)등록 후 1년 경과 전 등록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
	할증유지요금	원본(전자지문)등록 후 1년이 경과되고 등록 유지 추납기간(6개월) 경과 전 등록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

◆ 이용요금

구분		금액(VAT포함)	비고
원본 (전자지문) 등록	기본요금	10,000원/건(1년)	
	유지요금	3,000원/건(1년)	원본(전자지문)등록 이후 보관기간(1년) 이내
	할증유지요금	9,000원/건(1년)	보관기간(1년)만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유지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등록유지 신청은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보관기간(1년) 만료 후 등록 유지 추납기간(6개월) 내에 유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본(전자지문)등록 자료는 폐기됩니다.

◆ 이용요금 결제방법

이용요금 결제를 위해서는 이용 포인트를 선구매하셔야 합니다. (10,000 원 = 10,000 Point)

이용 포인트는 "원본증명 > 상품구매" 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할인

이용 포인트 구매 시 아래와 같이 이용건수 별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분	이용건수	할인율
1	5~50건	-
2	51~100건	10%
3	101건~1,000건	20%
4	1,001건~5,000건	30%
5	5,001건~10,000건	40%
6	10,001건 이상	50%

기본 포인트와 함께 위의 할인된 금액만큼 추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예1) 50건 결제 시 500,000 원 = 500,000 포인트

예2) 100건 결제 시 1,000,000원 = 1,050,000 포인트

*기본 50건 외 추가 50건에 대한 10% 할인요금에 해당하는 포인트(50,000) 추가 지급

**1,000건 결제 시 10,000,000원 = 11,850,000포인트

■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53
-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 tsep_help@kipi.or.kr

■ 관련사이트

-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 ※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 지원기업 코멘트

- ※ “기술보호 수단으로 기술임치제도 이용을 검토하던 중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유중인 기술자료를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유용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M社 대표(전자기 측정 시험 기구 제조 중소기업)]

■ 우수지원사례

- ※ 특허 출원 전 기술자료 등의 보호수단으로 활용
(기업) L社(화학)
(목적) 자사 내 특허관리 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연계하여 특허로 출원할 수 없는 기밀사항이나 출원 전 기술자료들에 대한 관리·보호수단으로 이용
(계획) 현재 연구소 내에서 활용 중이나 전사적으로 이용범위 확대 예정

7-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 컨설팅 소개

- ※ 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전문가가 영업비밀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는 무료 진단 서비스

■ 컨설팅 절차

기업에서 작성한 체크리스트(설문)를 토대로 기업에 방문한 전문가가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평가 후 결과분석을 제공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규정 마련, 관련 법률적 검토에서부터 보안 시스템 도입 등의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문가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취약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컨설팅 분야



» 정책관리

영업비밀 접근권한 정책, 관리규정의 제정·준수·감사 활동, 관리조직의 운영 및 정기 교육 실시 여부 등

» 취급관리

영업비밀의 등록, 비밀의 표시 및 보관 형태, 사외 반출절차, 비밀의 생성·사용·폐기 등 전 과정 기록 관리 여부 등

» 인적관리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징구·보관, 영업비밀 보호의무 부과, 협력업체 관리, 퇴직자 관리, 영업비밀 관리규정 위반 시 징계 규정 구비 여부 등

» 물리적 관리

통제구역 보호, 출입절차, 감시 장비 설치, 카메라 등 촬영장비 및 컴퓨터·USB 등 저장매체 반입 통제 여부 등

» 기술적 관리

서버 및 DB보안점검, 보안솔루션 운영, 영업비밀 저장 기록매체 취급, 전자문서 발송제한, 패스워드 관리, IT 기기 보호, 망분리, 로그기록 보관 여부 등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53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 tsep_help@kipi.or.kr

■ 관련사이트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 지원기업 코멘트

※ “전문가에 의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 유출 시 대응능력 및 임원과 직원간 보호인식 수준 등에 대한 상세한 진단과 함께 상담을 받아, 사내 보안체계 구축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L사 연구기획 담당(기계제조 중소기업)]

■ 우수지원사례

※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전략 수립 지원

(기업) K社(제조업)

(목적) 기술유출 피해로 사내 관리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던 해당 기업은 실태 진단 및 전문가 파견 상담을 통해 사내 관련 규정 정비 및 보안 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 중

7-3.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프로그램 소개

영업비밀 보호·관리가 취약한 기업에서 주요 기술자료 및 경영자료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정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 법률상담 및 영업비밀 관리용 시스템 설치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기본혜택	특별혜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및 설치비용 무료 제공 (필수) 2.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관리방안 교육 (연1회) 3.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실시 (연1회) 4. 사내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시 감수 지원 (요청 시) 5.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컨설팅 연계 지원 (요청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등록 및 유지 비용 면제 (월10건) 2. 시스템 출장방문 유지보수 무상 지원 (연2회) 3. 영업비밀 심화교육 및 정기교육 수강료 면제 (연2-3회) 4. 중소기업청 기술지킴서비스 연계 (요청 시) 5. 영업비밀 관련 교육자료 및 온라인 소식지 제공 (수시)

지식재산 보호 지원

프로그램 주요 서비스



프로그램 기대효과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53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 tsep_help@kipi.or.kr

관련사이트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7-4. 영업비밀 신고·상담

■ 신고·상담센터 소개

영업비밀 피해 및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적합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합니다.



■ 상담종류

초동대응 상담	<p>상담내용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이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하여 부경법 적용 가능여부, 법률 검토에 필요한 자료목록, 소송비용 견적 등 상담</p> <p>상담비용 무료 (기업당 1회 지원)</p> <p><small>* 외국·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사건의 경우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원활한 수사·소송 과정을 지원합니다.</small></p>
법률 상담	<p>상담내용 영업비밀 개념 및 종류, 영업비밀 관련법규, 영업비밀 침해유형, 영업비밀 사전보호 방안, 영업비밀 침해 구제방안(민사적, 형사적), 영업비밀 보호법률 개정(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등</p> <p>상담비용 무료</p>
관리 상담	<p>상담내용 영업비밀 관리계획, 제도적 관리방안, 인적 관리방안, 물리적 관리방안, 관리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대책, 영업비밀 특정,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및 표준관리 시스템 안내</p> <p>상담비용 무료</p>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53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 tsep_help@kipi.or.kr

◆ 특허청 & 경찰청 상호 업무연계 안내

-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수사상담을 전국의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의뢰하고, 경찰청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법률 상담을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요청함으로써 양 기관 간 상호 업무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 경찰청은 공정한 기업 활동 분위기 조성 및 주요 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국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발대('10. 7. 29)

■ 경찰청 영업비밀 유출 신고·상담

대표전화 1566-0112			
서울청	02-700-6256 / 6266	부산청	051-899-3677 / 3877
경기청	031-888-2798 / 2898	대구청	053-804-2376
인천청	032-455-2598	울산청	055-261-8692
경남청	055-210-2826	충북청	043-240-2078

사이버경찰청 <http://cyber112.police.go.kr>

※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원센터」와 전국 8개 지방청에 전담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년 기준 영업비밀 국내외 유출 84건(311명 검거) 해결

- 기업 대상 영업비밀 보호 교육·설명회 : 특허청과 경찰청은 합동 지역설명회를 실시, 예방교육 및 피해 신고·상담을 지원
 ※ 11년 경찰청은 국내 988개 기업과 해외 진출 국내기업 240개 대상으로 기술보안교육 실시

■ 유관기관

구분	연락처	홈페이지
특허청	1544 - 8080 (상담센터)	www.kipo.go.kr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111 (콜센터)	www.111.go.kr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02 - 553 - 5861	www.kpaa.or.kr
산업통상자원부	1577 - 0900 (고객센터)	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02 - 3489 - 7000	www.kaits.or.kr
중소기업청	1357 (대표번호)	www.smba.go.kr
기술자료 임치센터	02 - 368 - 8761	www.kescrow.or.kr
기술보호 상담센터	02 - 3787 - 0477	www.tpcc.or.kr

■ 관련사이트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 우수지원사례

※ 영업비밀 유출사건을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인계

(유출경위) 회사의 직원이 영업용으로 제공받은 제품 샘플을 유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유사품을 제작한 후 前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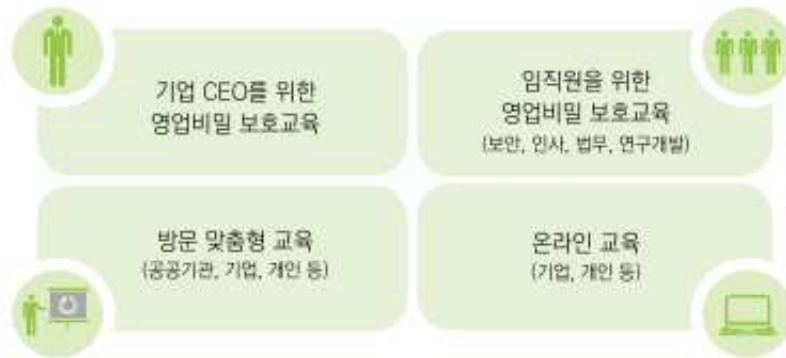
(피해규모) 제품 개발비,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

(지원내용) 영업비밀 유출 시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안내한 후, 상담자가 형사상 조치를 희망하여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로 사건을 인계

7-5. 영업비밀 보호교육

교육 소개

영업비밀 보호문화 확산 및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분쟁대응 능력배양을 위해 설명회 등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간	1일 (약 1~2시간 소요)	교육기간	1일 (약 6시간) 3일 (약 18시간)
교육특징	영업비밀 보호 인식개선· 제고가 필요한 기업에 영업비밀보호센터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가 방문 진행	교육특징	영업비밀 관리인력을 위한 전문 심화교육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 병행
교육일정	연중진행	교육일정	연 3~4회 예정
교육기간	1일 (약 2~3시간 소요)	교육기간	센터 홈페이지 이용 (약 2~3시간 소요)
교육특징	지역지식재산센터·각종 협회와 연계하여 전국의 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설명회 실시	교육특징	영업비밀 기초부터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
교육일정	연중진행	교육일정	상시 가능

교육 콘텐츠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 관리에 유용한 정보와 영업비밀 보호교육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기업에서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 관리 가이드 및 경업금지
약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수록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침해행위,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 등에 관련한
판례정보 수록



**영업비밀 표준관리
체계구축 핸드북**
표준관리 체계구축 개요,
준비단계, 진단단계,
계획수립단계, 사후관리 등
내용 수록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핸드북**
시스템 개요, 인터페이스,
운용지침(사용자/관리자)
등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참조사항 수록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관리비법**
영업비밀 관리방안 3권을
세트로 구성
1. 영업비밀 보호제도
2. 영업비밀 관리방안
3. 영업비밀 유출 대응사례



**나원본씨의
영업비밀 이야기**
만화와 도표로 배우는 영업
비밀 보호 비법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53
-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 tsep_help@kipi.or.kr

관련사이트

-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 ※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www.kipo.go.kr/adr

◆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 해당)을 보유한 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발명진흥법 제43조의2)
- ※ 신청대상 분쟁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 해당)에 관한 분쟁(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 (발명진흥법 제44조)

2 **지원내용**

- ※ 분쟁조정 신청 시,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
 - 쟁송능력이 부족한 영세 산업재산권 권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조정이 잘 되었을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이 수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음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 ※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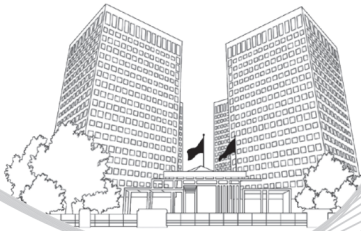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25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www.kipo.go.kr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3 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121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145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제 3 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www.kipo.go.kr



1

○ 제 1 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 123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128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132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136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141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 기술력에 비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특허기술가치에 소요되는 평가 비용 지원
- ◆ 특허청이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평가된 특허기술에 대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식재산
금융
지원

1 지원규모

- ※ 평가수수료 : 500만원/건당 지원
- ※ 사업화자금 보증지원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2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 (지원 기간)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매년 1~2월 공고)
- ※ 주요 지원내용
 - (특허청)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수수료 지원
 - (기보·신보)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평가금액 내에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4 유의사항

- ※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전용실시권자의 신청일 경우 사업신청 및 수혜에 대한 상호 합의서를 제출해야함

※ 보증 여부는 기보, 신보에서 판단하고(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신청가능), 특허청은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 비용 지원

5 지원절차

※ 처리절차



※ 신청접수

- 신청서는 보증기관 각 지점에서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로 접수

6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02-3459-2935, 2938, 2947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2-2155-3761
- ※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 영업점 검색(www.kibo.or.kr)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본부	02-3215-5900	인천본부	032-830-5600
경기본부	031-8006-1500	충청·호남본부	042-610-2231
영남본부	1544-1120	-	-

* 상기 연락처는 기술보증기금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기금 053-430-4358

※ 신용보증기금 각 지역 영업점 검색(www.kodit.or.kr)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서부분부	02-2077-6680	경기본부	031-230-1579
서울동부분부	02-2204-6763	인천본부	032-450-1649
대구경북본부	053-430-8999	충청본부	042-250-2199
부산경남본부	051-605-3131	호남본부	062-607-9190

* 상기 연락처는 신용보증기금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8 용어설명

※ 특허기술가치평가 : 특허 출원 또는 등록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실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9

Q&A

Q1 신청일로부터 시작해서 자금을 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자금을 받기까지는 2개월 내외로 소요되고 우선 보증기관 방문 및 상담 후 평가비용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평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보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자격 및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A 기술보증기금의 일반 기술보증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일반보증 한도 초과 기업, 창업 기업, 매출감소 기업 등 신용도가 취약하고 재무구조가 어려운 상황의 기업) 중 신청일 현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특허권자와 상호 간 합의서 제출)을 보유한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보증기관 중 한 곳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보, 기보 중 어느 한곳에서 보증을 받은 상태라면 다른 보증기관에서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기업, 보증사고 기업 등 보증금지(제한) 기업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화진척이 없거나 기술평가 등급이 B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수지원사례

※ I사 <금융연계평가를 통해 사업자금 확보>

- I사는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보유 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
- 특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기술가치금액이 높아 '08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680백만원 보증지원 받음
- 지원 전, 매출액이 83백만원에서 지원 후에 급성장하여 '09년 8,510백만원 달성하였고, '11년 관련분야 3위 업체인 O사에 360억원에 M&A 되었음(I사 대표는 M&A 후에도 대표직 수행 중)

※ M사 <금융연계평가를 통해 사업자금 확보>

- M사는 총 대출액 1,040백만원(기보보증: 430백만원)수준으로 사업 확대를 위한 추가 대출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때, 운전자금 확보를 위하여 물적 담보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510백만원 보증지원 받음
- 대출 지원금을 토대로 동 특허를 이용한 컨덕터로 I전기전자, K전기, J전기 등 3곳 업체에 판로를 개척. 현재 4.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14년도에는 국내매출 6억 달성과 추가로 3개 업체와 납품거래 진행확정 예정

< 제품 이미지 >



지식재산
활용
지원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 지원
- ◆ 특허기술평가를 투자심의에 활용함으로써 기술력 중심의 우수특허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1 지원규모

- ※ 평가수수료 : 평가비용 90%(최대 1,350만원 지원)(10%, VAT 자부담)
 - 기술평가보고서 착수 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 부담금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보고서 완료 시 나머지 금액을 한국발명진흥회가 평가기관에 제공

2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해외투자자 등을 포함

3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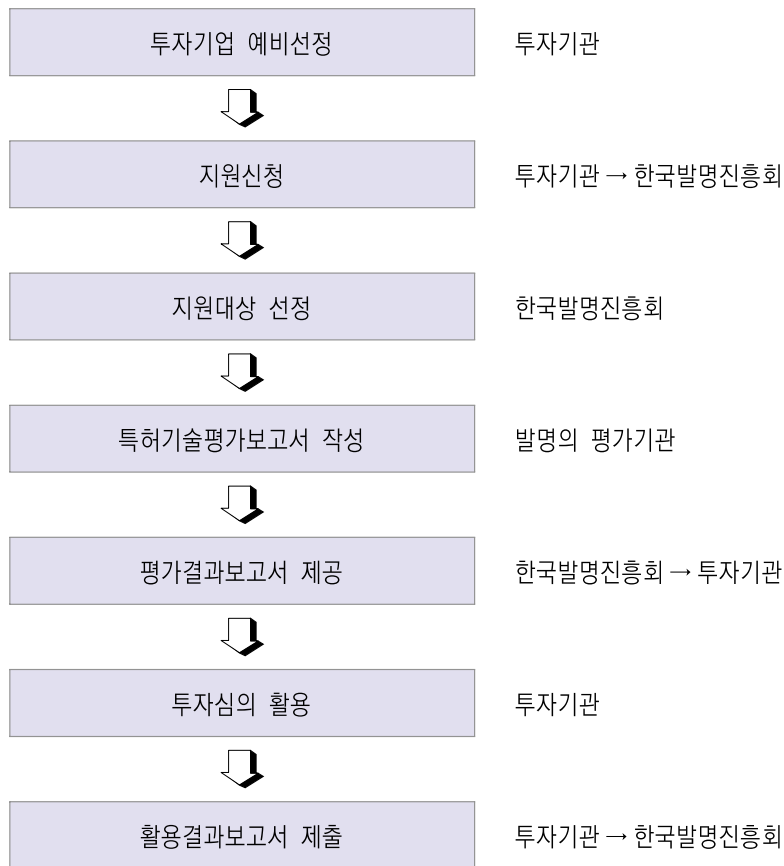
- ※ (지원 기간)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매년 1~2월 공고)
- ※ 주요 지원내용
 - (특허청) 평가비용 지원
 - (투자기관) 가치평가결과를 토대로 투자 결정 여부 검토

4 유의사항

- ※ 투자자(기관)는 신청인이 직접 발굴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신청서류에 투자자(기관)와 기업의 직인을 동시 날인하여 신청

5 지원절차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를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출
- * 온라인 : pid@kipo.org, 오프라인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6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02-3459-2935, 2938, 2947
- ※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연락처

평가기관	문의 전화	평가기관	문의전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평가센터)	02-3459-2886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02-2155-3774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02-787-4079	한국과학기술정보(연) www.kisti.re.kr	02-3299-60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ariat.or.kr	평가기반 구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www.kcl.re.kr	02-3415-889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www.ktc.re.kr	031-428-3813	한국화학융합시험(연) www.ktr.or.kr	02-2164-016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055-791-332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ww.efact.or.kr	031-8012-7382
(주)웍스 www.wipscorp.com	02-726-1265, 9845	특허법인 다래 www.daraelaw.co.kr	02-3475-8895

7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8 용어설명

- ※ (특허기술가치평가) 특허 출원 또는 등록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 ※ (엔젤클럽)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엔젤)들의 모임

9

Q&A

Q1 투자자가 있어야 평가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자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지요?

A 주선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기관(벤처캐피탈 협회, 엔젤클럽)에 홍보를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2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는지요?

A 투자유치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는 투자유치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안내 → 사업화 및 자금지원 →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수지원사례

※ H사 <특허기술평가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성공>

- H사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99.999%의 고순도 Al₂O₃(알루미나) 분말 제조를 국산화하여 관련 특허 3건을 보유한 기업으로 O사와의 공급계약이 성사되는 등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S투자기관과 투자협상 진행
- S투자기관은 H사에 대한 투자검토용 특허기술평가를 요청하여, 평가지원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 수행
- 평가결과를 토대로 H사의 특허기술경쟁력과 권리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S투자기관은 20억원 규모의 투자 결정
- H사는 투자금으로 년 생산량 300여톤 규모의 생산공장 완공('12.3)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 특허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특허청에서는 담보대출용 특허기술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기업 추천 및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을 실시해 드립니다.

1 지원규모

- ※ 지원비용 : 평가 총비용(5백만원) 중 3백만원 지원(금융기관 2백만원 지원)
- ※ 대출한도 :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50억원

2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 (지원 기간)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매년 1~2월 공고)
- ※ 주요 지원내용
 - (특허청) 평가비용 지원
 - (KDB산업은행) 가치평가결과를 토대로 담보대출 여부 검토

4 유의사항

- ※ 동 지원사업은 IP 담보대출 시 담보가치 평가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 및 대출상담은 KDB산업은행에서 이루어짐

5 지원절차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신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로 접수하며, 예비평가 및 평가수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및 은행에 문의

6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02-3459-2935, 2938, 2947
- ※ KDB산업은행 1588-1500

지식재산 활용 금융 지원

7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 KDB산업은행 www.kdb.co.kr
- ※ 기업은행 www.ibk.co.kr

8 용어설명

- ※ (IP 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만을 담보(질권설정)로 대출을 받는 대출 상품의 일종
- ※ (IP 가치평가) IP 담보대출에서 IP 가치평가란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액이 결정

9 Q&A

Q1 소기업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A 소기업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 중 산업은행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Q2 담보 설정 후, 담보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설정(질권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보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은행으로 이전됩니다. 은행은 이전받은 지식재산권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을 대출상환금으로 사용하게 되며, 매각 후에도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차주(대출받은 기업)가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우수지원사례

✧ M사

- J 대표는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6년 N스크린* 플랫폼 전문 기업을 창업했다.

* N-screen :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단말기를 통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감상하는 것

- 2000년대 후반 들어 스마트폰 발전과 스마트TV 등의 출현으로 N스크린 시대가 열리면서 M사의 기술은 점점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굴지의 IT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했고 KT 등에서 지분 투자까지 받았다.
- M사는 연구개발(R&D)에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시장 다각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은행의 높은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KT가 주주로 참여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었지만 은행은 늘 부동산 담보를 요구했다.
- J대표는 KDB산업은행이 특허 등 IP(지식재산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변리사 등이 참여하는 정밀실사를 거쳐 M사는 특허에 대해 가치를 인정받아 8억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 연매출이 50억원 안팎인 M사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투자금이 되었다. 금번 지식재산 담보대출 제도를 활용하면서 J대표는 “필요한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으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보강해야 할 기술력이 어떤 점인지 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 중소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특허기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1 지원규모

※ 특허기술평가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자부담 30%)

2 지원대상

-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 (우대사항) 표준특허, 녹색인증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중점육성과제기술,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및 인증 기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발명관련 수상 및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

3 지원내용

- ※ (주요 지원) 평가기관을 통한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지원 기간) 연 1회 사업공고 실시(매년 1월 공고) 및 평가기관 책임운영제를 통한 수시 신청·접수

〈 발명의 평가기관 〉

평가기관명	연락처	평가기관명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평가센터)	02-3459-2886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02-2155-3774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02-787-4079	한국과학기술정보(연) www.kisti.re.kr	02-3299-60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ariat.or.kr	평가기반 구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www.kcl.re.kr	02-3415-889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www.ktc.re.kr	031-428-3813	한국화학융합시험(연) www.ktr.or.kr	02-2164-016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055-791-332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ww.efact.or.kr	031-8012-7382
㈜유플스 www.wipscorp.com	02-726-1265, 9845	특허법인 다래 www.daraelaw.co.kr	02-3475-8895

4

지원절차

※ 처리절차



※ 신청 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 가점 증빙서류
- * 1차 심의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이용
- * 회원가입(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특허기술평가 지원 신청

5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02-3459-2932, 2947

6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7 용어설명

- ※(표준특허)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표준과 일치하는 특허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할 수밖에 없는 특허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 ※(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
- ※(특허기술평가보고서)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자금조달,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한 보고서

- ※(관리기관) 특허청장이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말함
- ※(평가기관) 특허청에서 지정된 발명을 평가하는 기관

8 유의사항

-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
- ※ 신청인 기준으로 작성(개인의 경우 해당 사항만 작성)
※ 유사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지원제외
-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9 Q&A

Q1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후속 지원은 있는지요?

A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완료된 평가보고서를 그 목적에 따라 수요처에 제공하여 평가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용 평가의 경우 특허거래 전문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활용분야 중 현물출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특허기술의 현물출자란 회사설립 또는 회사 운영 중 현금 대신 특허기술이라는 현물을 출자하여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허기술이라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환산하는 가치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의 일반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평가신청(기술평가기관에게 평가의뢰) → ②평가실시(기술평가기관) → ③평가완료(평가 보고서, 신청인에게 가액 통보) → ④현물출자 조사 신청(이사가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 ⑤검사인(회계법인) 조사 → ⑥검사(조사)보고서 제출(법원심사) → ⑦현물출자 완료(이사에 등본 교부)

■ 우수지원사례

※ A사 <현물출자용 평가지원>

- 특허성분을 적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제작·유통·수출 판매하는 코스메슈티컬 전문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 기능성 화장품 관련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이때,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여드름 피부용 저자극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기술 평가를 통하여 우수특허기술로 선정됨으로써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 4억 2천만원의 현물출자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로 A사는 급성장해 KOTRA 글로벌 보증 브랜드 선정을 통해 우수한 제품력을 인증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매출 액을 2배 이상 증대시킴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음

※ H사 <현물출자용 평가지원>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체인 H사는 사업의 확대를 위해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2년 특허성분을 적용한 “오미자 및/또는 산머루 추출물을 함유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 완화제”에 대한 특허기술 평가를 지원 받음
- 이를 통해 3억 3천만원의 현물출자에 성공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해당 기술의 제품개발을 추진하여 동사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500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전세계 항암제 시장에 큰 산업적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됨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교육/컨설팅/맞춤형컨설팅/IR 클리닉)을 통한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 ◆ 기업-멘투(투자자)간 네트워크 형성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업의 성장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
- ※ 우수 IP를 보유한 창업 3~7년차 유망 성장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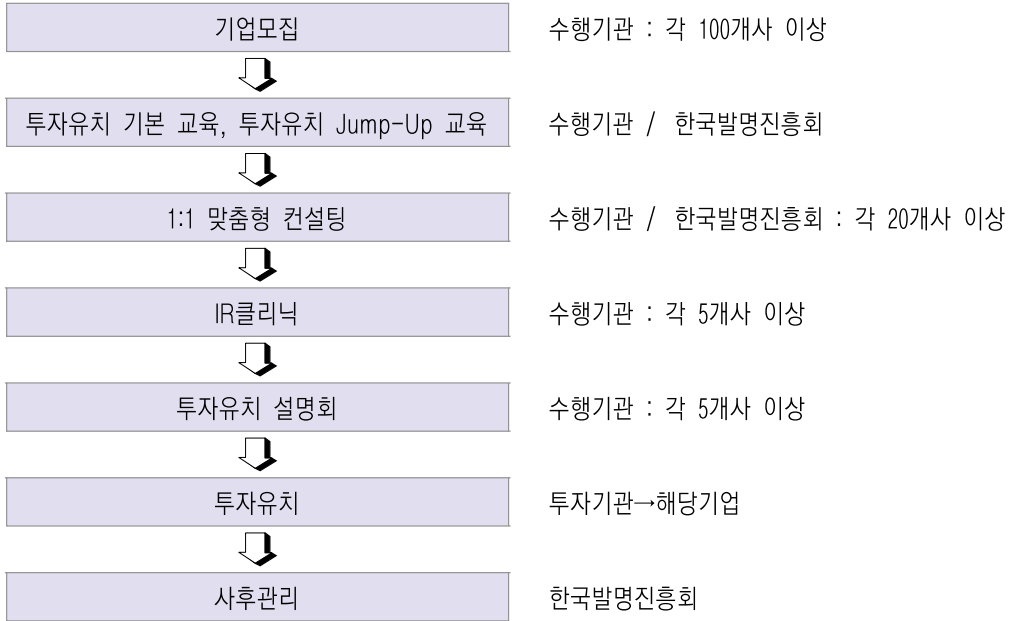
2

지원내용

- ※ (투자유치 기본교육) 모든 신청기업에 투자유치 기본교육(무료) 참석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IP 이해를 높여주는 출장형 JUMP-UP 교육(유료) 신설
- ※ (투자유치 컨설팅)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 ※ (IR 클리닉) 기업현황진단 및 실행전략 수립,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및 투자자 대상 모의투자설명회 진행
-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다양한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기업의 투자기회 마련

3 지원절차

※ 처리절차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및 수행사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후 수행사를 통한 신청

4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02-3459-2935, 2947

5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참 고 모태조합 운영

■ 사업목적

- ※ 우수특허 등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면서 자금 부족 등으로 특허기술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등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 * 5년 이내 기술을 이전받은 실적이 있거나 또는 특허계정 투자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
 - **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 거래 및 관리, 지식재산 경영 전략 수립 및 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기업

■ 지원내용

- ※ 모태조합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운용사(벤처캐피탈)는 펀드결성 총액의 60% 이상을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및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에 투자
 - ※ 민간 벤처캐피탈(창투사 등)은 투자대상 기업발굴, 평가 등을 통해 투자 및 투자기업 성장 지원 등 사후관리

■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437
- ※ 한국벤처투자(주) 02-2156-2000

■ 관련사이트

- ※ 한국벤처투자 www.k-vic.co.kr

제 3 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www.kipo.go.kr



2

제 2 장

○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 147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 153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 155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CHAPTER 03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 ▶ 우수특허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지원
- ◆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 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시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활용 지원

1 지원규모

- ※ 5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30%를 현금으로 부담
 - * 기업부담금 :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
 - * 기업부담률 : 10%(100억 미만), 20%(100억 이상~300억 미만), 30%(300억 이상)

2 지원대상

- ※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우대사항) 표준특허 보유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등

3 지원내용

- ※ (지원방식) 최대 6개월 이내의 심층 IP 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체결한 사업수행사를 통해 IP 활용전략 컨설팅을 제공
- ※ (지원 공고) 매년 2월, 4월 / 2회 실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기간) 최대 6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 1차 사업 : 매년 4월~9월 예정
 - 2차 사업 : 매년 6월~11월 예정

※ 주요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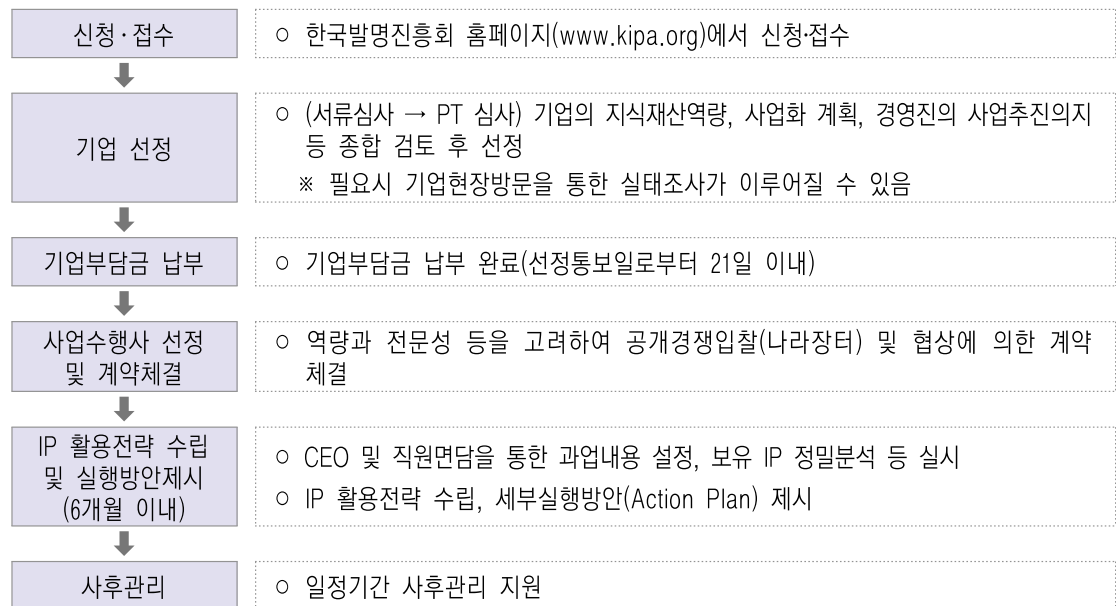
지원분야	지원한도	주요 내용
IP 제품혁신	6천만원 한도 (4개월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제품문제 해결)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에 대한 혁신적 해결을 지원 · (②신제품발굴)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하여 기업의 보유기술을 응용한 다른 분야의 잠재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신제품 아이템 발굴 및 신제품 개발시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해결책 지원
	7천만원 한도 (6개월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제품디자인)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의 ‘기능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융합 지원(3D기구설계 및 워킹목업 지원 포함)
	2천만원 한도 (3개월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④디자인개선) 상용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디자인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단기간 내 디자인 개선안 제시
	6천만원 한도 (5개월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IP사업화)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공동지원]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 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 2차[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마케팅(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신사업(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금융연계(담보대출, 보증·투자)지원 등 컨설팅 제공

※ 5개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4 지원절차

※ 처리절차



※ 신청 서류

- IP 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
-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에서 신청

-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사업신청 Click

5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8501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02-3459-2942, 2937

6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7 용어설명

- ※ 워킹 모크업(Working Mock-up) :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외형, 구동 메커니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활용해 실물크기로 제작해보는 단계(실물보다 저가)

8 유의사항

- ※ 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식재산(IP) 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는 서면 또는 날인 후 스캔할 것)를 미리 작성하신 후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시 IP 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반드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지식재산
활용
지원

- ※ 기업부담금은 지원 대상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령하고, 사업수행사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사업수행사에 해당 금액을 송금하고 잔액은 수혜 기업에 반환함

9

Q&A

Q1 출원 중인 권리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된 권리(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등록된 특허기술이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권리를 1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등록된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지만, 등록된 권리가 하나도 없으면서 출원 중인 권리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2 컨설팅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동 사업의 경우 신청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전략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IP 제품혁신 전략) 기업의 내부역량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제품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트리즈 및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디자인 및 워킹모업을 선별지원함으로써 단기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IP 사업화 전략) 보유IP 진단 및 활용 가능성 분석, 시장·고객·경쟁사 분석, IP동향분석 등을 통해 IP기반의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진출 전략, 사업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금융연계 전략, IP경영 체질 개선 등을 통해 IP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수행사와의 업무 마찰이나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요?

A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는 수행사와 수혜기업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프로젝트 디렉터(PD : Project Director)를 두고 있습니다.

PD의 역할은 사업수행기간 동안 양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수행사의 컨설팅과정 품질을 수시로 체크하여 결과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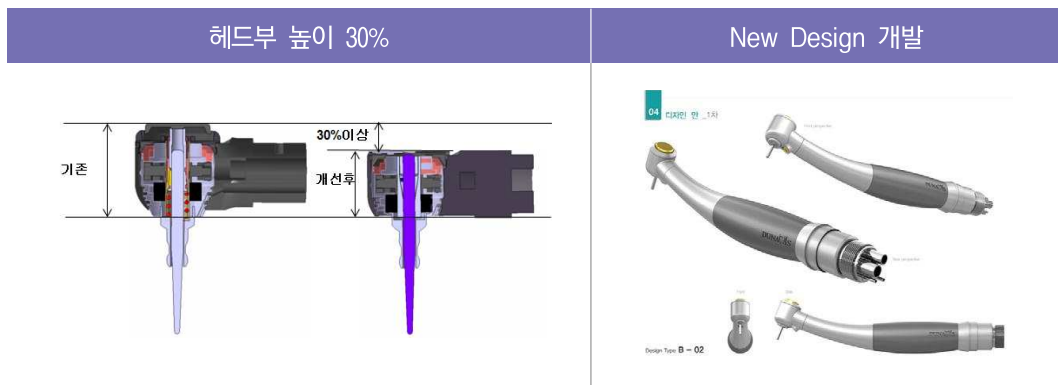
따라서, 만족도가 낮은 결과물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체크하여 수혜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과업을 기획 조정하고 양질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만족도가 낮은 결과물이 발생할 경우, 적정 수준 이상으로 결과품질이 보완될 수 있도록 수행사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용역대금의 잔금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우수지원사례

※ D사 (IP 제품혁신 과제)

- 동사는 치과용 핸드피스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사용자 편의적 디자인 개발 및 이 분야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제품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과제 신청
- 이종분야 특허기술검색을 통해 치과용 핸드피스의 헤드부의 두께를 30% 경감시키는 울트라 미니 헤드를 가진 혁신적인 핸드피스 개발
- 치과용 핸드피스의 사용자 니즈, 사용 환경 및 사용패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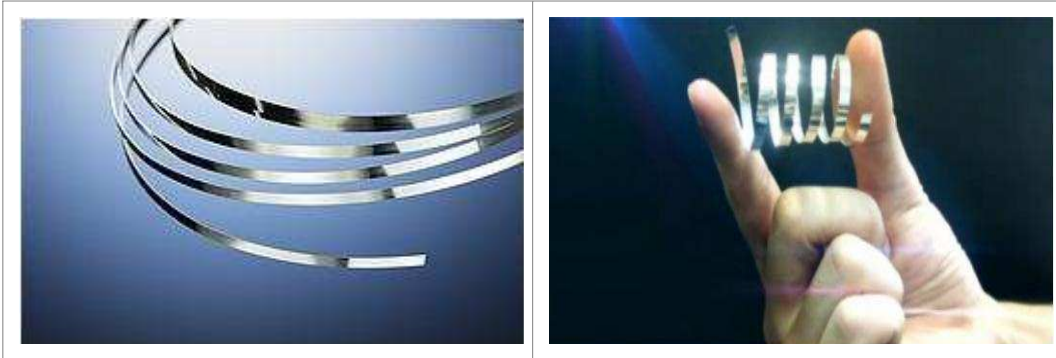
※ S사 (IP 사업화 과제)

- 동사는 초전도선재 및 제조장비 업체로 IP사업화 전략지원을 통해 초전도산업의 급증하는 IP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업들의 5천여 IP에 대한 정밀 분석과 DB화를 통해 해외IP전략 추진에 필요한 IP정보자산 확보

지식재산 활용 지원

- 또한 러시아 초전도선재 기업과 15억 규모의 장비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적으로 연간 1억 규모의 기술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 창출

〈 제품 이미지 〉



CHAPTER 03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 ▶ 중소기업이 보유한 반도체 IP의 수출시장 개척 지원
- ◆ 인지도 부족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반도체 IP를 외국 기업에 수출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체재비 및 홍보자료제작 등 비용 실비지원

2 지원대상

- ※ 대상 기관(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만족)
 - KIPEX(반도체설계재산유통시스템)에 반도체 IP를 등록한 중소기업
 - SMIC*에 3rd party로 등록된 중소기업
 - * SMIC Tech, Symposium 참가 희망자만 해당
 - 기타 국외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반도체 IP 전문기업
- ※ 지원 제한 : 홍보를 희망하는 상품이 반도체 IP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 ※ SMIC Tech, Symposium 또는 중국반도체산업협회총회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홍보자료 제작 및 행사 참여 편의 제공
 - Invitation Letter(반도체산업협회에서 제공)
 - * 참가비는 기업에서 부담
 -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 홍보자료 제작 및 번역

지식재산 활용 지원

4 지원절차

※ 선정방법 : 평가 결과 상위 기업부터 지원

* 행사주관기관(SMIC, 중국반도체산업협회) 사정으로 지원기업의 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사업공고 시 별도 공지

※ 추진일정

일정	내 용	비고
5월중	사업 공고	
6월중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7 ~ 8월	홍보자료 제작, Invitation Letter 발송	
9, 10월	행사 참가	

* 추진일정은 행사주관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행사 종료일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기업소개서(자유양식)
- 소개 반도체 IP 별 브로셔 및 KIPEX 등록여부(자유양식)
- * 참가기업은 소개할 반도체 IP를 KIPEX에 등록해야 함
- 행사 참석자 이력서(자유양식)

※ 신청방법

- KIPEX 홈페이지(www.kipex.or.kr)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
- 신청서 접수 : 우편(원본) 및 Email(작성내용) 접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삼평동) 11층 한국반도체산업협회 IP유통센터

5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99

※ 반도체 IP유통센터 02-570-5273

6 관련사이트

※ 반도체IP유통센터 www.kipex.or.kr

CHAPTER 03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 ▶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거래 수단계에 걸친 컨설팅 제공
- ◆ 특허보강, 신규사업 진출 등을 위해 외부로부터 특허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술 조사, 적정공급기술 매칭, 기술거래 협상, 계약체결 등 기술거래를 위한 전반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식재산 활용 지원

1 **지원대상**

- ※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외부로부터 특허기술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 ※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한 투자 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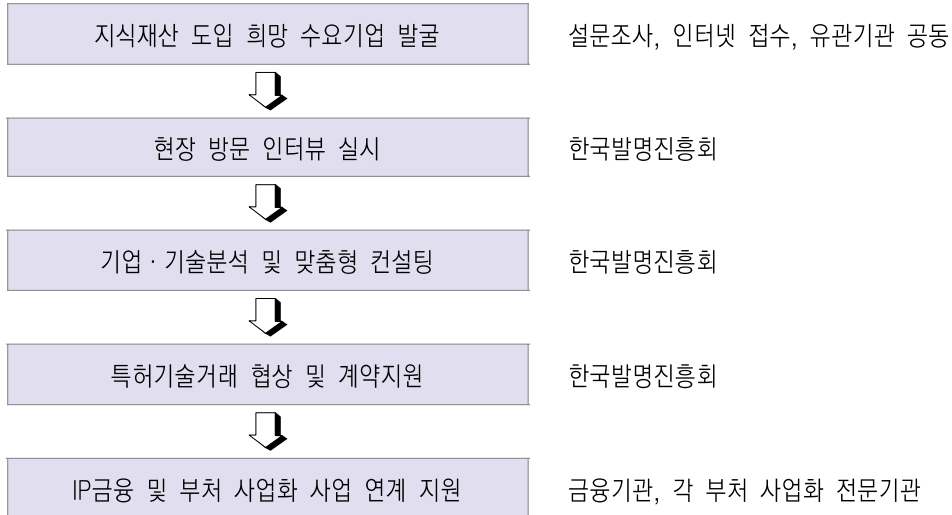
2 **유의사항**

- ※ 특허기술의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매각을 희망하는 특허기술에 대한 수요기업을 발굴, 실제 컨설팅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3 **지원내용**

- ※ 현장 방문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특허기술 도입 희망 기업의 기술, 경영 역량 등을 고려한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컨설팅을 지원

4 지원절차



※ 현장 방문 인터뷰 : 본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 전, 기업의 기술도입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보유 기술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고 적절한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업/기술 진단 절차

※ 제출서류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신청서 1부

※ 접수기간 : 매년 공고(1월) 후 예산 소진 시까지

*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중개소 지원 담당자 앞

5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322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중개소 02-3459-2728, 2786

6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운영 www.ipmarket.or.kr

- 지식재산권 거래 수요자와 공급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이용대상

- ※ 거래희망 특허기술정보가 필요한 자
- ※ 기술적 애로사항의 해결방법을 찾는 자
- ※ 신규사업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자
- ※ 보유기술을 매매, 실시권허여 등 기술이전을 원하는 자
- ※ 보유기술에 대한 투자유치 또는 동업자를 찾는 자
- ※ 특허기술 사업화에 대한 각종 정보가 필요한 자
- ※ 특허기술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 지식재산권 거래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지식재산권 거래 수요자·공급자가 구매 혹은 판매를 희망하는 기술정보*를 자유롭게 등록하고, 정보검색 및 기술제안 등 기능 제공
 - * 기술설명, 권리 등록사항, 사업화 정보, 연락처 등
- ※(기술료 산정) 과거 유사 특허기술 거래 사례에 대한 검색 툴을 제공하여 기술료 산정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사례 검색) 과거에 IP 거래가 성사된 계약 체결 사례 DB 중 유사 사례를 검색하도록 지원
 - * 과거 거래사례에 대해 기술분야, 계약형태(양도 및 전용·통상실시), 기술료 형태(정액·경상기술료), 수요·공급 주체별로 검색을 지원하고, 유사 사례군별로 최고·최저 기술료, 평균 기술료 등을 제시

● ●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계약 체결) 표준 계약서 및 계약서 작성 틀*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 웹 페이지 상에서 IP 정보, 계약 당사자 정보, 거래조건, 계약조항 선택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서비스

※(기술 경매)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상담 및 문제해결) 특허거래전문관과 지식재산거래에 관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미리 시간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정보제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금융,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이용절차

※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 회원 가입 후 이용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322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중개소 02-3459-2728

〈 IP Market 메뉴 화면 〉

The screenshot shows the IP Market website interface. Key features are highlighted with callouts:

- 지식재산 거래**: 거래대상 기술 등록 가능, 직거래 : 40건 ('14년)
- 사례 검색**: 지식재산 거래 사례 등록, 총3,345 사례 (기업공공연개인)
- 무료 상담**: 특허거래전문관과 상담 가능

The interface includes a search bar, navigation tabs (기술거래 사례, 거래대상 기술, 정보제공, 센터소개), a main content area with a handshake image, and a sidebar with a list of transactions. A table at the bottom lists various technology transactions with columns for '최신기술거래뉴스', '기술시장동향', and '정책동향'.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kipa.org

-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특허 평가 서비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입니다.

• SMART3(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5개 기술별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 평가 서비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

■ 지원내용

※ (특허등급평가 및 유사특허 분석)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측면에서 해당 특허를 분석하여 해당 기술분야 내에서 상대적 등급을 제시

* 평가등급은 AAA에서 C등급까지 9등급으로 분류

※ (개별특허분석) 해당 특허에 대한 유사특허, 인용·피인용 특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특허인용 맵, 특허히스토리 맵, 청구항분석 맵, 패밀리 맵 등)

* 특허인용 맵 : IDS 정보, 선행기술 조사문헌, 심사관 참증정보, 유사특허 추출결과를 당해 특허의 출원을 기준으로 전후에 표시하여 인용·피인용 관계를 보여줌

* 특허히스토리 맵 : 특허 출원에서부터 심사·등록·심판·권리변동(실시권 포함) 등의 이력을 시계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 가능

※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2개 업체 간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특허 평가결과 비교 분석

* 기업 분석 : 기업의 우수 특허와 주요 기술 분야를 분석하며, 경쟁사의 특허 분석을 통해 자사의 공백 기술 분석 가능

* 기술 분석 : 해당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을 파악하며, 해당 기술 분야에 최근 활발하게 특허 등록을 받고 있는 기업 분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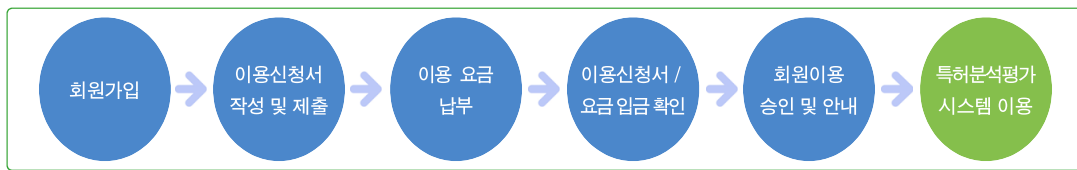
■ 활용분야

※ 경쟁사 특허분석 및 M&A 특허실사(피인수 회사의 M&A 특허 실사)

- ※ R&D 특허 실적 평가 및 특허 기술거래(수요, 공급기업의 우수특허 선별)
- ※ 특허 관리(유지·포기 결정) 및 특허분쟁예방(신속한 특허 분쟁 대응)

■ 이용절차

-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kipa.org) 회원 가입 후 유료 이용
- ※ 이용절차 안내



■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107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 02-3459-2876

■ 활용자 코멘트

- ※ “기술이전 대상기업의 조사시 유사특허를 서치하여 대상기업을 물색하고 전담사무소 등의 제안서 작성시 활용하며 포트폴리오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됨.” [제일특허법인 류○○ 변리사 ('14.11월, 간담회 발언)]

■ 활용사례

- ※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 우대보증시 SMART3 특허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평가지원*
 - '13년 8월 ~ '15년 12월까지 보증 실적 : 2,918억원(1,588개 기업)
 - * SMART3 특허평가 B등급 이상 특허 1건당 최대 1억원 보증 지원
- ※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의 SMART3 특허평가 정보 연계서비스를 통해 우수 특허 보유 중소기업에게 IP 금융 상품 추천지원
- ※ 특허보유 기업의 특허자산평가·기술이전 컨설팅시 SMART3를 활용한 대량 특허의 신속한 평가지원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 국유특허 활용 www.ipmarket.or.kr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상실시권 신청

※ 온라인 조회 :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에서 목록 조회

- 거래대상 지식재산 → 판매지식재산 → 국유지식재산에서 목록 조회
- ※ '13.10월부터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여 계약만료 후 사용실적에 따라 실시료를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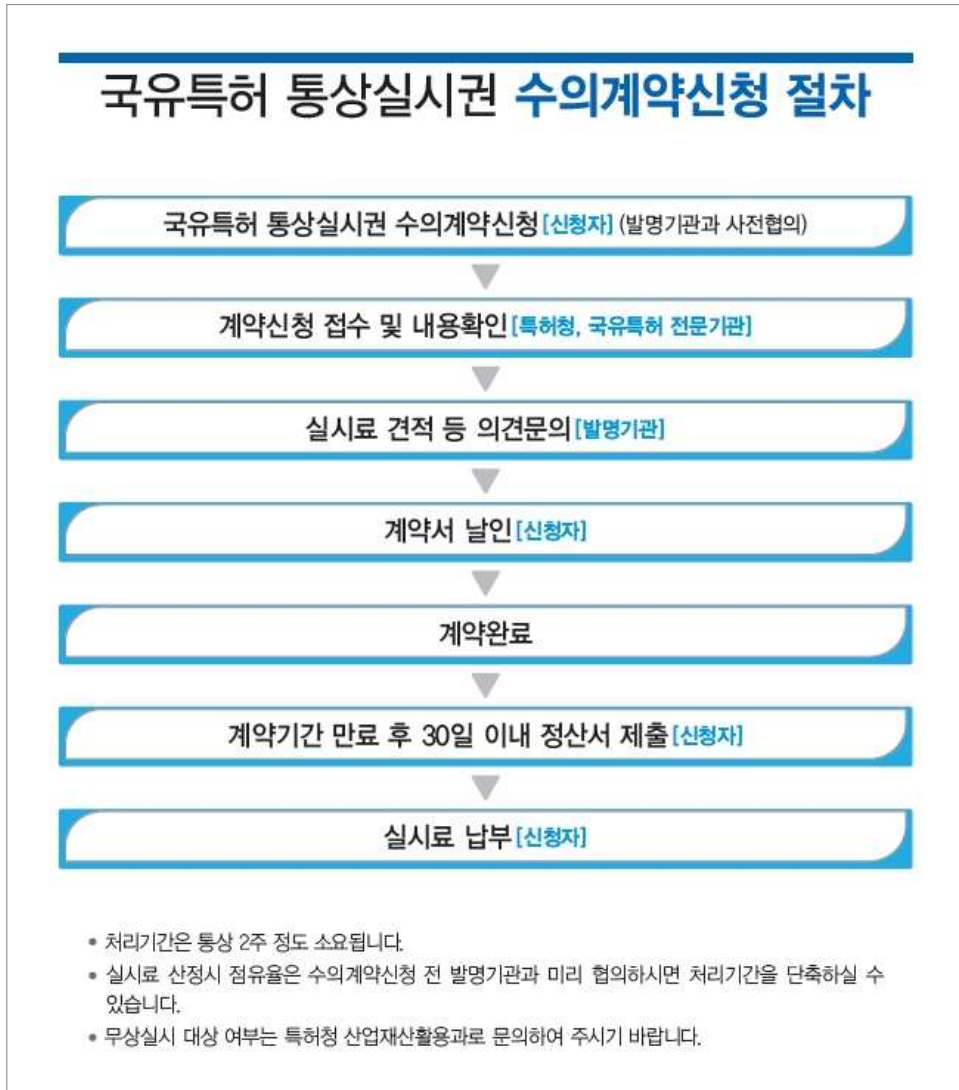
※ 국유특허권 사용신청

- 특허로(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유특허사용신청 → 국유특허 수의계약 신청양식(유상, 무상) 다운로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실시권 실시료 견적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통상실시권 허락은 실시권신청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발명기관이 회신한 견적서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계약신청 전에 발명기관과 협의 후 작성
- ※ 주요 발명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수의계약절차



■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8658, 5172

※ 국유특허 실시계약

- 농림축산 분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393
- 산림 분야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33
- 기타 분야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97

■ 용어설명

- ※ **국유특허** : 국가공무원의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활용지원

- ※ **무상실시** : 등록 후 3년 이상 미활용 된 국유특허권의 경우, 누구나 최대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사후정산** : 2013년 10월부터 국유특허를 먼저 사용하고, 사용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활용사례

※ 접이식진압장치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사례

- **사업내용**
 - 조사료의 품질과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로 접이식으로 이동 및 작동이 용이하며 접지면에 굴곡이 있어 진압효율이 높음
- **기대효과**
 - 국내 초지환경에 적합한 대구모 초지와 중소초지에 모두 이용가능한 접이식 진압장치의 개발로 조사료 수입 대체 효과 기대
 -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으로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작물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
- **사업화노력**
 - 다양한 농가들의 요구조사 및 결과반영
 - 기존 저가형 진압기와는 차별을 두어 접지면에 굴곡을 만들어 진압효율 상승
- **주요성과**
 - 트랙터에 의한 굴곡의 방지와 해빙기 서릿발에 의한 가뭄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진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접지면에 굴곡이 있는 대용량 접이식 진압장치 개발 ('13년 10월)

- 농진청 축산과학원 현장실증 시범사업 참여 제작공급('13년 3월)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 중소기업의 우수특허제품 구매 지원

-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청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 등에게 동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규모

※ 신청 및 추천심사 비용 전액 지원

* 총 지원내역 : 연 4회 선정

※ 추천제품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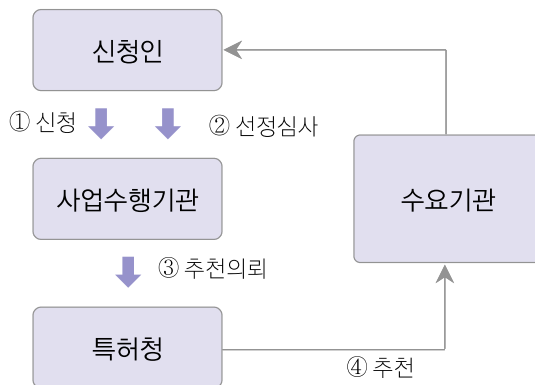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 우선구매 추천체계
 - 우선구매 추천 체계도



지식재산 활용 지원

〈 추천 절차 〉



※ 심사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30점)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30점)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40점)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사업화 추진 능력, 구매실효성

※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국가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부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 유의사항

- ※ OEM 생산방식에 의한 제품의 경우, 「나라장터」 등록이 불가하며,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으로의 직접 추천만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 절차 : 우선구매 신청(위탁기관) → 추천대상 심사 → 우선구매 추천의뢰 → 우선구매 추천(특허청장)
- ※ 신청서류 :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특허등록원부, 공보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품 카탈로그, 공장 등록증 또는 OEM 생산계약서, 우선구매요청대상기관 신청서, 특허기술설명서, 확인서 및 동의서, 심사가점대상 및 인증현황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
- ※ 신청기간 : 연 4회 신청,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후 한 달간 접수

■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172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02-3459-2798

■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kipabiz

■ Q&A

Q1 신청한 제품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추천심사는 분야별 전문가(산·학·연 3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시 첨부되는 증빙서류를 이용한 1차 심사(서류심사), 신청기업의 제품에 대한 PT와 상세면담을 통한 2차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2 1기업에서 다제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당해년도에는 1사 1제품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회의에서 부적격 처리된 제품의 경우, 신청의 제한을 받습니다.

■ 우수지원사례

※ 에이에이(주)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기업]

- LED벨트형 복부 경락자극장치를 개발하여 2013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을 받아 판로개척에 성공하여 중국, 홍콩 등 해외 7개국에 300개 대리점을 설립하는 등 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

참고 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www.ipmarket.or.kr

- 지식재산 거래에 필요한 적정 수요·공급 특허기술 발굴 및 매칭, 중개 협상,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식재산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전국 주요 도시(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총 8명의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운영(06~)하고 있으며 특허기술 수요·공급자 매칭, 지식재산 중개·협상·계약을 전문적으로 지원
- ※ 지식재산 거래에 필요한 상담, 특허기술 수요·공급자 매칭, 거래 중개·협상·계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지식재산거래 이후 도입기업의 매출 기여 및 IP금융 연계를 통한 자금지원



(수요기업 발굴) 수요기술조사, IP-Market 구매기술 등록 및 사업 설명회 등에서 수요기업을 발굴

(수요기업 인터뷰) 수요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경영진단과 수요기술 분석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 전략 수립

(적정 특허기술 매칭)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출연연 및 기업의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연계

(중개 협상) 특허기술의 실시(통상, 전용) 조건, 이전 가격, 기술 구현 가능성 등을 중재 (계약)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 방식 및 계약서 조문 검토를 지원하여 계약서 작성을 지원

(금융연계 지원) 특허기술 도입에 필요한 부족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 IP 금융 연계 지원

〈 '15년 특허거래전문관 운영현황 〉

 특허거래 전문관 기술거래사 김상범	 특허거래 전문관 (기술사) 박수기	 특허거래 전문관 (기술사) 서찬용	 특허거래 전문관 (미국변호사) 이영채	 특허거래 전문관 (공학박사) 고기영
 중부권 특허거래 전문관 최병길	 중부권 특허거래 전문관 (공학박사) 조한상	 호남권 특허거래 전문관 (공학박사) 김현덕	 영남권 특허거래 전문관 (공학박사) 김태수	

■ 이용절차

※ 한국지식재산중개소 권역별 특허거래전문관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322
-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중개소 02-3459-2896

■ 지원기업 코멘트 및 우수지원사례

※ “특허거래전문관의 지식재산거래 지원을 통해 필요한 특허를 도입하여 IP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기술 경쟁력이 바탕이 되어 매출액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P社, 김정훈 대표 (‘14년 지원)]

〈영상객체 추출장치 및 그 방법 외 특허 1건〉

- (지원대상) (판매자) 출연(연) E기관, (구매자) P社
- (지원요구) IPTV품질 검증 시스템의 성능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특허기술도입에 관한 적정 공급자 선별 및 사업화 자금 부족
- (지원내용) 특허거래전문관이 P社의 특허기술 도입 역량 확인 및 공급기술 조사, 적정기술 선별하여 기술거래와 더불어 ‘K은행’의 IP담보대출 연계지원
- (지원성과) 출연(연) E기관과 P社간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P社는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도 매출액 (12억) 대비 50% 이상의 매출액 달성(18억)
 - 특허기술 거래와 더불어 ‘K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융자금, 투자 기관으로부터 30억의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추천



[지원사업 홍보 뉴스레터 (‘14년 6월 25일)에 게재]

※ “특허거래전문관의 지식재산거래 지원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지식재산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항공사, 김동수 차장 (14년 지원)]

〈대중소 상생 지식재산거래 지원〉

- (지원대상) 대기업 및 공기업, 출연(연)
- (지원요구) 대기업 및 공기업, 출연(연)의 지식재산거래로 대중소 상생 협력 확대
- (지원내용) 대기업, 공기업, 출연(연) 등과 기술나눔 행사, 기술 경매를 개최하여 무상 또는 저가로 대기업, 공기업, 출연(연) 등과 기술나눔 행사, 기술경매를 개최하여 무상 또는 저가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 (지원성과) IP-Market를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 SKT, SKP와 공동으로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총37건 기술이전)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 보유 유희특허에 대하여 온라인 기술경매를 통하여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지원(총6건 기술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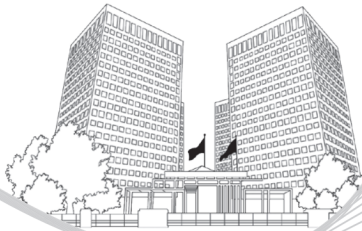


공항공사
지식재산거래 지원

지식재산
활용
지원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4 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 175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181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 183 3. IP 창조 Zone 운영
- 187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 188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 191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 198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조찬세미나

■ 지원규모

- ※ 무료

■ 교육대상

- ※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CEO·임원 등

■ 교육내용

- ※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통한 성공·실패 사례, 최신 지식재산 동향 및 국제 지식재산 이슈 등 강의
- ※ 지식재산의 기본전략 및 방향성 제시 등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이론 및 사례를 병행하여 분야 및 주제 선정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관련 분야(IP와 R&D)
 - *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기술기획, 표준과 연계한 특허확보 등
 -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략관련 분야(IP와 Business)
 - * Joint Venture, Spin-off, 지식재산 회계·금융, 지식재산 분쟁, 라이선싱 등
 - 지식재산 인프라 관련 분야(IP와 Infrastructure)
 - * 지식재산 조직·인력, 직무 발명, 지식재산문화, 국제이슈, 정부정책 등

※ 교육과정

강좌명	일정
제39회 CIPO 조찬세미나	4.6(수)
제40회 CIPO 조찬세미나	6.22(수)
제41회 CIPO 조찬세미나	9.7(수)
제42회 CIPO 조찬세미나	12.7(수)

■ 신청절차

- ※ 신청 기간 : 세미나 개최 약 3주 전부터 가능
- ※ 신청 방법 : 한국지식재산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CIPO@kinpa.or.kr) 또는 팩스(02-556-7609)로 신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협회 홈페이지(www.kinpa.or.kr) 참조

■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5
- ※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 02-556-7608

■ 관련사이트

- ※ 한국지식재산협회 www.kinpa.or.kr

1-2.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총 47개 기업 선정, 기업당 약 1,000만원 상당(교육비 10~20%는 현금 부담)

■ 교육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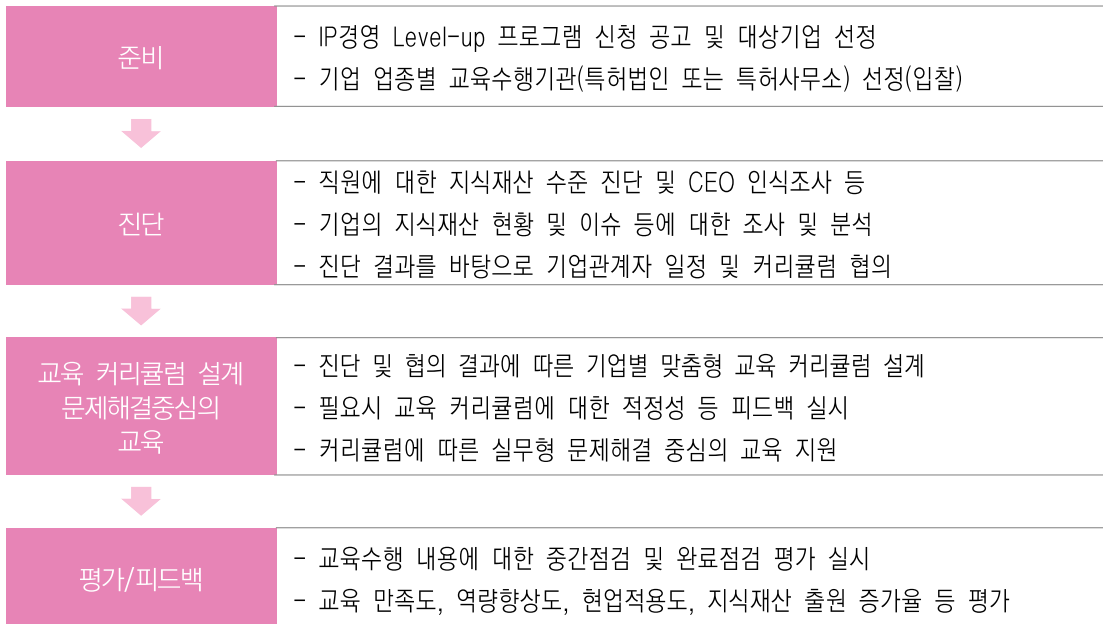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 직원(경영진, R&D 연구인력 및 특히 관련 담당자 등)

■ 교육내용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현황 및 경영실태, 역량 수준 등에 대해 전문가 진단 후 R&D 연구과제 등 기업 현안과제와 접목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지원

- (Needs 분석·진단) 기업의 지식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역량수준, R&D방향 등에 대해 설문(면담) 및 특허역량 테스트 등을 통한 전문가 진단 실시
- (문제해결형 교육)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기업의 R&D 연구과제 등과 접목한 프로젝트(과제)형 실무교육 추진

※ 교육 프로세스



■ 지원절차

- ※ 지원 공고 : 2~4월 중
- ※ 지원 기간 : 6개월 내외('16. 5 ~ '16. 10)
- ※ 지원 방식 : 사전 진단분석 후 교육 커리큘럼 설계를 통해 기업에 찾아가는 문제해결 중심의 지식재산 실무교육 지원(일정 및 장소는 기업과 협의)
- ※ 신청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공고 전용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 사업공고 게시판 참조
- ※ 지원기업 선정기준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및 활동 수준, 전담조직 설치 여부 및 인원 규모, R&D 연구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교육수행기관 :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 등(업체 간 컨소시엄 가능)

■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3572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부 02-3459-2806

■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공고 전용 홈페이지 www.kipa.org/kipabiz

■ 지원기업 코멘트

- ※ “기존의 유사 프로그램과 달리, 기업의 니즈를 중심으로 그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관리가 가능한 점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이 원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은 본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의 대부분이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진행되므로 본 사업 전반에 대해 대단히 만족합니다.”
[(주)선익시스템 김형목 부장]

1-3. 해외 분쟁대응 교육

■ 지원규모

※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경우 해당 교육비 80% 지원

■ 교육대상

※ 기업, 공공기관, 출연연 및 특허사무소 등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 해외 주요국(미국, 중국, 유럽)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전략, 분쟁사례 및 협상 전략 제시 등 실제 case-study를 통한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교육

※ 교육 주제 및 일정

국가	테마	교육주제(안)	교육일정	
			'16. 3~7월	'16. 8~12월
공통	라이선스	국제 특허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3.22~3.23	9.6~9.7
미국	출원	성공하는 미국 특허출원 전략	6.28~6.29	10.11~10.12
	소송	미국 특허소송의 단계별 가이드	4.2	9.27
	침해	미국 특허침해 유형과 사례 분석	5.3, 7.13	11.9
중국	출원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	3.9, 5.17	8.23, 11.23
	분쟁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과 대응전략	4.5, 6.15	10.26
유럽	출원/분쟁	유럽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	6.1	-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교육공고 확인 필요)

■ 신청절차

※ 신청 기간 : 해당 교육일 약 3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IP Human Network(www.iphuman.or.kr) → “기업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3572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부 02-3459-2806

■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종합정보 www.iphuman.or.kr
-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공고 전용 홈페이지 www.kipa.org/kipabiz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 일반교육 ▶ 집중교육 ▶ 찾아가는 교육

◆ 지재권 교육이 필요하나 참여 여건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 일반교육 : 지역소재 개인, IP Start-Up, IP Scale-Up, IP Star 기업 등
- ※ 집중교육 : IP Start-Up, IP Scale-Up 기업을 우선 지원
- ※ 찾아가는 교육 : IP Start-Up, IP Scale-Up 기업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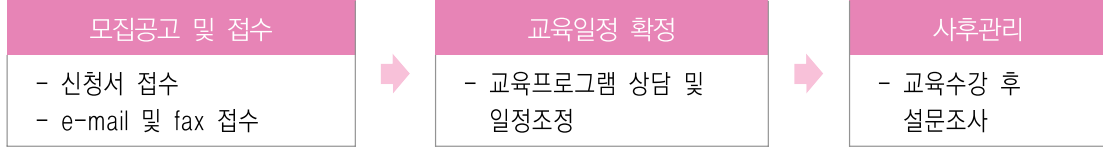
- ※ 일반교육 : 지식재산권 제도 기초,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특허관리 활용방안, 특허 침해판단, 직무발명 등 교육 제공(1회, 2~3시간)
- ※ 집중교육 : 지식재산권 기초부터 창출, 권리화까지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과정(20시간 이상)
- ※ 찾아가는 교육 : 사전 상담을 통해 기업 임직원의 지식재산 수준을 파악, 지재권 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기업방문교육) 교육수강생 수를 고려하여 기업이 희망하는 주제별/분야별 교육을 직접 기업에 찾아가서 제공
 - (지역순회교육) 기업방문교육 여건이 어렵거나 기업이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센터 내에서 교육제공

3

지원절차

-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접수
- ※ 지역별로 최소 신청 인원 제한 있음
- ※ 기업체별로 교육 횟수 제한 있음
- ※ 선착순 접수 마감 및 신청서 양식 첨부 파일 확인

4 문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3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9
-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5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집중CLASS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부터 심층적인 내용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진출에 따른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 출원 전략’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업을 통해서 진출 예정국인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새로운 지식과 시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지식재산센터 집중교육 수강생 A씨]

3 IP 창조 Zone 운영

- ▶ 국민 누구나 상상력·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 국민의 아이디어를 손쉽게 구체화하고 3D 프린터로 모형품 제작까지 할 수 있도록 전국 8개(강원,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전북, 제주(예정), 충남(예정))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조성된 공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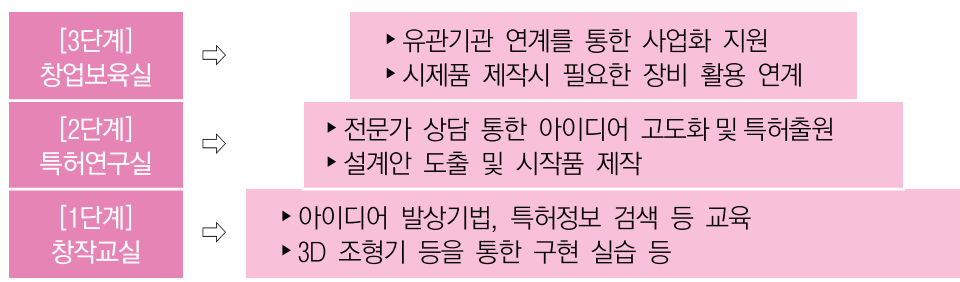
1 지원대상

※ 전국 8개 지역(강원,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전북, 제주(예정), 충남(예정)) 및 그 인근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IP권리화(특허출원 등)를 원하거나 아이디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2 사업내용

※ 창작교실→특허연구실→창업보육실의 단계별 프로그램(분기별 기수제)으로 운영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

〈 IP 창조 Zone 프로그램 체계 〉



[1단계] 창작교실

- 국민 누구나 분야에 상관없이 가치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창의 공간
- 발명기법 등 지식재산(IP)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창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3D 프린터를 통해 모형 구현

지식재산 교육 지원

〈 창작교실 프로그램 〉



[2단계] 특허연구실

-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우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현과정에서 생성된 발명에 대해 IP 권리화 지원
-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단계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변리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분야별 ‘멘토링 지원단’ 풀을 구성하여 전문가 멘토링도 시행
- 지원대상 : 창작교실 이수자,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등

〈 특허연구실 프로그램 〉



[3단계] 창업보육실

-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식재산기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중점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전 또는 자립적 창업전까지 사무공간 제공(최대 1년) 및 입주기간 동안 수시 컨설팅 시행
- 지원대상 : 특허연구실 수료자 중 창업희망자

■ 설치 및 운영현황

- ※ ('14년) 강원, 대구, 부산, 광주
- ('15년) 강원,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전북
- ('16년) 강원,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전북, 제주(예정), 충남(예정)

3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ic.org)에 게재된 각 센터별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지원절차

- 교육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안 아이디어의 우수성, 교육 참여 의지, 창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생 선발

4 문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0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4
-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5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i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지식재산권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국내 권리화 지원은 물론, 출원의 과정부터 관리, 활용하는 방법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부인 제가 별 것 아니겠지 생각했던 아이디어 개념을 창업아이템으로 검증하고, 출원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 창업은 물론 이제는 드라마방송의 PPL제품으로까지 성장시켜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창업 후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여준 IP창조존 프로그램으로 여성창업자의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S社 대표이사, 부산 IP창조존 1기]

※ “오투기처럼, 다시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면서 더 깊이 필요성을 느낀 것은 바로 지식재산권의 확보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진과 ‘지식재산권’으로 차별화시킨 IP창조존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은 물론, 참가자의 출석을 위해 주말에 운영하는 등 참가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 연계 등 새로운 도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실어주었습니다. 주변에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먼저 IP창조존부터 들어보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IP창조존 수료생으로서 IP창조존의 성공신화를 만들기 위해 중국진출 꼭! 이뤄내겠습니다.”
[C社 대표이사, 부산 IP창조존 4기]

CHAPTER 04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 중소기업 표준특허 교육 www.epcenter.or.kr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표준특허의 중요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1 **교육대상**

※ 표준특허 컨설팅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2 **교육내용**

- ※ 기업의 수요에 맞춘 표준특허 교육 운영
 - 기초과정 : 특허·표준·표준특허의 관계, 표준화 절차 이해
 - 심화과정 : 표준특허 창출 사례, R&D-특허-표준 연계 전략
- ※ 중소기업의 표준특허 우수사례 전파 교육

3 **신청절차**

- ※ 일정 : 연중 수시
- ※ 신청절차 : 이메일 접수(epcenter@kista.re.kr)

4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99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02-3475-8562

지식재산 교육 지원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 ▶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 iipti.kipo.go.kr
- ◆ 기업과 연구소 임직원,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일반 및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지원규모

- ※ 교육비 일부(약 60%) 환급
 - 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으로 진행될 예정

2 교육대상

- ※ 민간기업과 연구소 임직원,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3 교육내용

※ 교육과정

일정	과정 명	기간	인원	일정
2월	제134기 산업재산권	5	30	2.15 ~ 2.19
	제6기 특허정보 검색	3	30	2.22 ~ 2.24
	제7기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30	50	2.18 ~ 3.31
3월	제12기 특허명세서 작성	3	30	3.2 ~ 3.4
	제3기 중소기업IP리더	2	30	3.7 ~ 3.8
4월	제135기 산업재산권	5	30	4.4 ~ 4.8
	제3기 특허출원/등록 실무	3	30	4.11 ~ 4.13
	제2기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15	50	4.5 ~ 4.26
5월	제6기 특허맵 작성	3	30	5.2 ~ 5.4
	제13기 특허명세서 작성	3	30	5.9 ~ 5.11

일정	과정 명	기간	인원	일정
	제7기 특허정보 검색	3	30	5.11 ~ 5.13
	제3기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15	50	5.9 ~ 5.27
6월	제4기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2	30	6.7 ~ 6.8
	제2기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2	30	6.9 ~ 6.10
	제8기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30	50	6.2 ~ 7.4
7월	제4기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3	30	7.4 ~ 7.6
8월	제8기 특허정보 검색	3	30	8.16 ~ 8.18
	제7기 특허맵 작성	3	30	8.22 ~ 8.24
	제1기 국제출원/등록 실무	3	30	8.29 ~ 8.31
9월	제14기 특허명세서 작성	3	30	9.19 ~ 9.21
	제3기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2	30	9.22 ~ 9.23
	제4기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15	50	9.20 ~ 10.11
10월	제136기 산업재산권	5	30	10.17 ~ 10.21
	제4기 중소기업IP리더	2	30	10.24 ~ 10.25
	제4기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15	50	10.17 ~ 11.4
11월	제8기 특허맵 작성	3	30	11.14 ~ 11.16
	제4기 PCT멘토조사원 양성	5	20	11.21 ~ 11.25

지식재산 교육 지원

- ※ 산업재산권과정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 ※ 신규선행기술조사원과정 : 특허법, 심사지침서, 명세서 및 견해서 작성 등
- ※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과정 :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이해, 상표 및 디자인 검색 실무, 상표 및 디자인 출원방법, 분쟁사례 등
-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등록 실무 : 출원제도의 이해 및 출원방법, 등록제도의 이해 등
- ※ 특허명세서 작성과정 : 특허명세서 이론 및 실습, 청구범위 해석 등
- ※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맵 : 특허정보검색, 특허맵 이론 및 실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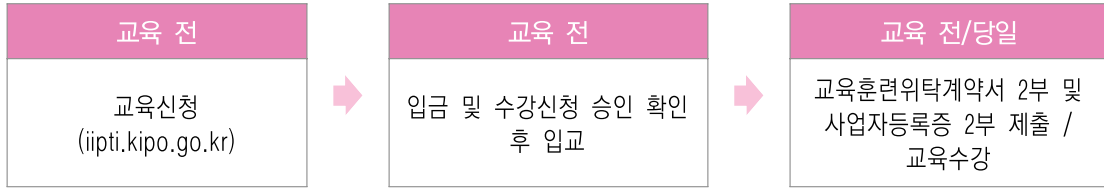
4 신청절차

- ※ 교육일정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iipti.kipo.go.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각 과정별 교육안내 파일참조

- 위탁훈련 서식 및 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내 파일에 안내되어 있으며, 교육시작 3주전 공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교육 수수료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사로 환급신청

5

문의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042-601-4347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 ▶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운영 general.ipacademy.net
- ◆ 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 및 역량 증가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6-1. 일반인 지식재산 e-러닝 교육

■ 지원규모

※ 무료

■ 교육대상

※ 기업의 특허관리자, 특허전문가, 변리사 등

■ 교육내용

※ 교육일정 : 연중 수시

※ 교육형태 : 온라인교육(general.ipacademy.net)

※ 교육과정

〈 창 출 〉

강 의 명	차시
(2015) 저작권개요	6차시
(2014) 지식재산개론(학점은행)	26차시
(2012) 최신 IT기술을 이용한 지재산 정보의 활용 - Emerging IT and Utilization of IP Information	2차시
(2011) 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검토	5차시
(2010) 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	15차시
(2010) 발명교육이론 심화	20차시
(2009)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3차시

지식재산 교육 지원

〈 권 리 화 〉

강 의 명	차시
(2015) 내 손으로 지키는 IP	3차시
(2014) 디자인보호법	10차시
(2013) [현장강좌] 한국상표디자인 컨퍼런스	5차시
(2013) 개정 미국특허법 완전정복	15차시
(2012) 특허법	10차시
(2012) 명세서 작성방법	17차시
(2011)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	12차시
(2009) 사례로 배우는 상표제도의 이해	10차시
(2009) 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	10차시
(2008) 실전!의견서, 보정서 작성	5차시
(2008)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의 이해	10차시
(2007) IP Xpedite_영문	14차시
(2007) 특허법률영어	20차시
(2007) 영문명세서작성실무	10차시

〈 보 호 〉

강 의 명	차시
(2015) 영업비밀보호교육	2차시
(2013) 사례로 보는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10차시
(2013) [현장강좌] 유럽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대응전략 세미나	3차시
(2012) 나원본씨의 영업비밀 이야기	6차시
(2012) [현장강좌] IP 스토리 페스티벌	6차시
(2012) [현장강좌] 국제 지재권 분쟁해결 컨퍼런스 (특허 침해 손해액 산정 노하우 및 협상의 기술)	3차시
(2011) [현장특강] GPL의 쟁점과 향후 전망(1시간)	1차시
(2010) [현장특강] 특허괴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전략	3차시
(2010) [현장특강]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	1차시
(2009) 상표등록 왜 필요한가?	1차시
(2009) [현장특강]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	1차시
(2009) [현장특강]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모델 명세서 작성방안	5차시
(2008) [현장특강]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실무	2차시
(2004)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	4차시

〈활 용〉

강 의 명	차시
(2015) IP활용하여 R&D 잘하기	10차시
(2011) 표준특허 심화	5차시
(2011) [현장특강] 특허라이선스계약의 쟁점과 협상전략	1차시
(2010) 표준특허 이론과 사례	7차시
(2008) 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 관리	5차시
(2007) 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	10차시

〈경 영〉

강 의 명	차시
(2013) 직무발명 이것만은 알고하자!	10차시
(2013) (현장강좌) 국제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4차시
(2013) (현장강좌) PATINEX I	6차시
(2013) (현장강좌) PATINEX II	6차시
(2012) [현장강좌] 유럽 특허정보의 모든 것 (The Ins and Outs of European IP Information)	3차시
(2011) [현장특강] FTA에 따른 지재권 활용전략	1차시
(2011) (현장특강) 중소기업 IP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	1차시
(2011) [현장특강] IP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전략(1시간)	1차시
(2010) 지식재산 경영과 특허전략(5시간)	5차시
(2009) 선행기술검색노하우(5시간)	5차시
(2005) IP Panorama_영문(10시간)	10차시
(2005) 특허정보활용과정-특허정보의가치(5시간)	5차시

지식재산 교육 지원

■ 신청절차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www.ipacademy.net) 회원 가입 후 이용

■ 문 의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042-601-4312

■ 관련사이트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

6-2. 중소기업 IP 리더 플립러닝 과정

■ 교육비

※ 무료

■ 교육대상

※ IP아카데미 단체교육(B2B) 신청 기업 소속 직원

■ 교육내용

※ 교육일정

구 분	내 용
교육인원	과정당 40명(총 2기)
신청기간	4월(기초), 5월(심화)
온라인 교육기간	5월 ~ 6월(기초), 9월 ~ 10월(심화)
오프라인 교육기간	7월(기초), 11월(심화)
교육장소(집합교육)	서울

※ 교육형태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혼합교육

- 온라인교육 : <http://www.ipacademy.net>
- 오프라인 교육(서울 한국발명진흥회)

※ 교육과정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 교육

구 성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p>[1단계] 기본적인 이론강의 · 스토리영상, 지식재산개론 등</p> <p>[2단계] · 스토리영상, 지식재산권 관리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 해석 등</p>	<p>[1단계] · 사전학습과 연관된 강의 및 실습 진행 (아이디어 구체화, 발명신고서 작성 등)</p> <p>[2단계] · 사전학습과 연관된 강의 및 실습 진행 (분쟁대응 및 침해사례,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방법, 청구범위 해석방법 등)</p>
비고	사전 교육과정(45시간 이내)	강의와 실습과정(10시간 이내)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 온라인 선행학습 후 강사와 토론식 강의 진행

■ 신청절차

- ※ 신청방법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www.ipacademy.net)를 통한 회원사 가입 후 이용

■ 문 의

-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042-601-4312
- ※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부 02-3459-2770

■ 관련사이트

-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

6-3. 기업체 지식재산 단체 교육

■ 교육비

- ※ 무료

■ 교육대상

- ※ 온라인 단체위탁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 및 연구소, 기관 등

■ 교육내용

- ※ 교육일정 : 연중 수시(해당 기업 요청에 의하여 결정)
- ※ 교육내용 : 지식재산권제도 및 법, 특허정보검색 및 분석, 특허출원 및 명세서 작성, 특허분쟁, 특허관리 및 활용 등
 - ※ 일반 정규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교육콘텐츠 활용 가능
 - ※ 운영과정 중 필요로 하는 과정만 기업 전용교육시스템에서 탑재·운영
- ※ 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
- ※ 운영사이트 : 기업(기관)명.ipacademy.net
 - ※ 기업전용 독립 도메인을 구성·운영
 -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http://etri.ipacademy.net>
- ※ 교육상담을 통하여 전체 과정 중 기업체가 필요한 과정만을 재구성하여 맞춤형 과정 제공(온라인 교재 포함)
- ※ 체계적인 학습관리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를 통한 질의응답 제공
 - 직무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관리 제공(학습독려, Q&A)

■ 신청절차

※ 기업(기관) 단체 위탁교육 신청 절차



※ 단체 위탁교육 흐름도

- 해당 기업/연구소 교육생 회원등록 ⇒ 수강과정 검색 ⇒ 수강신청 ⇒ 해당 강의실 입장 ⇒ 학습하기 ⇒ 평가(과제물, 온라인시험 등) ⇒ 수수료 ⇒ 수수료증 발급
- 해당 기업/연구소 교육관리자 ‘관리자 권한’ 획득 ⇒ 학습진행 모니터링 ⇒ 1:1 학습관리(Q&A) ⇒ 지속적인 학습 동기 부여 및 관리

■ 문 의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042-601-4312

※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부 02-3459-2770

■ 관련사이트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http://blog.daum.net/kpdsedu>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제도·절차와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강자 맞춤형 사례 제시로 이해하기 쉽게 실시합니다.

1 지원규모

- ※ 교육 강사 신청 기관 직접 방문, 교재 제공 및 무료 진행
- ※ 최소 교육 참석 인원(10명 이상)

2 교육대상

- ※ 국내기업(기관) 및 연구소 특허담당자
- ※ 특허법률 사무요원,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업체 임직원
- ※ 학생, 창업 준비자 등 지식재산권 기초 검색 및 직접 전자출원에 관심있는 자

3 교육내용

- ※ 특허/실용신안 정보검색
 - 국내 특허정보 검색 이론, 검색 사이트 활용 및 실습
- ※ 디자인 정보검색
 - 디자인 검색 이론, 검색사이트 활용 및 실습
- ※ 상표 정보검색
 - 상표 검색 이론, 검색사이트 활용 및 실습
- ※ 해외특허 정보검색
 - 해외 각국 특허 제도 및 해외(USPTO·JPO·EPO·KIPRIS)검색 사이트 활용 검색 실습

※ 특허/실용신안 출원

- 전자출원 사전등록절차, 출원서·명세서·도면작성, 전자출원 S/W 실습

※ 디자인/상표 출원

- 전자출원 사전등록절차, 출원서·명세서·도면(견본)작성, 전자출원 S/W 실습

※ PCT 전자출원

- PCT 출원제도 및 전자출원 S/W(PCT-SAFE & PCT K-EDITOR) 실습

※ 마드리드 전자출원

- 마드리드 출원제도 및 출원서 작성방법, 전자출원 S/W실습
- ※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 외에도 개인 및 교육 신청 인원 미달 기업 등을 위한 특허정보 이용자 초청 교육을 지역별로 별도 실시합니다.

4 지원절차

※ 신청 및 절차

- 특허청(www.kipo.go.kr) 및 특허정보넷 KIPRIS(www.kipris.or.kr) 공지
- FAX(02-6915-1350) 또는 e-mail(kpdsedu@hanmail.net) 접수

5 문의

※ 특허청 정보관리과 042-481-5127

※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 02-569-2865

6 관련사이트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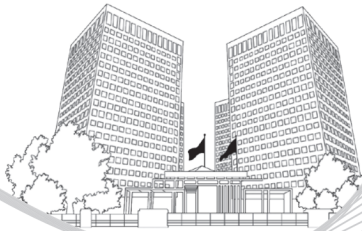
※ 키프리스 www.kipris.or.kr

※ 교육블로그 http://blog.daum.net/kpdsedu

www.kipo.go.kr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5 부



여성·사회적 약자 등

203 제1장 여성발명 지원

217 제2장 사회적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235 제3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 5 부
여성·사회적 약자 등

www.kipo.go.kr



○ 제 1 장
여성발명 지원

- 205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 207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 209 3. 생활발명 발굴·지원
- 211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 213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 215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CHAPTER 05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 ▶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여성의 창의력 개발과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1 교육대상

※ 일반 여성(학부모, 대학생, 직장인, 지역주민 등)

2 교육내용

※ 교육프로그램

교육명	시간	인원	내 용
여성발명창의교실	8시간	30여명	발명과 창의성, 지식재산권 제도, 발명공작실습 등
엄마와 함께하는 발명창의교실	2시간	40여명	발명과 창의성 이해, 발명공작실습, 창의적 문제해결실습 등

3 신청절차

※ 일정 : 2016년 3월 ~ 11월

※ 참가자 혜택 : 교재·발명정보지·기념품 제공, 수료증(여성발명창의교실에 한함) 발급

※ 신청기간 :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 참조

*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일정 확인 후 해당지역 교육협력기관 담당자에 신청접수

여성·사회적약자
이민

4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6

※ 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5

관련사이트

※ 한국여성발명협회 www.inventor.or.kr

CHAPTER 05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 ▶ 여성발명지도사를 양성하여 아동의 창의성 증진
- ◆ 아동창의교육과정과 발명활동을 연계하여 우수한 발명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아동발명교육 분야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사업내용

- ※ 여성발명지도사 양성과정 : 여성발명창의교실 수료 후 여성발명지도사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필수과목에 대한 핵심교육 지원
- ※ 여성발명지도사 자격검정 : 여성발명지도사(등록민간자격 2014-0424)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명창의교육을 지도하는 전문인력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1차필기, 2차실기)을 통해 자격 취득

2 추진일정

구 분	시간	일정 및 장소
여성발명지도사 양성과정	30시간, 2회 운영	· 2016. 4~11월 중 / 장소미정
여성발명지도사 자격검정	· 1차 : 70분 · 2차 : 15분	· 2016. 11(1차) / 서울(장소미정) · 2016. 12(2차) / 서울(장소미정)

3 신청절차

- ※ 일정 및 신청 접수 :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 참조

여성·사회적약자
이력

4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6

※ 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5

관련사이트

※ 한국여성발명협회 www.inventor.or.kr

CHAPTER 05

3 생활발명 발굴·지원

- ▶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 발굴·지원
 - ◆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여성의 감성과 직관을 접목한 창의적인 생활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상품화 지원

1 사업내용

※ 생활발명코리아 : 창의적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 출원·디자인·시제품제작을 지원하여 창조경제활동 성공사례 도출

2 추진일정

※ 일정 및 절차

▪ 아이디어 등록	2016. 4. 7(목)까지
▪ 1차 온라인심사 및 선행기술조사	2016. 4월
▪ 2차 면접심사 및 지원작 선정발표	2016. 5월
▪ 지원프로그램 운영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	2016. 6~11월
▪ 공개심사 및 시상식	2016. 11월 말

여성·사회적약자
이력

3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6년 4월 7일까지

※ 접수방법

- 생활발명코리아 홈페이지(www.womanidea.net) 참고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4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6

※ 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 idea@womanidea.net

5

관련사이트

※ 생활발명코리아 www.womanidea.net

CHAPTER 05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 ▶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를 통해 여성발명인 및 기업인의 우수한 발명품 전시
- ◆ 국내 여성발명·기업인(개인 가능)의 우수한 발명품 및 생산제품을 전시 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규모

※ 여성발명인 및 기업인 120여명

2 참가대상

- ※ 신청대상 : 여성발명인, 여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업체
- ※ 전시대상 : 여성발명인의 우수 발명특허 제품, 아이디어 상품 등

3 행사내용

- ※ 명칭 : 2016년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 ※ 장소 : 킨텍스(일산) 제2전시장 7A홀
- ※ 기간 : 2016. 6. 16 ~ 6. 19 (4일간)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등록(www.kiwie.or.kr) 또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wia01@naver.com)로 송부

여성·사회적약자
이력

- ※ 첨부자료 제출 : 참가규정,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후, 접수 확인(전시사무국)
- ※ 참가비 입금 :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참가자로 선정. 이를 통보 받은 후 참가비 입금

5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6
- ※ 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 kwia01@naver.com

6 관련사이트

- ※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www.kiwie.or.kr

7 Q&A

Q1 여성발명협회 회원이 아닌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여성발명협회 회원 유무에 상관없이, 개인 및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2~3월 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CHAPTER 05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 ▶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를 통해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전시 및 포럼 개최
- ◆ 여성발명인과 기업들의 발명아이디어를 심사·시상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여성발명대회로, 공정한 경쟁 및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 발명품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지원규모

※ 25여개국 300여점의 발명품 출품, 200여점 시상

2 출품대상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 중인 여성 및 여학생(만 18세 이상), 여성기업인의 발명품(단, 동 대회 기 수상작은 출품 불가)

3 행사내용

- ※ 명칭 : 2016년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포럼, 글로벌 여성IP리더십 아카데미
- ※ 장소 : 킨텍스(일산) 제2전시장 7A홀
- ※ 기간
 - 대회 : 2016. 6. 16 ~ 6. 19 (4일간) / 전시시간(10:00 ~ 18:00)
 - 포럼 : 2016. 6. 16 14:00 ~ 18:00 / 킨텍스 제2전시장 304-305호
 - 아카데미 : 2016. 6. 20 ~ 6. 22(3일간) /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장(예정)
- ※ 시상내용
 - 대상(그랑프리), 우수상(KIWIE상), 금·은·동상, 특별상

여성·사회적약자
이력

4 신청절차

-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등록(www.kiwie.or.kr) 또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wia01@naver.com)로 송부
- ※ 첨부자료 제출 : 참가규정,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후, 접수 확인(전시사무국)
- ※ 참가비 입금 :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참가자로 선정. 이를 통보 받은 후 참가비 입금

5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6
- ※ 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 kwia01@naver.com

6 관련사이트

- ※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www.kiwie.or.kr

7 Q&A

Q1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2~3월 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등록하면,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 ▶ 여성발명인의 아이디어 상담 지원
- ◆ 여성발명아이디어의 구체화, 특허출원 안내 등 무료 변리 상담을 통해 여성발명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드립니다.

1 지원규모

※ 교육 연중 10회, 변리 상담 서비스는 연중 실시(제한 없음)

2 지원대상

※ 여성발명 · 기업인, 일반여성

3 지원내용

- ※ 여성발명인에 대한 무료 변리 상담
- ※ 특허출원 및 사업화 관련 컨설팅과 교육 실시
- ※ 특허출원 시 변리비용의 할인 혜택
- ※ 정부의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안내

4 지원절차

- ※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 공지 확인 후 신청, 컨설팅 및 교육 참가
- ※ 변리상담은 협회 사무국에 문의, 자문협약을 체결한 변리법인을 통해 상담 가능

여성·사회적약자
이민

5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6

※ 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 kwia@inventor.or.kr

6

관련사이트

※ 한국여성발명협회 www.inventor.or.kr

7

Q&A

Q1 어떤 단체를 통해 무료 변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여성발명협회 자문변리법인에서 무료로 상담가능하며, 다만 특허출원시의 변리비용은 별도 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5 부
여성·사회적 약자 등

www.kipo.go.kr



제 2 장

사회적 약자 지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219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 222 2. 서류작성 지원
- 224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 227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CHAPTER 05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해당자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유공자
-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 등록 장애인
- ※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 소기업
-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소기업
- ※ 영세개인발명가(월소득 22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문의 상담

여성·사회적 약자
이민

- ※ 산업재산권의 복합분쟁, 비권리자 보호 등에 관련된 분쟁경영 컨설팅 제공
- ※ 발명한 기술 등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명세서 등 산업재산권의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시, 승소가능성 및 지원 타당성이 있는 경우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리 지원
-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승소가능성 및 지원타당성이 있으면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의 지원, 기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설명회 실시

3

상담방식

※ 방문자 상담

-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약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원인은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셔서 상담희망일시 및 분야를 정하시고, 예정된 일시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각 기술분야의 전문변리사로부터 충실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업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리사로부터 직접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 : 매주 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12:00~13:00 점심시간)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주소 www.pcc.or.kr

※ 서신 상담

- 우편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출력된 문서나 사진 등을 보내 주실 때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지역순회 상담

- 변리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계신 민원인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익변리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하여 미리 정해진 순회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순회 상담 일정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pcc.or.kr>) → ‘센터에서 하는 일’ → ‘지역순회상담일정’에서 확인 가능

4 지원절차

※ 신청절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www.pcc.or.kr)

5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6 관련사이트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www.pcc.or.kr

2

서류작성 지원

-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출원·심판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명세서·심판 청구서 등 출원·심사·심판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해당자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유공자
-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 등록 장애인
- ※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 소기업
 - ※ 서비스 제공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 지원대상 서류에 해당할 것
 - 등록요건을 갖출 것
 - 지원한도(동일 회계연도 내에 권리별 각 1건을 원칙)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지원내용

- ※ 서류 작성 지원
 - 명세서 등 출원관련 서류(상표는 제외)
 - 의견서, 보정서 등 출원관련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와 관련 서류 등

3 지원절차

- ※ 신청시기 : 수시
- ※ 지원절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www.pcc.or.kr)



- ※ 신청관련 서류 : 서류작성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증명자료, 발명설명서 등

4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5 관련사이트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www.pcc.or.kr

여성·사회적 약자
이력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해당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 수행자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등록 장애인
-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소기업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 영세개인발명가(월소득 220만원 이하)

2 지원요건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 ※ 지원대상 심판 또는 소송에 해당할 것
 - 지원대상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정정심판
 - 위 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것
- ※ 서류의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건은 기한이 임박하지 않을 것

3 지원내용

- ※ 산업재산권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지원

4 신청절차

- ※ 신청시기 : 수시
- ※ 지원절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www.pcc.or.kr)



- ※ 신청관련 서류 :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증명자료, 등록원부, 등록 공보, 주장사실 증명서류

여성·사회적 약자
이민

5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6

관련사이트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www.pcc.or.kr

CHAPTER 05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비용 지원
- ◆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 침해민사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지원범위

- ※ 건당 500만원 이하
 -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경우 1,000만원 이하
- ※ 승소시 지원금액 50% 이내의 성공사례금 지급(소송비용을 환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반납한 경우)

2 지원대상

-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해당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등록 장애인

여성·사회적 약자
이민

-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소기업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 영세개인발명가(월소득 220만원 이하)

3 지원요건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 ※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원한도(동일 회계연도 내에 신청인당 2,000만원)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서류의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건의 경우 기한이 임박하지 않을 것

4 지원내용

-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

5 지원절차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절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www.pcc.or.kr)



여성·사회적 약자
이동

※ 신청관련 서류 : 민사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등록원부, 등록공보, 주장사실 증명서류

6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09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7 관련사이트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www.pcc.or.kr

8 Q&A

Q1 지방에 거주할 경우 효율적인 상담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발명을 출원하고자 서류 작성 지원을 받고 싶지만 거동도 불편하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안내 및 변리사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문의 잘 주셨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변리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을 방문해 지역 거주 민원인을 위해 출장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가까운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내 “지역순회상담 일정”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전화(02-6006-4300), 온라인(www.pcc.or.kr)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지원 받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서류작성 지원 등 특허상담센터의 사업을 지원 받는 횟수에는 혹시 제한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다수의 지원대상자에게 공평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류작성 지원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권리별 각 1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은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 1건당 500만원 이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경우는 1건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동일인에 대한 비용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신청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서류작성 지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 특허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려니 힘이 많이 드는군요. 그래서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류작성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서류작성 지원은 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하기위해 필요한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 과 디자인 출원을 위해 필요한 '도면'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면의 경우 담당자 검토 후 발명의 완성품이 있는 경우 도면 작성을 위한 사진 촬영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서, 보정서 등의 중간서류에 대한 작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상표의 경우 출원 절차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중간서류의 경우 지원 가능) 한편, 등록공고 된 후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 지원 및 거절불복 심판청구와 관련된 심판청구서 및 의견서·보정서 작성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4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심판·심결취소소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익변리사가 심판·심결취소소송을 직접 대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지원대상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이어야 하며 외부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그리고 해당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입니다. 단, 무효심판은 피청구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사회적 약자
이민

Q5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지원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지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일 신청하게 된다면 그 이후 지원여부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A 일단, 심판·심결취소소송의 대리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3인의 공익변리사가 전문 기술 분야별로 지정되어 통상 7일내 지원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심사 합의체는 승소가능성, 대리인 지정 유무, 지원한도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거절 결정시 거절사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거절사유를 확인하신 후, 거절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시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절결정을 내린 담당변리사를 제외한 3인의 공익변리사로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건을 재검토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지원여부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Q6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특허관련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혼자 힘겹게 준비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비용 지원 이외에 변호사 선임도 센터를 통해 할 수 있을까요?

A 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의 경우, 대리인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POOL을 운영하여 신청인이 조속히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민사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등록원부 및 공보,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이후, 해당 사건을 담당할 3인의 공익변리사가 전문 기술 분야별로 지정되어 통상 7일내 지원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심사 합의체는 승소가능성, 소송 관련 서류의 제출기한, 지원 한도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거절 결정시에는 거절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지원 결정이 된 분들은 변호사 풀(POOL)에 속한 변호사를 소송 수행 대리인으로 선정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7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와 민사소송 '비용지원' 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발명과 특허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혹시 센터가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및 민사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지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및 민사소송 비용 지원 사업은 상기 범위 내에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익 변리사 3인으로 구성된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동시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8 중기업도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록권리자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중기업도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에 한정하여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중기업이 소기업 및 중기업을 상대로 특허법률 구조사업을 신청하실 경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때 중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을 의미합니다. 또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합니다.

Q9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외 해결 방법을 알고 싶어요.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이외의 해결방법은 없나요?

A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분쟁이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정신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그 밖에 해당 권리 실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분쟁조정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조정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게

여성·사회적 약자 지원

되며 이 조정부가 분쟁의 조정을 행하게 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 및 산업재산권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검토 및 잠정합의권고안을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10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직무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업원 등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신청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등 조정이 성립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과 별도로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종업원 등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이하,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므로(발명진흥법 제15조 참조), 종업원 등은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여성·사회적 약자 등

www.kipo.go.kr



제 3 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237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식재산 재능나눔

1

▶ 지식재산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조성

◆ 특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재능'을 지식재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업 등을 위해 나누는 활동을 말합니다.

1

모집대상

재능기부자	재능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리사, 디자이너, 지식재산서비스업계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및 업무 종사자 · 대학(기술 및 디자인 전공), 특허법인, 기업 등 지식재산 재능나눔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식재산 교육 신청은 누구나 가능)

2

모집분야

분야	내용
출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출원 상담
선행기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정보를 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관련 맞춤형 교육 제공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 컨설팅 제공
브랜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제품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제품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

여성·사회적약자
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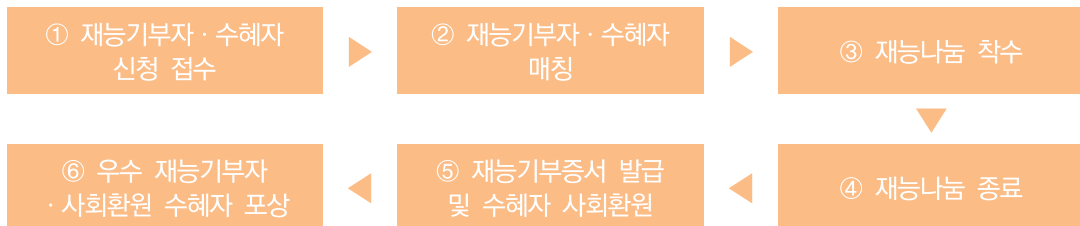
3 신청방법

-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한 신청
- ※ 지식재산재능나눔 홈페이지(www.ripc.org/ipnanu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4 신청기간

- ※ 수시모집

5 진행절차



6 문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43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부 02-3459-2862
-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7 관련사이트

- ※ 지식재산재능나눔 www.ripc.org/ipnanum
-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 지원기업 코멘트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산학연계형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지원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여 큰 기대없이 시작하였지만, 교수님과 학생들의 함께 제품개발을 위한 성심성의껏 고민해준 결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보도블록, 가구개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았으며,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제품디자인 개발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재능나눔을 통해 지원받은 후 기업의 사회환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 저희도 나눔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합)동서콘크리트 대표, 2015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성과 보고회 중]

■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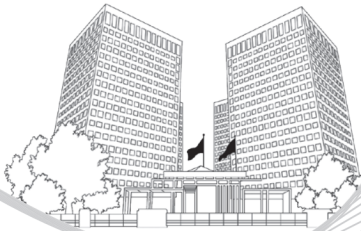
 <p>〈출원상담〉</p>	재능기부자 정용주 변리사, 특허법인 신태양
	수혜자 테바(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p>〈포장디자인 개발〉</p>	재능기부자 최정계 대표, (주)휴먼아이디비
	수혜자 싱그런협동조합법인
지원내용 출원상담, 선행기술조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청소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선행기술조사와 출원상담 등을 의뢰함 - 변리사 재능나눔 참여를 통해 제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유사상표분석 등 지식재산 컨설팅을 진행하고 특허출원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에서 판매하는 공용 박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중으로, 기업만의 특색이 담긴 포장디자인 개발을 의뢰함 - 디자인 전문가 재능나눔 참여를 통해 업체 상담, 제품 특성 등을 구체화하여 제품 특색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 	

여성·사회적약자
이해

www.kipo.go.kr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제 6 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243 제1장 제 도

285 제2장 행 사

제 6 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www.kipo.go.kr



○ 제 1 장
제 도

- 245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 248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 255 3. IP-R&D 종합 포털
- 257 4. 디자인 맵(Design Map)
- 262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265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 272 7.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275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 280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 282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지원 확대 employeeinvention.net

- ◆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2 지원내용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 (특허청)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 (미래부) 개발SW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 혜택

- 발명자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 사용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세액 공제 등

※ 특허 우선심사 및 연차등록료 감면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추가 20%감면

3 지원절차

※ 인증서 발급절차



- (신청) 연중 수시
- (심의) 연4회 심의위원회 개최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 인증기준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

- (발급)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증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인센티브)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면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받은 종업원의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합리적 운용을 증명하는 서면
 - 청렴서약서
- *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에서 다운로드

※ 신청접수

-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 온라인 접수

4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6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8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0, 2848

7 Q&A

Q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를,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서 ‘중견기업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2

출원료 ·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 출원료 ·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출원료 · 등록료 등 수수료를 면제 및 감면합니다.

1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6년분의 특허(등록)료(개인<면제 대상자 포함>,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에 한함),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상표는 면제 ·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방법**

※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 시에 면제 ·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3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사본 등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5.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6.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2012. 4. 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복무증명서

※ 유의사항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 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다만, 2012년 4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 출원하는 것부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수는 3개 이하이고, 2016년 1월 1일 이후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의 면제 대상 청구항 수는 30개 이하임

4 85%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만 65세 이상인 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리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5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중기업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아래 각호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3. 중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맞을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유의사항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리별로 각각 연간 20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6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 5. 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 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증명서류 없음 없음 없음 해당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하였음에 대한 증빙자료
3. 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유의사항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7 3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8 4~6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2.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중기업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을 것	○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원료 감면시 증명서류 참조)
3.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맞을 것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원료 감면시 증명서류 참조)
4. 공공 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해당 증명서류 ○ 없음 ○ 없음 ○ 없음

감면대상	요 건	증명서류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 해당 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5.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4~6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않음)

9 공동출원인간 감면율이 다른 경우 평균감면율 적용

- ※ 공동출원인 간에 감면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 수로 나누어 평균감면율을 구하고, 그 감면율 적용

10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폐지

- ※ 연차등록료 감면 도입 및 수수료 감면 확대와 연계하여 폐지. 단, 제도 폐지 시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때까지 사용 가능

11 문 의

-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 ●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 특허청 출원과 042-481-5414
- ※ 특허청 등록과 042-481-5241
- ※ 특허청 국제출원과 042-481-5198
-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8426
-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3

IP-R&D 종합 포털

- ▶ IP-R&D 수요자와 협력기관 간의 중개시스템 www.ip-rnd.re.kr
- ◆ IP-R&D 자율중개, 우수협력기관 정보, 교육, 일자리 창출 정보가 한 곳에서 해결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1

지원대상

※ 산·학·연(중소·중견·대기업, 대학, 공공연 등), IP-R&D 협력기관 등

2

서비스 내용

※ 웹사이트 구성

자율 중개	교육	일자리	공지 및 문의
IP-R&D 자율중개란?	교육과정	채용정보	공지사항
과제정보	나의 강의실	인재정보	FAQ
협력기관정보			Q&A
IP-R&D 가이드			
이달의 협력기관			
IP-R&D 지식 IN			

※ 제공 정보

- IP-R&D 자율중개
 - IP-R&D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참여기관(산·학·연)과 수행 협력기관(지식 재산서비스 전문기관)을 자율적으로 연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 (참여기관) 협력기관 및 인력 정보 제공(과제 참여 이력 및 실적 등), 지원프로그램별 표준서비스 가이드라인
 - (협력기관) 과제 정보 공개



- IP-R&D 교육
IP-R&D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개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IP-R&D 일자리
기업이 원하는 IP-R&D 전문인력,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한 구인 정보 제공

3 이용절차

※ IP-R&D 종합 포털 홈페이지(www.ip-rnd.re.kr) 회원 가입 후 이용

4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5156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02-3475-8591

5 관련사이트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kipsi.re.kr

■ 이용자 코멘트

※ “IP-R&D 자율중개 시스템을 통해 우수 협력기관을 신속하게 연계받았으며, 이러한 우수 협력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맞춤형 특허분석을 실시하여 적기에 R&D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KAIST 백승민 연구원]

CHAPTER 06

4

디자인 맵(Design Map)

- ▶ 디자인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 (ww.designmap.or.kr)
-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디자인권 정보를 고유의 형태분류 체계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와 디자이너·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디자인 지식재산권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자인권 포털 사이트입니다.

1 **지원대상**

※ 디자인업계 종사자, 중소기업, 변리업계 종사자 등

2 **서비스 내용**

※ 웹사이트 구성

디자인원 검색 가전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 가구/인테리어 실외구조물 생활/문구 패션잡화/화장품 건강 스포츠/레저 운송수단 및 관련용품 그래픽디자인	IP 투데이 오늘의 지식재산권 오늘의 IP 뉴스	IP 포커스 디자인 콤파스 IP 분쟁사례 IP 이슈	디자인 트렌드 디자인 이슈 디자인 피플	산업재산권 안내 디자인권 안내 출원절차 IP 용어사전 물품별 부분명칭 사전 IP 관련링크 FAQ	MY PAGE My Designmap 회원정보수정
---	----------------------------------	---------------------------------------	-----------------------------	---	-----------------------------------

디자인 소개 | 디자인권 검색 방법 | FAQ | CONTAC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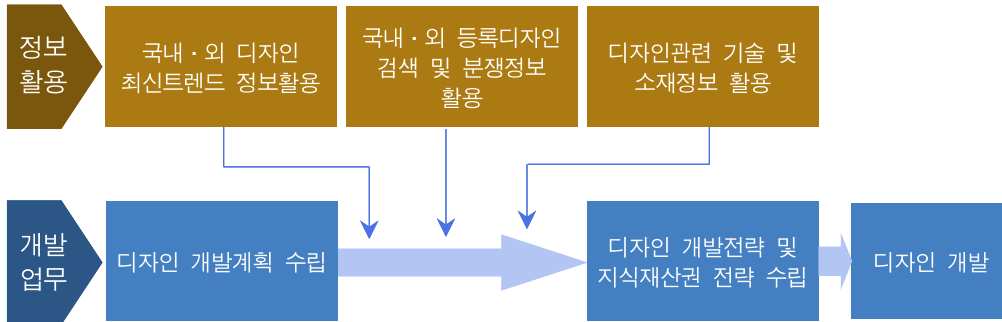
※ 제공 정보

- 주요 물품에 대해 국내·외 등록 디자인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제공
- ※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이 제공한 주요국 등록디자인 정보를 활용하여 분쟁대응 전략 및 회피디자인 전략 수립 가능
- 주요 6개국 등록디자인 공보(78만건)의 형태기반 검색 서비스
- 디자인개발을 위한 등록디자인의 형태 분석, 연도별 트렌드 정보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최신 국내·외 주요 디자인·상표 분쟁 전문정보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에세이 형식으로 가공하여 제공
- 최신 지적재산권 및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담은 온라인 웹진 발간

〈 디자인 맵 활용방법 〉



3 이용절차

- ※ 디자인 맵 홈페이지(www.designmap.or.kr)에서 무료이용, 회원가입시 선행디자인 조사를 위한 My Designmap 활용 가능
- ※ 모바일사이트 : m.designmap.or.kr, 페이스북 : KipoDesign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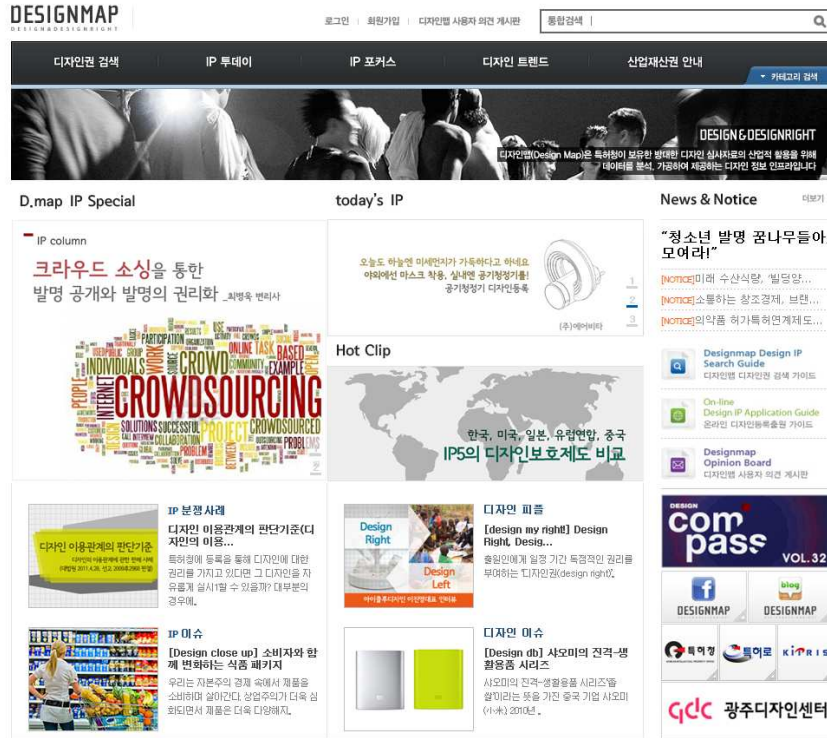
4 문 의

-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203, 5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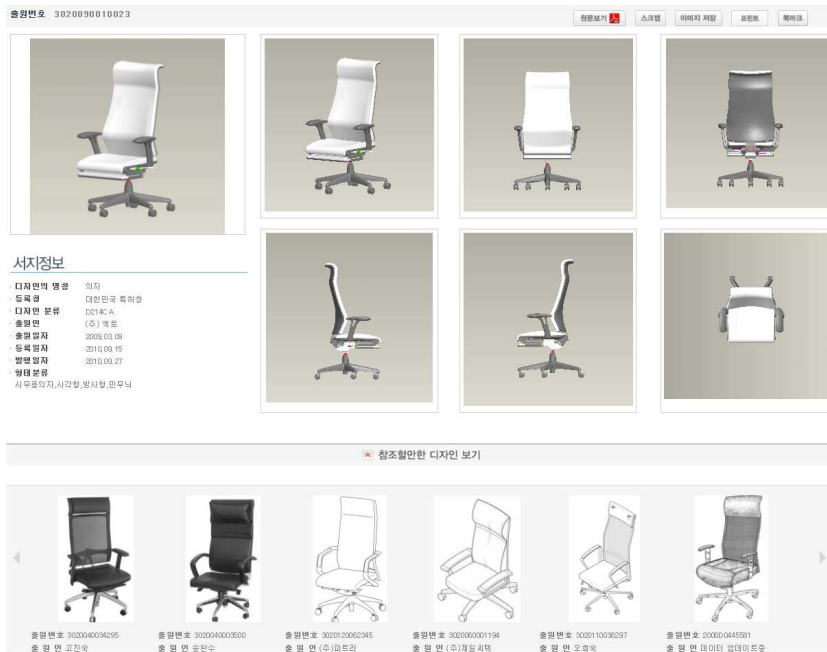
■ 지원기업 코멘트

- ※ “디자인맵에서 디자인권 형태검색 기능을 통해 국내외 특허청에 등록된 ‘화장품 병’ 디자인 약 9,000건 중 자사 제품과 유사한 특정 형태로 검색하여 살펴 볼 수 있어서 선행디자인 조사시간을 크게 단축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맵에 올라오는 디자이너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권 전문 콘텐츠를 읽다보니 디자인보호법에 한층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자인 분쟁사례 콘텐츠가 실무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잇츠스킨 정미수 과장]

< 디자인맵 웹사이트 메인 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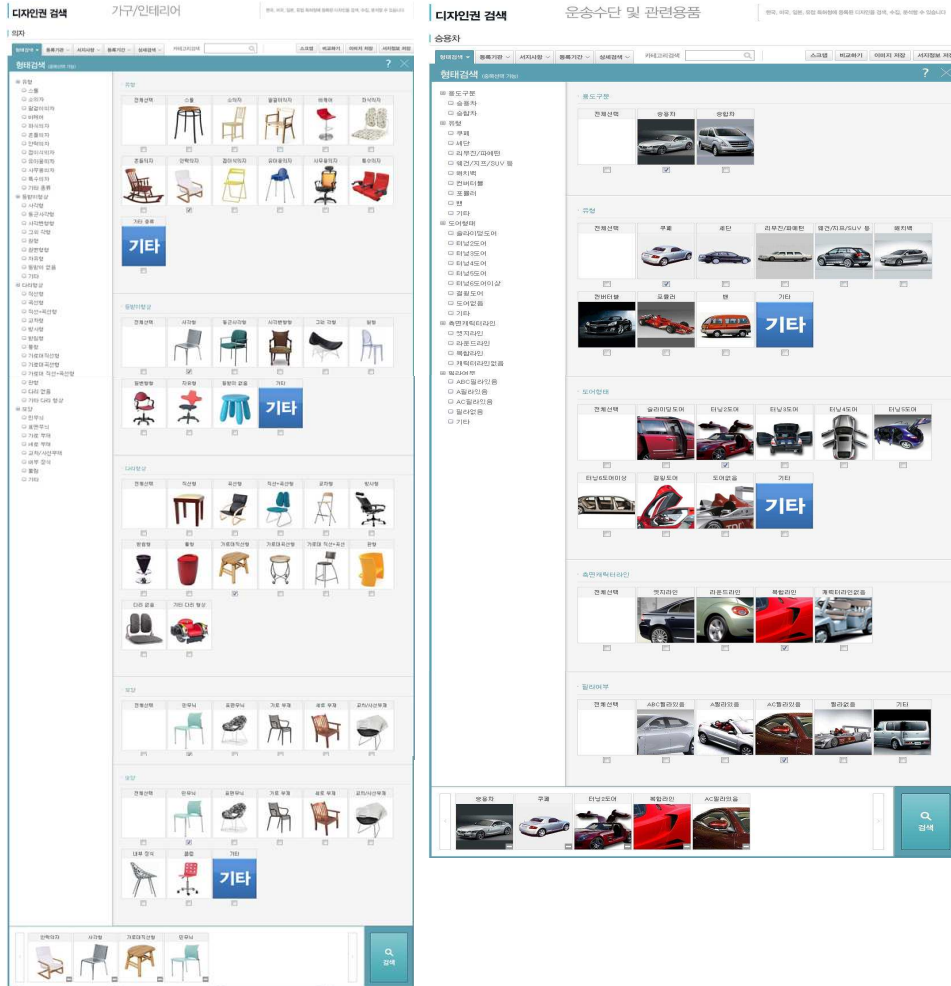
< 디자인 그룹화 자료 제공 >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디자인맵 고유의 형태분류에 따른 검색서비스 화면 〉



〈 디자인 지식재산권 웹진 “Design Compass” (분기별 발행) 〉



〈 디자인맵 활용 가이드북 “Design all right” 〉



〈 디자인맵 뉴스레터 (월 2회 발송) 〉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www.kipris.or.kr

-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검색 및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검색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개인, 초·중·고·대학생, 변리사,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인력 등

2 서비스 내용

※ 사이트 구성

SEARCH 특허정보검색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 대국민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KPA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

인터넷기술공지

아이디어 공모전

문장검색

TODAY 특허정보통계

실시간 인기특허, 권리별 검색이용건수, IPC 색선편 다출원, 최근이슈특허 등

PR 홍보동영상

KIPRIS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영상(국문, 영문, 일본, 중문)

GUIDE 검색도움말

원하는 특허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초보자검색프로그램

쉽게 배우는 특허검색

- 통합검색이용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심판
- 해외특허
- 해외상표
- 해외디자인

KIPRIS 서비스

- 나옴심특허
- 번역서비스
- 특허용어사전
- 자료제공
- 관련프로그램설치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 의견수렴
- 검색개선사항
- 검색교육신청
- 찾아가는 특허서비스
- 검색팁 & 노하우

262 ●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 초보자 및 일반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검색항목 제공

- 단순한 화면구성으로 초보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과 일반 이용자가 기술분류, 출원인 등 검색항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검색으로 구분하여 제공

※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 국내 지식재산권 정보 및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특허(12개국), 미국, 일본 등 해외상표(5개국), 미국, 독일 등 해외디자인(3개국), 아이디어 공모전, 인터넷기술공지 등 비특허문헌 제공

※ 특허청의 행정처리사항 및 원본 정보제공

- 심사·등록·심판사항에 대한 행정이력 확인 및 심사 관련서류의 원본 열람서비스 제공

※ 이용자 맞춤형 검색서비스 제공

- 나의 관심 특허서비스(메일링), 찾아가는 특허서비스, 영↔한, 일↔한, 중↔한 기계 번역 서비스, 인기검색어, 온라인 다운로드의 맞춤형 기능 제공

※ 초보이용자 검색 편의를 위한 검색서비스 제공

- 문장, 번호(출원, 등록, 공개)를 입력하여 유사한 특허·실용신안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문장검색 서비스 제공

3 이용절차

-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홈페이지(www.kipris.or.kr) 및 모바일웹(m.kipris.or.kr)을 통해 무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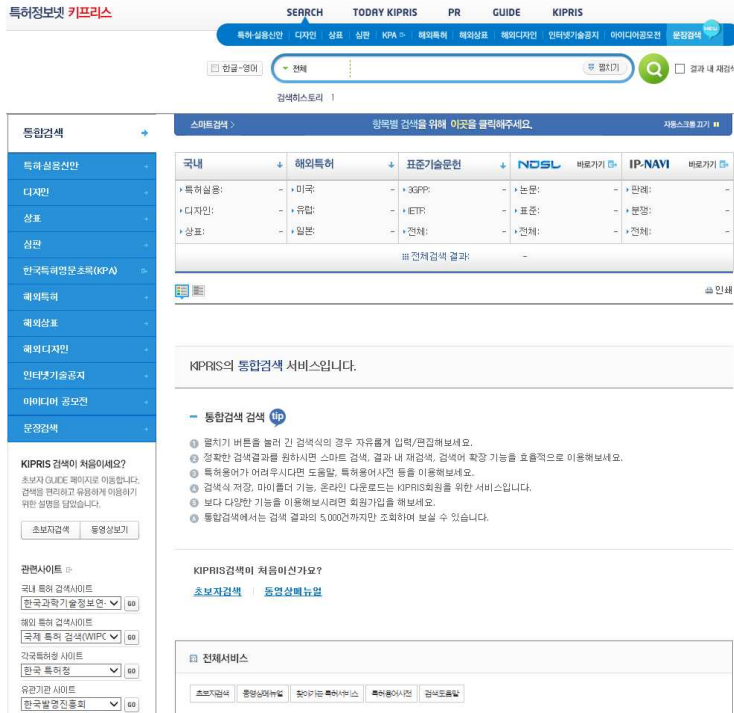
4 문 의

- ※ 특허청 정보관리과 042-481-5148
- ※ 한국특허정보원 검색서비스팀 042-483-4700, 4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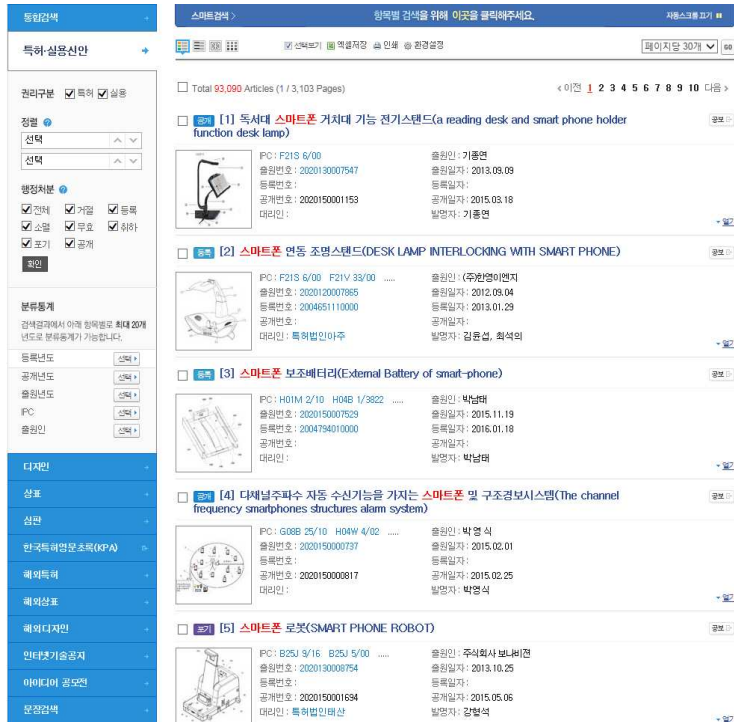
5 관련사이트

-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통합검색 화면 〉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검색결과 화면 〉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 특허정보활용서비스 제공

plus.kipris.or.kr

-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일반국민이 손쉽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데이터를 Bulk Data, Open API 방식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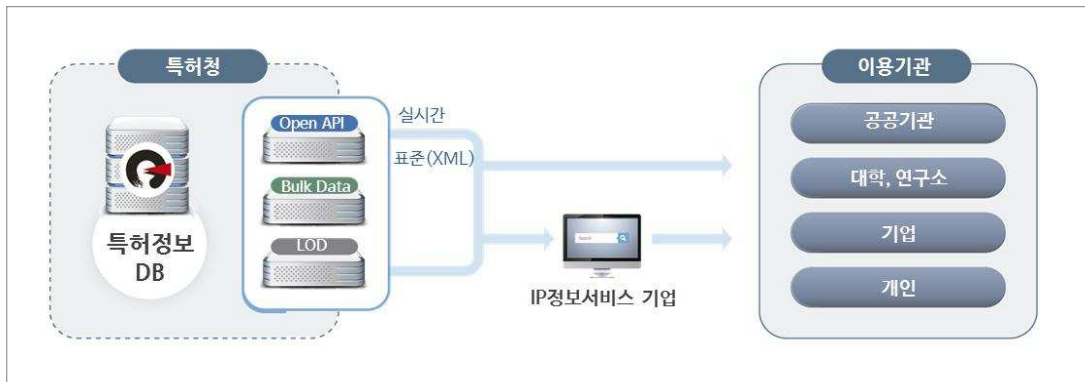
1

지원대상

※ 일반인, 학생,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정보사업자 등

2

서비스 내용



※ Open API

- 자체 DB 구축 없이 서비스 연계·개발이 용이하도록 실시간 데이터 제공
- 제공방식 : 웹서비스(SOAP/REST 방식)

※ Bulk Data

- 표준화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의 파일(PDF, XML, TEXT 등)로 제공
- 제공방식 : FTP 및 전자매체(CD/DVD/HDD 등)

※ LOD(Linked Open Data)

- 웹상에서 정보의 접근 및 상호연계가 용이하도록 LOD 데이터 제공
- 제공방식 : RDF, XML, N-TRIPLE, TURTLE

※ 서비스 대상 데이터

- 국내 데이터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정보, 권리자 변동정보, 법적상태정보, 특허패밀리, 출원인대표명정보, 거절결정서 등 37종
- 해외 데이터 : 미국, 유럽, 국제(PCT), 중국, 일본, 필리핀, 멕시코 27종

※ IP정보 개방·유통 포털(<http://plus.kipris.or.kr>)

- 지식재산정보 기반의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민간의 데이터·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IP정보 상품 등록
- 제공방식 : Open API, Dataset(TEXT, XLS, PDF 등), 웹페이지 링크
- 종류 : (공공) 144개, (민간) 47개

3 이용절차

- ※ 특허정보활용서비스 홈페이지(plus.kipris.or.kr)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

4 문의

- ※ 특허청 정보관리과 042-481-5148
- ※ 한국특허정보원 02-6915-1400
- ※ KIPRIS^{Plus} Help Desk 02-6915-1435

5 관련사이트

- ※ 한국특허정보원 plus.kipris.or.kr

〈 KIPRIS^{Plus} 웹사이트 〉

The screenshot displays the KIPRIS Plu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DATA, OPEN API, LOD, 개발자광장, 참여스통, and KIPRIS^{Plus}. A main banner for 'PATINEX 2016 사전 설문조사' is visible. Below this, the 'DATA' section is highlighted, containing several sub-sections:

- DATA 개관현황**: Information about data registration and API statistics.
- 최근 등록 데이터**: A list of recently registered data items with details like '최근 피상구인별 심판장구 현황'.
- 기입 DATA 정보**: A list of available data types such as '트랜스텍츠 자동번역 API', '마크시치(MarkSearch)', and '이동통신서비스정보(IP-Brain)'.
- 링크드 오픈 데이터**: Information about linked open data services.

On the left side, there are navigation menus for '서비스 안내', '개발자 광장', and '참여스통'. A '데이터 상세 현황' bar chart is also present, showing counts for API (37), Bulk (112), Sheet (32), Chart (32), and Link (24).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 기준 수수료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제공데이터	Bulk Data		Open API
		당해연도	과거분전체	
1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	3,768,000	20,724,000	※ 월1,000건 이하 : 무료 ※ 월1,000건 초과 : 2,497,000 / 년
2	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	3,768,000	20,724,000	
3	특허·실용신안 통합이력	2,826,000	15,543,000	
4	특허·실용신안 심사인용문헌	1,884,000	10,362,000	
5	특허·실용신안 분류코드 이력정보	1,884,000	10,362,000	
6	특허패밀리리정보	1,884,000	10,362,000	
7	상표공보	3,768,000	20,724,000	
8	상표출원 속보	2,826,000	15,543,000	
9	상표 통합이력	2,826,000	15,543,000	
10	디자인 공개·등록공보	3,768,000	20,724,000	
11	디자인 통합이력	2,826,000	15,543,000	
12	정정공보	공보 이용시 무료 제공		
13	법적상태정보	1,884,000	10,362,000	
14	기한정보	3,768,000	20,724,000	
15	의견제출통지서	2,826,000	15,543,000	
16	거절결정서	2,826,000	15,543,000	
17	등록사항	3,768,000	20,724,000	
18	권리권자 변동정보	2,826,000	15,543,000	
19	분류코드 정보	무료	-	
20	KSIC-IPC 매핑정보	무료	-	
21	심판사항(심결문)	3,768,000	20,724,000	
22	출원인 대표명 정보	1,884,000	10,362,000	
23	슈퍼인용문헌	무료	-	
24	권리만료 예정 물질특허	무료	-	
25	국유특허	무료	-	
26	특허기탁미생물	무료	-	
27	아이디어DB	무료	-	
28	인터넷기술공지	무료	-	
29	IP-Biz 하나로 서비스 제품DB	무료	-	
30	특허청 디자인맵 형태검색DB	무료	-	

구분	제공데이터	Bulk Data		Open API
		당해연도	과거분전체	
31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	특실 공보 이용시 무료 제공		※ 월1,000건 이하 : 무료 ※ 월1,000건 초과 : 2,497,000 / 년
32	시소러스	무료	-	
33	영한 특허기술용어 번역사전	무료	-	
34	일반 특허기술용어 번역사전	무료	-	
35	일영 기계번역사전	무료	-	
36	한국특허영문초록(KPA)	2,826,000	15,543,000	
37	한국특허영문초록(KPA) 속보	KPA 이용시 무료 제공		
38	기계번역용 국문초록	무료	-	
39	DOCDB	3,768,000	20,724,000	
40	PCT 공개	3,768,000	20,724,000	
41	공익표장	-	무료	
42	미국 공개공보	3,768,000	20,724,000	
43	미국 등록공보	3,768,000	20,724,000	
44	유럽 공개공보	3,768,000	20,724,000	
45	유럽 등록공보	3,768,000	20,724,000	
46	유럽 특허법적상태정보	1,884,000	10,362,000	
47	EPO PATSTAT	1,884,000	10,362,000	
48	일본 공개공보	3,768,000	20,724,000	
49	일본 등록공보	3,768,000	20,724,000	
50	일본공보(과거, TEXT)	-	-	
51	일본 특허영문초록	2,826,000	15,543,000	
52	일본 특실 정리표준화 데이터	1,884,000	10,362,000	
53	일본 분류정보	1,884,000	10,362,000	
54	미-중-유럽특허 일문초록	1,884,000	10,362,000	
55	PCT국내(일본) 진입단계	1,884,000	10,362,000	
56	중국 공개공보	3,768,000	20,724,000	
57	중국 등록공보	3,768,000	20,724,000	
58	중국 특허영문초록	2,826,000	15,543,000	
59	멕시코 특허 공개공보	1,884,000	10,362,000	
60	멕시코 특실, 디자인 등록공보	1,884,000	10,362,000	
61	멕시코 상표공보	1,884,000	10,362,000	
62	멕시코 기타	멕시코 상품 이용시 무료 제공		
63	필리핀 특허 공보	1,884,000	10,362,000	
64	ARIPO 산업재산권 통합본 공보	공보 이용시 무료 제공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신청인 또는 신청 방법에 따른 할인율

적용 구분	신청인 또는 신청방법	할인율
Bulk, API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API*	2개 이내 상품만을 구매하는 경우	50%

* 중복 할인(신청인, 신청 방법) 가능

참고 2 IP정보 개방·유통 포털내 민간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 민간 IP정보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 IP정보 상품 등록(18개 기업, 47개 상품)

상품명	상품 구분	제공방식	제공 업체
NPE Data	권리분쟁	Dataset	광개토 연구소
특허거래 Data	기술거래	Dataset	
특허소송 Data	권리분쟁	Dataset	
특허별 평가 Data	가치평가	Dataset	
표준특허 Data	정보검색	Dataset	
Patent Rank	정보검색	LINK	
마크서치 (Mark Search)	정보검색(상표)	Package	마크프로
마크서치 모바일	정보검색(상표)	App	
PATSpider	권리분쟁	LINK	아이피아이
IP경영분석시스템 (P-Brain)	특허관리	API	애니파이브 시스템
IP통합관리시스템 (SmartIP)	특허관리	API	
상표통합관리시스템 (SmartTM)	특허관리	API	
전자연구노트 (SmartLAB)	특허관리	API	
지식재산권관리(IPIMS)	특허관리	API	
IP가치평가시스템 (K-Brain)	가치평가	API	
특허법률사무소관리 (IPAMS)	특허관리	API	
소송분쟁예보시스템 (R-Brain)	권리분쟁	API	
웍스온(WIPS ON)	특허분석	LINK	
윈텔립스(WINTELIPS)	특허분석	LINK	
웍스글로벌 (WIPS Global)	특허분석	LINK	
팻브리지(PATBRIDGE)	특허/실용신안	LINK	
인투마크 (INTOMARK)	정보검색	LINK	

상품명	상품 구분	제공방식	제공 업체
툼슨 이노베이션	해외공통	LINK	툼슨로이터 코리아
툼슨 데이터 애널리저	해외공통	LINK	
마크모니터	해외공통	LINK	
SAEGIS	해외공통	LINK	
더원 세계 특허 인덱스(DWPI)	해외공통	LINK	
토탈페이턴트 (TotalPatent)	특허분석	LINK	렉시스넥시스
페이턴트 스트래티지 (Patent Strategies)	가치평가	LINK	
페어 워치(Pair Watch)	특허분석	LINK	
파일 포대(File Wrapper)	특허분석	-	
KLTO APP	특허/실용신안	LINK	강원대 산학협력단
트랜스위즈 자동번역 API	번역	API	솔트룩스
K2E-PAT	번역	LINK	시스템란 인터넷셔널
ez Trans API	번역	LINK	
이지스 특허조사분석 시스템	특허분석	LINK	에어스
R&D 특허정보시스템	동향조사	LINK	비전인사드
GLAS	특허분석	LINK	비투팜
오픈스터디(OpenStudy)	특허분석	LINK	글로벌오픈 스터디
ORBIT-Questel	동향조사	LINK	이디리서치
특허관리시스템 (i-IPS)	특허관리	LINK	아이피티즌
특허사무소용 특허관리시스템(XPAT)	특허관리	LINK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air-IPS)	특허관리	LINK	앰프론티어
WISDOMAIN	특허관리	LINK	위즈도메인
IP Intellisource	특허분석	LINK	
컴파스(Compass)	특허분석	LINK	
포커스트라이트 (FOCUS-Light)	특허관리	LINK	

7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m.kipi.or.kr/ipconsult

◆ 단일화된 민원상담 창구를 통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내용**

- ※ 특허넷·전자출원 전반에 대한 오류 조치 및 원격지원 서비스
 - 특허청 대표번호(1544-8080)를 통한 특허넷·전자출원 전반에 대한 서비스
 - 전자출원SW, '특허路'를 이용한 전자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실시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처리하는 1:1 PC원격지원 서비스
- ※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안내 서비스
 - 국내 지식재산권 및 PCT, 마드리드 등 국제 출원 전반에 대한 서비스
 - 특허기술 정보검색 서비스 및 해외 특허정보 이용방법, 공개공보·공고공보 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 안내
- ※ 고객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엔젤콜)
 - 권리소멸 방지를 위해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관련 절차 및 진행방법 안내
 - 공시송달/신규설정등록/연차등록료 납부 및 자동납부신청사실/수수료반환/상표 갱신등록/설정등록료 과납/심사청구기간 만료/청구범위유예출원 등 12개 대상에 대한 사전 안내 제공
- ※ 모바일 상담 서비스
 - 모바일 웹(Web) 및 트위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사례, 전자출원SW 동영상 정보 및 전화·문자·PC원격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2 **이용절차**

-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상담시간 : 9시~18시(공휴일 제외)

-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고객상담센터
- ※ 모바일 웹 : m.kipi.or.kr/ipconsult
- ※ 트위터 상담 : @ipconsult

3 문의

-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225

〈 원격상담신청 화면 〉



1:1원격상담이란 특허로 이용시 출원인코드부여, 전자출원소프트웨어 설치, 정보변경 등 전자출원 전반에 관한 오류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서비스로 민원인과 상담원간의 웹을 이용한 **화면 공유서비스**입니다.

원격상담신청은

1. 특허로 접속시 고객의 전화번호 등록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2. 대표전화 1544-8080 전화로 상담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원격상담신청

- 1:1원격상담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인, 전화번호, 간략한 서비스 신청내용, 동의여부 등을 작성한 후 아래 신청버튼 클릭

Go

>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조회

-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상담신청 순서에 따라 담당자가 접수된 전화번호로 연락

Go

>



1:1 원격상담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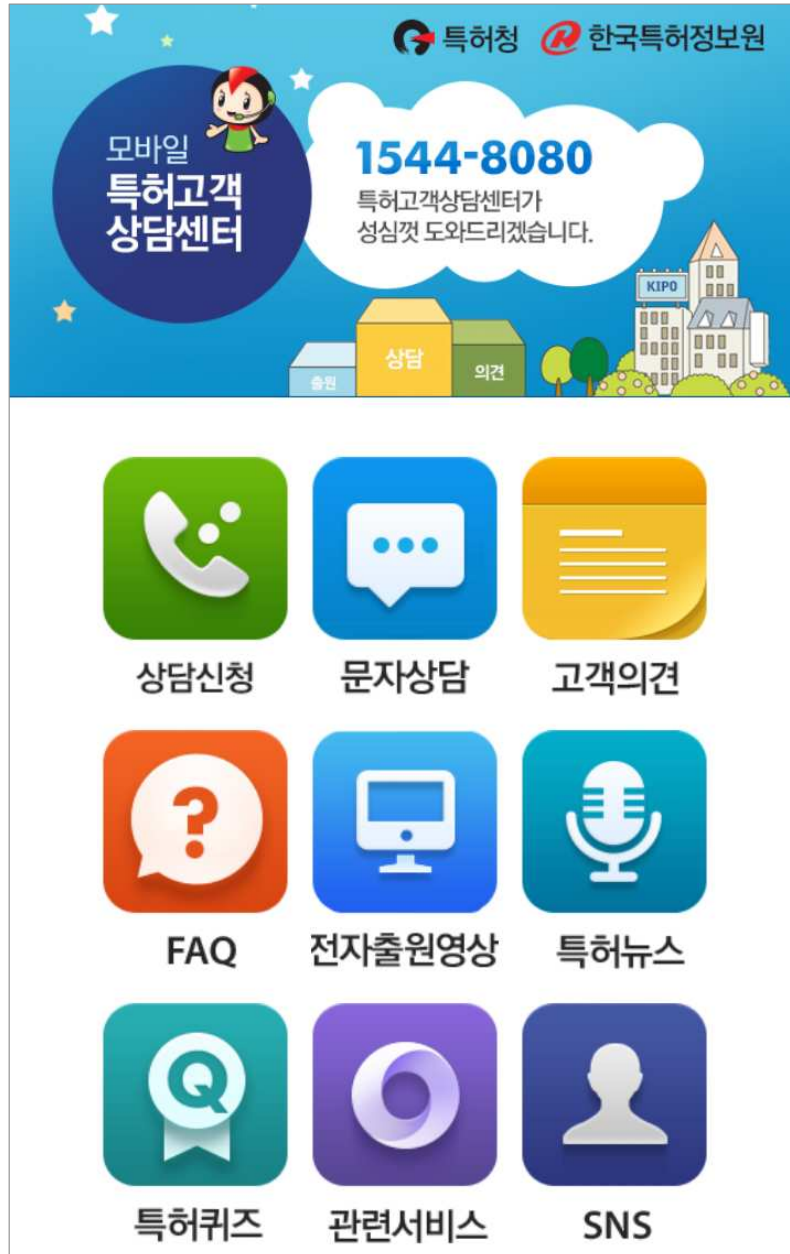
- 전화연결 후 담당자가 접속 코드 부여 > 번호입력 > 접속
- 사용자의 PC접속을 원하시면 원격상담 수락버튼 클릭

Go

※ 접수건수 및 처리내용에 따라 연락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원격상담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9시~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특허고객상담센터 모바일웹 메뉴 화면 〉



CHAPTER 06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 표준특허 관련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 www.epcenter.or.kr

◆ 표준특허 전문정보, 표준특허 통계 현황, 표준특허 교육 및 사업 안내 등 표준특허 분야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 표준특허에 관심 있는 산·학·연·관 및 일반인 대상

2 서비스 내용

※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 구성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사이트 메뉴 구성

사업소개	표준특허DB	표준특허 온라인 교육	표준특허 관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 R&D표준특허창출지원 - 국제표준안 개발 시 특허전략 지원 - 중소기업 적합형 표준특허 전략지원 - 표준 제정 특허 대응 지원 - 표준특허 후속관리 - 표준특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특허 통합검색 · 표준특허 통계 - 주요 표준화 기구 - 주요 특허물 · 표준특허 협력기관 풀 · 표준특허 전문가 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교육과정 -표준특허 이론과 사례 -표준특허 심화 -표준특허 전략 -표준특허와 특허물 -성공적인 특허물 결성 및 운영관리 · 표준특허 기초 자료 - 정의 - 중요성 - 표준특허라이선스 조건 - 표준특허 확보전략 - 표준특허명세서 작성방법 · 문서학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기구 정보 · 주요 표준화 기구 회의정보
자료실	알림방	센터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특허 전문정보 - 표준특허 전문지 · 표준 제정 특허 대응 지원 · 유관기관 사업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배경 및 주요기능 · 조직 및 구성원 · 찾아오시는 길 	

※ 제공 정보

-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안내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등 사업별)
- 표준특허 검색 서비스
- 표준특허 통계 현황 (주요 표준화기구 및 특허물)
- 표준특허 전문 정보 (표준특허 전문지 'SEP Inside', 표준특허 동향 분석)
- 표준특허 교육 정보 (동영상 교육과정 및 기초 자료)
- 주요 표준화기구 소개 정보 (설명 자료 및 회의정보)

3 이용절차

※ 표준특허 포털사이트(www.epcenter.or.kr) 방문을 통해 무료 이용

4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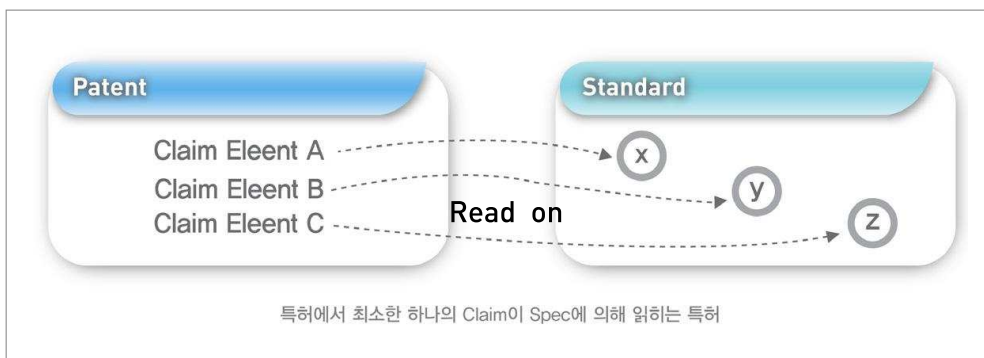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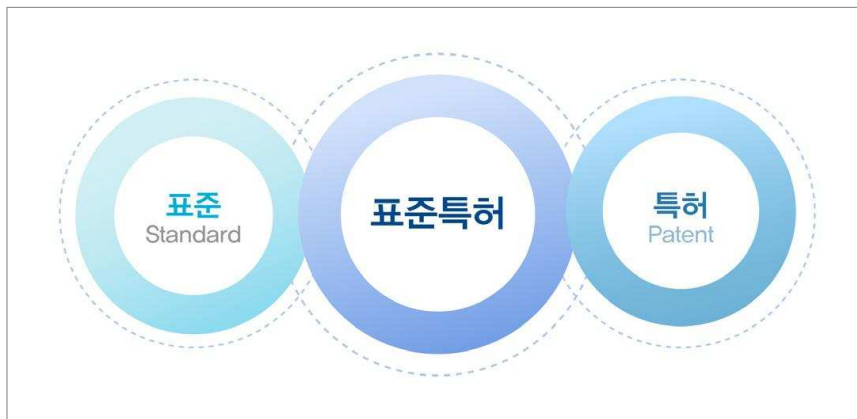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 포털사이트(02-3475-8559), 표준특허 전문지 'SEP Inside'(02-3475-8556)W

5 용어설명

※ 표준특허란?

-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
-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
- 국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차이점

구분	일반특허	표준특허
전체	침해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침해범위가 좁음 회피 가능성이 높음	침해주장이 매우 용이 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음 회피 가능성이 낮음 ※ 개별 라이선싱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일반특허의 특성도 포함
명세서	일반적인 명세서 작성의 예를 따름	표준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 이외의 단계는 가급적 제거(문언적 침해 발생유도), 특정 표준에만 적용되는 한정적인 용어 사용 지양, 중간사건(OA)시 추가 가능한 구성요소 고려
출원 전략	특허출원 vs. 노하우로 보유, 국외출원 여부 및 시점, 관리비용을 감안한 통합출원 등을 고려	표준화 프로세스를 감안한 단계별 대응, 가출원의 적극 활용, 특허풀의 로열티 분배가 특허건수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한 적극적인 분할출원 및 해외출원 고려
특허맵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맵 작성 시 기술과 시장동향이 일부 포함될 뿐 대부분 특허정보에 의존하여 분석	특허조사 시 일반적인 기술분류가 아닌 표준의 범위에 따라 검색 키워드가 달라지며, 표준스펙 및 표준화 히스토리를 반영한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 전략 등도 감안
특허 평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을 평가하여 기술거래나 특허담보대출 등에 활용	표준스펙과 특허의 청구항을 비교분석하여 라이선싱 및 특허풀 가입 등에 활용 응용특허는 배제되며 표준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표준특허만이 가치 있음
전문 인력	우수한 지식재산인력은 기술, 경영, 특허에 대해 두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표준에 대한 이해 필수

< 표준특허 통합검색 예시 화면 >

- 표준특허DB
- 표준특허 통합검색
- 표준특허 통계
- 표준특허 수행기관 풀
- 표준특허 전문가 풀

Home > 표준특허DB > 표준특허 통합검색 결과

표준특허 통합검색

전체 1370개, 현재 1/ 전체 137페이지

[1370] CDMA/TDMA spread-spectrum communications system and method

표준화기구: ETSI GERAN	특허를 관리기관:
선언주제:	특허출:
출원번호: 08/277,142	등재주제:
공개번호:	출원일: 19940705
등록번호: USRE035402	공개일:
관련표준: TS 45.001 Section:5 Version:4.5.0; TS 45.002 S...	등록일: 19961217

[1369] CDMA/TDMA spread-spectrum communications system and method

표준화기구: ETSI GERAN	특허를 관리기관:
선언주제:	특허출:
출원번호: 08/277,142	등재주제:
공개번호:	출원일: 19940705
등록번호: USRE035402	공개일:
관련표준: 3GPP TS 45.001; 3GPP TS 45.002; 3GPP TS 45...	등록일: 19961217

[1368] CDMA/TDMA spread-spectrum communications system and method

표준화기구: ETSI UMTS	특허를 관리기관:
선언주제:	특허출:
출원번호: 08/277,142	등재주제:
공개번호:	출원일: 19940705
등록번호: USRE035402	공개일:
관련표준:	등록일: 19961217

< 표준특허 전문정보 제공 화면 >

표준특허 전문지

E-BOOK을 보실 때에는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후 클릭 하시면 쉽게 링크를 넣기할 수 있습니다

	SEP Inside 1호 2014년 5월 (장간호) PDF 다운로드 E-BOOK 보기		SEP Inside 2호 2014년 7월 PDF 다운로드 E-BOOK 보기
	SEP Inside 3호 2014년 10월 PDF 다운로드 E-BOOK 보기		SEP Inside 4호 2014년 12월 PDF 다운로드 E-BOOK 보기
	SEP Inside 5호 2015년 3월 PDF 다운로드 E-BOOK 보기		SEP Inside 6호 2015년 6월 PDF 다운로드 E-BOOK 보기
	SEP Inside 7호 2015년 9월 PDF 다운로드 E-BOOK 보기		SEP Inside 8호 2015년 12월 PDF 다운로드 E-BOOK 보기

표준특허 전문지 SEP Inside 구독 신청서

표준특허전문지 SEP Inside는 표준특허 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지입니다.

여기 문인은 전문특허 전문지 SEP Inside에
의 뉴스레터 이메일 수신을 신청합니다.
 인쇄본의 무료 수신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해당 번호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성명 : (인)
 이메일 주소 :
 연락처 (직접 연락 가능 시)
 (연락처 수락하면 연락 시)
 소속 기관 :

< 개인정보 수신 동의 >
 * 한국특허진흥원 표준특허전문지에서는 SEP Inside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등이 의의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등록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 이유 목적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SEP Inside 발송	서비스 종료 시 즉시 삭제

* 필수 항목, ** 필수에서 미작성 수신 신청 시 필수항목, *** 인쇄본 무료 수신 신청 시 필수항목
 * 귀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뉴스레터 구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신청이 되면 본지를 언제까지 발송할지 SEP Inside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관련 자세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본은 1996년 12월 17일자 제1호 SEP Inside 뉴스레터 수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내용을 작성하시어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거나,
 서명 후 스캔하여 epcenter@kista.re.kr 로 보내주시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 신청서 제출처(epcenter@kista.re.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 대상 :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내용 :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소득공제

※ 대상 : 중견·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한 소득

※ 내용 :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

3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 소득공제

※ 대상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 내용 :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25%를 감면

4

기술취득에 지출한 금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 ※ 대상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금액
- ※ 내용 : 취득금액의 7%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5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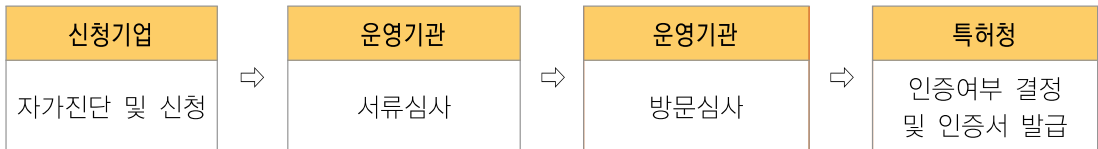
- ▶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유도
- ◆ 지식재산경영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특허청장이 지식재산경영 인증을 부여합니다.

1 인증대상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인증절차



- (신청) '16년 5월 이후 연중 수시
 - * 인증 신청 비용 : 30만원
- (심사)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 이후 인증여부 결정
- (인증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운영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 인증업무 운영기관 :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사 진행 등 인증과 관련된 특허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3 인증기준

※ 심사항목별 평가점수가 심사항목별 배점의 40% 이상이고, 전체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0% 이상일 경우 인증

4 심사항목 및 심사지표

※ 심사항목1 : 지식재산 경영체계(20점)

- 지식재산 담당조직(10점), 직무발명제도 도입·운영(5점), 직원당 지식재산 교육 시간(5점)

※ 심사항목2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활동(80점)

-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12점), 1인당 지식재산권 출원 비율(12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23점),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활용(5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5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18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모니터링(5점)

5 관련사이트

※ www.ipcert.or.kr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7 문 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8

제 6 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www.kipo.go.kr



○ 제 2 장
행 사

- 287 1. 발명의 날 행사
- 289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 293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 296 4. D2B 디자인페어

발명의 날 행사

1

▶ 발명유공자에 대한 시상

- ◆ 우수발명가 및 발명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발명가와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1

포상내역

※ 산업훈장 9점 및 산업포장 5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4점 등을 포함해 총 80점 포상(예정)

- * 올해의 발명왕 : 발명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발명가 1인을 선정해 시상하며 부상으로 포상금 3천만원 및 ‘발명인의 전당’ 헌액, 트로피 수여, 해외 우수발명전시회 참관경비가 지원됨

2

신청대상

- ※ 발명의 날 : 분야별(발명가, 발명유공자, 단체 등)로 발명진흥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로서 포상별로 규정한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 올해의 발명왕 :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발명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귀감이 되는 자

3

지원절차

- ※ 절차 : 포상신청접수(한국발명진흥회) → 포상추천심사(1차 심사, 한국발명진흥회) → 결격사유 조회 → 공적심사(2차 심사, 특허청) → 해당 부처 상훈담당실 상장발급 의뢰 → 발명의 날 기념식 시상
- ※ 신청서류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공적현황 요약서, 권리화현황 리스트
- ※ 신청공고 후 한달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우편 및 온라인 접수

4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02-3459-2950

5 관련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6 용어설명

- ※ 발명의 날 : 1441년(세종23년)에 세종대왕이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든 날로 과학 정신을 기르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

7 Q&A

Q1 포상추천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통상적으로 1월 중순에 신문공고와 정부부처, 지자체 및 산하기관, 주요대학, 연구기관 공문발송을 통해 한달간 접수를 시작합니다.

Q2 결격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정부포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신청자(단체)의 범죄이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여부, 임금체불 이력 등이 포상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 ▶ 우수발명품의 시상 및 판로개척 지원
- ◆ 우수발명품을 시상·전시하여 발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국제 전시회와의 병행으로 우수특허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1

포상내역

-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 대통령·국무총리상 및 관련부처 장관상을 포함 약 100점 시상 및 전시
- ※ 상표디자인권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점, 특허청장상 5점 포함 22점 시상 및 전시
-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대상(그랑프리), 준대상, 금·은·동상 및 각 국가, 기관별 특별상 등 시상 및 전시
- * 전시회 기간동안 전시기술 및 제품의 기술이전과 구매상담이 이루어짐

2

신청대상

-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 내국인으로서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또는 등록권자와 그 승계인의 발명기술 혹은 제품
- ※ 상표디자인권전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특허청에 상표·디자인을 신규 등록(단, 존속기간갱신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제외)한 자 또는 기업
-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국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권자와 그 승계인의 발명기술 혹은 제품

3 수상자 특전

- ※ 발명의 날 기념 포상 신청 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가점 부여
- ※ 출원된 특허기술이 발명특허대전에서 수상하더라도 특허청의 특허심사 등록결정 여부와는 무관함
- ※ 수상자는 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가점
 - 발명의 날 기념식 가점(단, 수상 내역으로 차등 배점)
 - 우선구매추천 은상 이상 가점(단, 제품이 양산된 경우에 한함)
- ※ 수상자 중 원하는 자(사)에 한하여 전시기간 내 진행되는 구매상담회 참가

4 지원절차

- ※ 처리절차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 신청접수(사업수행기관) → 추천심사회의 → 종합심사회의 → 전시 및 시상
 - 상표디자인권전 : 신청접수(사업수행기관) → 추천심사회의 → 종합심사회의 → 상격결정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신청접수(사업수행기관) → 전시 → 현장심사 → 시상
- ※ 신청서류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 신청서, 설명요약서, 권리입증자료 등
 - 상표디자인권전 : 신청서, 등록원부, 도면, 상표사진 등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신청서, 권리입증자료 등
- ※ 신청기간 : 8월 초 공고 후 접수개시
 - * 발명특허대전, 우수상표권공모전 : 1달간 접수(사전 심사제)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2달간 접수(현장 심사제)

5 문 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6 관련사이트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7 유의사항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 특허청이 주최한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발명품은 시상대상에서 제외
-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을 원칙으로 하며, 출원 중인 발명은 동상 이하로 제한
- 출원 중인 발명품 동 전시회 수상 여부와 향후 특허청의 심사 시 특허등록결정 여부와는 무관함
- 발명품의 관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출품신청하지 않은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위임장 첨부)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과 신분상 초·중·고 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상표디자인권전

- 특허청이 주최·후원한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상표·디자인은 시상대상에서 제외
- 발명품의 관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출품신청하지 않은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위임장 첨부)

8 Q&A

Q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구 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시상	국내 정부기관 및 후원기관상 시상 (최고 : 대통령상)	대상, 준대상 및 금·은·동상 시상 (한국발명진흥회장 명의) 국내외 특별상
심사	사전심사 및 상격 결정	전시기간 전시장 내 현장 현물심사
전시 대상	국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신청한 기업 중 사전 심사 결과 선정된 기업	국내·외 특허기술을 보유한 신청기업
시상식	전시회 첫날 시상식 개최	전시회 셋째날 저녁 시상식 개최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 ▶ 반도체 설계기술 및 산업 진흥 유공자 포상 www.kipo.go.kr/semicon-design
- ◆ 우수 반도체설계재산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반도체 설계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1

신청대상

※ 반도체 설계대전 칩 설계 공모전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며, 반도체 설계분야의 연구 또는 개발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외국인도 공동 참여 가능)
- 응모대상 : 공고일 현재 정부시상 또는 동 설계대전에서 수상한 사실이 없으며, 설계작품 설명서 제출기한까지 반도체 설계가 완성된 작품

※ 반도체 설계대전 알고리즘 설계 공모전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소재 반도체설계분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학부생 1인 필참, 외국인도 공동 참여 가능)
- 응모대상 : 공고일 현재 정부시상 사실이 없으며, 설계작품 설명서 제출기한까지 설계가 완성된 작품

※ 반도체설계 진흥 유공자 포상

- 신청자격 :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하며, 국내 반도체 설계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

2 포상내역

※ 반도체 설계대전 칩 설계 공모전

구 분	시상수	상 금	비 고
대상	1	1,000만원	대통령상
금상	1	700만원	국무총리상
은상	2	각 5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동상	3	각 300만원	특허청장상
특별상	1	200만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1	2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장상

※ 반도체 설계대전 알고리즘 설계 공모전

구 분	시상수	상 금	비 고
금상	1	300만원	특허청장상
은상	1	200만원	
동상	1	100만원	

※ 유공자 포상

구 분	포상수	상 금	비 고
공로상	1	500만원	특허청장상
특별상	1	200만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3 당선작 지원

- ※ 포럼 등 행사를 통한 수상작품 및 설계기술 소개
- ※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 등록을 통한 거래 지원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평가 시 수상자 소속기업에 가점 부여
- ※ 언론매체를 통한 수상자와 수상작 홍보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칩 설계 공모전 참가신청 : 2016. 3. 31(목) ~ 2016. 6. 30(목)
 - ☞ 설계작품 설명서 제출기한 : 2016. 8. 31(수)
- 알고리즘 설계 공모전 참가신청 : 2016. 3. 31(목) ~ 2016. 6. 30(목)
 - ☞ 설계작품 설명서 제출기한 : 2016. 8. 31(수)
-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 2016. 3. 31(화) ~ 2015. 7. 29(금)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또는 포상 신청/추천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E-mail로 신청
- 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E-mail : semicon-ip@korea.kr

5 관련사이트

- ※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 사이트 www.kipo.go.kr/semicon-design

6 문 의

-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3465 / semicon-ip@korea.kr

4 D2B 디자인페어

▶ D2B 디자인페어 www.d2bfair.or.kr

◆ 독창적인 디자인을 권리화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 및 활용할 수 있는 예비디자이너를 양성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창의적 디자인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 참가대상

- ※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
- ※ 1팀당 팀원 수는 총 2명으로 제한

2 유의사항

- ※ 출제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
- 예)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단, A가 허락한 경우는 응모자격 인정)

3 행사내용

- ※ 주최 : 특허청, 한국무역협회
- ※ 주관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
- ※ 후원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 ※ 참여기업 : 총 19개 기업(고스디자인, 그린차일드, 디노맥스, 디오리진, 디자인올, 모노리스플랜, 뮤, 신지모루, 아트하우스, 차병원그룹차바이오F&C, 코스틱, 크라운제과, 크림박스, 클라베베, 한산모시RIS사업단, 행남자기, LG전자, MAAD STUDIO, WIPS)

※ 시상내역

상 격		개 수	상 금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1점	500만원
금상	특허청, 한국무역협회 WIPO 사무총장	3점	300만원
특별상	지식재산 나눔 특별상	1점	100만원
은상	후원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디자인협회)	9점	100만원
	각 출제기업	약 25점	100만원
동상	주관기관	20점	-
입선		약 80점	
총 상금		5,500만원	
공로상** (특허청장상)		2명	300만원

* 대상 상장은 팀당 1개만 제공

** 多출품 지도교수의 2년 연속 수상은 불가

*** 시상내역은 변경 가능

- 수상에서 제외(취소)되는 경우
 - 본인의 창작이 아니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타 공모전 입상작
 -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
 - 출품자와 창작자(디자인등록출원의 기재사항)가 다른 경우
 - ‘창작자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
 - 공동 출품시 ‘창작자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에서 제외
 -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단, 등록을 위해 의견제출통지서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시상
 -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 자유출품부문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하는 경우

4 지원내용(수상자 특전)

- ※ 지식재산 교육('D2B 씬머스쿨') 제공 (1차 합격자)
 -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15일, 장소 미정
 - 내용 : 디자인 등 지식재산제도 및 출원요령 교육
 - 참가비 : 5만원 (교통·숙식·교육비 40만원 중 35만원 지원)
 - 교육 수수료증 수여
 - * 불참자를 위한 디자인 권리보호 특강 : 7월 9일(토), 한국발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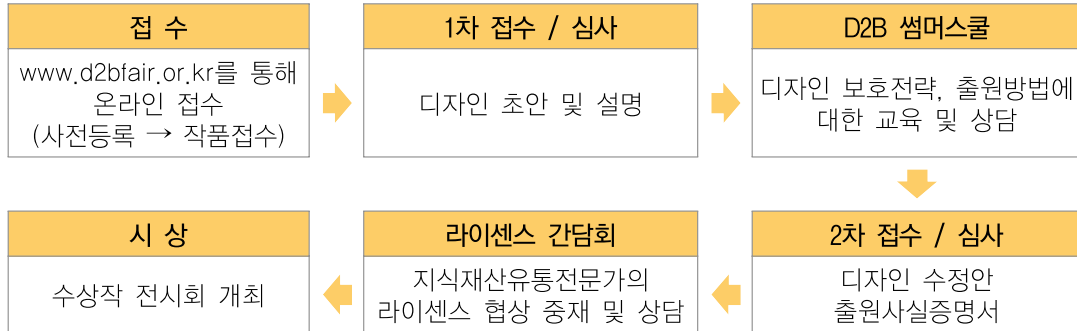
- ※ 양산 및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
 - (참여기업물품 디자인) 참여기업이 수상작을 생산할 경우 계약에 따라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
 - (자유출품 디자인) 국내외 전시회에 디자인을 출품하여 기업에 소개하는 등 전문 기업을 통해 상품화 이후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
 - * 출품자는 상품화를 원하는 경우 관련기업의 요청에 적극 대응해야 함
 - ** 자세한 내용은 계약에 따라 결정하되 지식재산 유통전문가의 상담, 협상중재 및 계약서 작성 지원

- ※ 참여 기업과 전문가의 멘토링
 -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생산성·상품성에 대한 멘토링 실시
 - * 멘토링은 기업을 방문하거나 씬머스쿨에서 실시하되 품목과 참여기업의 여건에 따라 횟수 및 내용 등을 결정

5 신청절차

- ※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 D2B Fair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순서 : ①사전등록한 후, ②작품접수
- ※ 방법 : 대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및 제출물 업로드(규격 준수)
 - 제출물 : 1차(디자인 초안 및 설명), 2차(디자인 수정안, 출원사실증명서)

※ 대회운영절차



6 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930
- ※ D2B Fair 사무국 02-928-0582 / d2b@d2bfair.or.kr

7 용어설명

- ※ D2B : Design to Business로 디자인을 비즈니스로 연결하여 창출된 디자인을 권리화 하고 사업화하는 것임

8 Q&A

- Q1** 공모전을 통해 발생한 권리는 어디로 귀속되나요?
- A** 출품한 디자인은 출품자가 D2B 씬머스쿨에서 변리사의 지재권교육을 받은 이후, 디자인 등록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하게 되며 기업과 계약을 통해 양산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 받게 됩니다.
- Q2** 디자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A** D2B Fair 홈페이지(www.d2bfair.or.kr) 또는 주관대행사(02-928-0582)로 연락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042-481-5930)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9 참여 소감

- ※ “매년 참여한 D2B 디자인페어는 참가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저희 행남자기 제품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행남자기 디자인부 정혜정 과장 (’10~’14년 참여기업)]
- ※ “다른 공모전과 달리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차 합격 후 3박4일 동안 특허 교육을 받은 후 특허출원과 디자인권을 직접 등록해 보고, 기업 면담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며, 참여기업에서 인턴으로 디자인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 전문가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중재해 주는 등 하나의 작품이 상품화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2012년 D2B 대상자 인제대학교 김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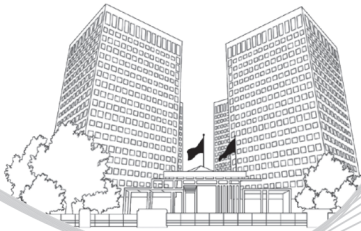
■ 우수지원사례

물빠짐이 쉬운 슬리퍼 (’13년 대상)	툴립 수저세트 (’14년 대상)	다용도함 선풍기 (’15년 대상)
		
고스디자인에서 사업화	코스틱에서 사업화	미디어환경가전에서 사업화

www.kipo.go.kr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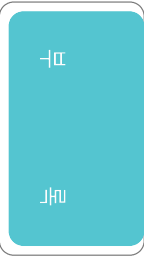
- 303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 305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 307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 308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 310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 312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1-1. 특허청

☎ 1544-8080 www.kipo.go.kr

부 서 명	전 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042) 481-5052, 5175
산업재산활용과	5807, 5107
산업재산인력과	5930, 3501
지역산업재산과	8663, 8452
산업재산창출전략팀	8248, 8626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5184
산업재산보호지원과	8210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5090
정보관리과	5347
출원과	5414
등록과	5241
국제출원과	5198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5342
디자인심사정책과	8205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5658
특허심사제도과	3461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585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042) 601-4321
지식재산교육과	4347



1-2.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00 www.kipa.org

부 서	전 화
지역지식재산부	02-3459-2861, 2862, 2829, 2821
지식재산진흥부	02-3459-2950, 2794
지식재산사업부	02-3459-2947, 2933, 2932
한국지식재산평가센터	02-3459-2890
한국지식재산중개소	02-3459-2786
지식재산인력양성부	02-3459-2806
평생교육부	02-3459-2770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02-2183-5800 www.kipra.re.kr

부 서	전 화
경영기획팀	02-2183-5817
부정경쟁조사팀	02-2183-5844
기반정보팀	02-2183-5827
인식보험팀	02-2183-5891
분쟁예방팀	02-2183-5879
해외협력팀	02-2183-589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553-5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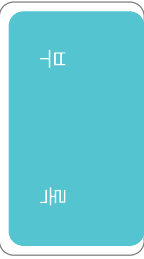
1-4. 기타 기관

기관 및 부서	전 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02-3287-4250 www.kista.re.kr
중소기업팀	02-3475-4345, 4221
성장전략팀	02-3475-8590, 1302
표준특허센터	02-3475-1304, 8560
한국특허정보원	☎ 02-6915-1400 www.kipi.or.kr
영업비밀 보호센터	1666-0521
검색서비스팀	042-483-4700
한국여성발명협회(사무국)	☎ 02-538-2710 www.inventor.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1600-7119 www.kotra.or.kr
해외투자지원단	02-3460-7351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www.kibo.or.kr
중앙기술평가원	02-2115-3753
KDB산업은행	☎ 1588-1500 www.kdb.co.kr
한국벤처투자(주)	☎ 02-2156-2000 www.k-vic.co.kr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02-2189-2600 www.kiip.re.kr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 대표번호 1661-1900

센터명 (운영기관)	주 소	전 화
서울지식재산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층	02-2222-3860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031-500-3043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032-810-2882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033-749-3327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559-5700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208호	042-930-4455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043-229-2732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2	051-974-9065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052-228-3087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053-242-8079
경북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33	054-274-5533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055-210-3085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42-8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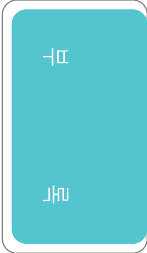


센터명 (운영기관)	주 소	전 화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062-954-3841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 TP 벤처지원동 105호	063-252-9301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064-755-2554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 빌딩 13층	031-500-3043
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031-244-8321
부천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070-7094-5483
춘천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강원지회)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보듬관 403호	033-254-6580
태백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033-552-5555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033-643-4413
서산지식재산센터 (서산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4층	041-663-0041
충주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043-843-7005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07 새마을회관6층	051-645-9683
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054-859-3093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054-454-6613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055-762-9411
순천시지식재산센터 (순천상공회의소)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6	061-741-5411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 해외 IP-DESK 연락처

국가		연 락 처	
중 국	북경	TEL : +86-10-6410-6162(ext17) E-mail : sh.lee@kotra.or.kr	FAX : +86-10-6505-2310
	상해	TEL : +86-21-5108-8771(ext110) E-mail : yousun@kotra.or.kr	FAX : +86-21-6219-6015
	청도	TEL : +86-532-8388-7931(ext104) E-mail : sunghoko@kotra.or.kr	FAX : +86-532-8388-7935
	광주	TEL : +86-20-2208-1600(ext1004) E-mail : koree@kotra.or.kr	FAX : +86-20-2208-1636
	심양	TEL : +86-24-3137-0770(ext804) E-mail : jelee@kipra.or.kr	FAX : +86-24-3137-0773
일 본	도쿄	TEL : +81-3-6273-4638 E-mail : cys8174@kipra.or.kr	FAX : +81-3-3214-6950
베트남	호치민	TEL : +84-8-3822-3944(ext114) E-mail : rhee100@kotra.or.kr	FAX : +84-8-3822-3941
태 국	방콕	TEL : +66-2-204-2511 E-mail : ipdeskthailand@gmail.com	FAX : +66-2-204-2504
미 국	LA	TEL : +1-323-954-9500(ext160) E-mail : ykimkotra@gmail.com	FAX : +1-323-954-1707
	뉴욕	TEL : +1-212-826-0900(ext217) E-mail : 713324@kotra.or.kr	FAX : +1-212-888-4930
독 일	프랑크 푸르트	TEL : +49-69-509-565-679 E-mail : donghee.lee@kipra.or.kr	FAX : +49-69-25-3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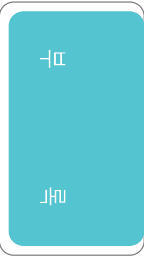


4

● 전 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국 가	주 소
그리스	http://www.obj.gr
남아프리카공화국	http://www.cipc.co.za
뉴질랜드	http://www.iponz.govt.nz
덴마크	http://www.dkpto.dk
독일	http://www.deutsches-patentamt.de
러시아	http://www1.fips.ru
루마니아	http://www.osim.ro
말레이시아	http://www.myipo.gov.my
모나코	http://en.gouv.mc
모로코	http://www.bmdav.org
몽골	http://www.ipom.mn
미국	http://www.uspto.gov
스웨덴	http://www.prv.se
스페인	http://www.oepm.es
스위스	http://www.ige.ch
싱가포르	http://www.ipos.gov.sg
아라비안연안협력이사회	http://www.gcc-sg.org

국 가	주 소
아일랜드	http://ie.espacenet.com
영국	http://www.ipo.gov.uk
유라시아	http://www.eapo.org
이탈리아	http://www.uibm.gov.it
일본	http://www.jpo.go.jp
중국	http://www.sipo.gov.cn
체코	http://www.upv.cz
캐나다	http://opic.gc.ca
터키	http://www.tpe.gov.tr
튀니지	http://www.inorpi.ind.tn
폴란드	http://www.uprp.pl
포르투갈	http://www.marcaspatentes.pt
프랑스	http://www.inpi.fr
핀란드	http://www.prh.fi
필리핀	http://www.ipophil.gov.ph
헝가리	http://www.hpo.hu
호주	http://www.ipaustralia.gov.au
홍콩	http://www.ipd.gov.hk/
유럽상표청(OHIM)	http://oami.europa.eu
유럽상표청(OHIM) 한국어 서비스	http://www.registerbrandeurope.kr
EPO	http://www.epo.org
WIPO	http://www.wi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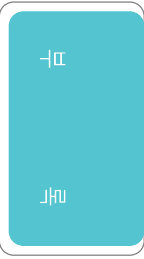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기관(국가)	검색구분	주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국제특허검색	http://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국제상표검색	http://www.wipo.int/romarin
	디자인검색	http://www.wipo.int/ipdl/en/search/hague/search-struct.jsp
미국 (USPTO)	특허검색	http://patft.uspto.gov/
	상표검색	http://www.uspto.gov/trademarks/index.jsp
유럽(EPO)	특허검색	http://worldwide.espacenet.com/?locale=en_EP
일본(IPDL)	특허/상표/디자인 검색	https://www.j-platpat.inpit.go.jp
유럽상표청 (OHIM)	상표검색	https://www.tmdn.org/tmview/welcome
	디자인검색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
호주(AU)	특허검색	http://pericles.ipaustralia.gov.au/ols/auspat/
	상표검색	http://pericles.ipaustralia.gov.au/atmoss/falcon,application_start
	디자인검색	http://pericles.ipaustralia.gov.au/adds2/adds.adds_simple_search.paint_simple_search
캐나다(CA)	특허검색	http://brevets-patents.ic.gc.ca/opic-cipo/cpd/eng/introduction.html
	상표/디자인 검색	http://www.ic.gc.ca/

기관(국가)	검색구분	주소
영국(GB)	특허검색	http://www.ipo.gov.uk/types/patent/p-os/p-find/p-ipsu.htm
	상표검색	http://www.ipo.gov.uk/types/tm/t-os/t-find/tmcase.htm
	디자인검색	http://www.ipo.gov.uk/types/design/d-os/d-find/d-find-number.htm
홍콩	특허검색	http://ipsearch.ipd.gov.hk/patent/main.jsp?LANG=en
	상표검색	http://ipsearch.ipd.gov.hk/trademark/jsp/main.jsp
독일(DE)	특허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pat/uebersicht
	상표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marke/uebersicht
	디자인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gsm/uebersicht
뉴질랜드	특허검색	http://www.iponz.govt.nz/app/Extra/Default.aspx?sid=635296415025624841
	상표검색	http://www.iponz.govt.nz/app/Extra/Default.aspx?sid=635296414944036841
	디자인검색	http://www.iponz.govt.nz/app/Extra/Default.aspx?sid=635296414856832841
러시아(RU)	특허검색	http://www.rupto.ru/rupto/portal/96bb3146-3081-11e1-351c-9c8e9921fb2c?lang=en
	상표검색	http://www.rupto.ru/rupto/portal/96bb3146-3081-11e1-351c-9c8e9921fb2c?lang=en
	디자인검색	http://www.rupto.ru/rupto/portal/96bb3146-3081-11e1-351c-9c8e9921fb2c?lang=en
덴마크	특허검색	http://onlineweb.dkpto.dk/pvsonline/Patent
	상표검색	http://onlineweb.dkpto.dk/pvsonline/Varemaerke
	디자인검색	http://onlineweb.dkpto.dk/pvsonline/Design
Thomson Reuters	MicroPatent	http://www.micropat.com/static/index.htm



6

● ●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기 관	주 소
특허청	http://www.kipo.go.kr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http://www.kaips.or.kr
국제지재권 분쟁정보포털	http://www.ip-navi.or.kr
영업비밀 보호센터	http://www.tradesecret.or.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www.koipa.re.kr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http://www.pcc.or.kr
표준특허센터	http://www.epcenter.or.kr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한국여성발명협회	http://www.inventor.or.k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특허정보 활용서비스	http://plus.kipris.or.kr
지식재산능력시험	http://www.ipat.or.kr
직무발명제도	http://employeeinvention.net
디자인 맵	http://www.designmap.or.kr
IP-Market(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http://www.ipmarket.or.kr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
D2B 디자인페어	http://www.d2bfair.or.kr
IP 캠퍼스	http://www.ipcampus.kr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www.ipacademy.net
한국반도체산업협회	http://www.ksia.or.kr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	http://www.kipex.or.kr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센터	http://www.kipex.or.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www.kiip.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http://www.kista.re.kr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 발행일 : 2016년 3월
- 발행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전 화 : 042) 481-5052
- 팩 스 : 042) 472-3464

www.kipo.go.kr

ISBN : 978-89-6199-952-6 13500